연구보고서

2025

10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현황과 개선 방향

이은영·강윤지

KiRi 보험연구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목 차

• 요약 1

Ⅰ. 서론 2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
2. 선행 연구 및 연구 구성 4

Ⅱ. 국내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현황 6
1.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의 정의와 범위 6
2.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제도 및 이슈 11
3. 국내 신탁 시장 및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이용 현황 27
4. 소결 31

Ⅲ. 해외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현황 34
1. 영미권 특별수요신탁 및 취약자신탁 34
2. 싱가포르와 홍콩의 공공 특별수요신탁 43
3. 일본의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제도 및 시장 53
4. 소결 66

Ⅳ. 국내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의 개선 방향 69
1. 국내 인지취약자 규모 및 보유 자산 규모 69
2. 제도 개선 방향 78

Ⅴ. 결론 및 제언 83

• 참고문헌 85

• 부록 91

표 차례

〈표 Ⅱ-1〉 국내 신탁 유형의 분류 7
〈표 Ⅱ-2〉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14
〈표 Ⅱ-3〉 우리나라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의 장애인 범위 15
〈표 Ⅱ-4〉 국내 장애인 특별부양신탁과 특수지원 신탁(발달장애인신탁)의 비교 18
〈표 Ⅱ-5〉 우리나라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근거 법령 19
〈표 Ⅱ-6〉 보험금청구권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내 법적 쟁점 26
〈표 Ⅱ-7〉 신탁시장 상품별 비중 현황 27
〈표 Ⅱ-8〉 신탁업 인가 유형 28
〈표 Ⅱ-9〉 금융권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상품 현황 29
〈표 Ⅱ-10〉 금융권 특별부양신탁 계약 현황 30
〈표 Ⅲ-1〉 미국 특별수요신탁의 근거 법제 35
〈표 Ⅲ-2〉 미국 특별수요신탁의 유형 36
〈표 Ⅲ-3〉 미국 특별수요신탁의 수익자 요건: SSI의 장애인 정의 및 심사 기준 37
〈표 Ⅲ-4〉 영국 특별수요신탁의 세제 혜택 40
〈표 Ⅲ-5〉 영국 장애인신탁 및 취약인신탁의 수익자 요건 42
〈표 Ⅲ-6〉 싱가포르 'Greater Eastern Cares Term Plan' 46
〈표 Ⅲ-7〉 싱가포르 SNTC의 재무제표 요약 48
〈표 Ⅲ-8〉 홍콩 특별수요신탁의 각 집행 단계별 내용 50
〈표 Ⅲ-9〉 홍콩 특별수요신탁의 초년도 수수료 및 요구 납입액 52
〈표 Ⅲ-10〉 홍콩 특별수요신탁 설정 당시 위탁자 및 수익자의 연령대 53
〈표 Ⅲ-11〉 일본 주요 시장 환경 변화 55
〈표 Ⅲ-12〉 일본 특정증여신탁의 장애인 수익자 판단 기준 58
〈표 Ⅲ-13〉 일본 생명보험신탁상품 판매 현황 64
〈표 Ⅲ-14〉 미즈호신탁은행의 특별수요신탁 판매 실적(2023년) 65
〈표 Ⅲ-15〉 주요국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제도의 특징 66
〈표 Ⅳ-1〉 국내 인구구조 변화와 일본 신탁시장 환경 변화와의 비교 69
〈표 Ⅳ-2〉 인지취약 유형별 인구 규모 74
〈표 Ⅳ-3〉 치매가구 보유 자산 규모: 본 연구 결과(Max Proxy) 76
〈표 Ⅳ-4〉 장애인 보유 자산 규모: 본 연구 결과(Max Proxy) 77

〈표 Ⅳ-5〉 장애유형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중 및 가구소득 78
〈표 Ⅳ-6〉 인지취약자 신탁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 강화 방향 80

그림 차례

〈그림 Ⅱ-1〉 신탁의 구조 6
〈그림 Ⅱ-2〉 본 연구의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의 수익자 범위 10
〈그림 Ⅱ-3〉 금융위원회 신탁업 혁신방안의 내용 12
〈그림 Ⅱ-4〉 국내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의 구조 16
〈그림 Ⅱ-5〉 자폐인사랑협회 및 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신탁의 구조 17
〈그림 Ⅱ-6〉 하나은행의 유언대용신탁의 구조와 특징 20
〈그림 Ⅱ-7〉 후견사건의 진행과정 21
〈그림 Ⅱ-8〉 유형별 후견(감독)사건의 접수 건수 분포 22
〈그림 Ⅱ-9〉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 22
〈그림 Ⅱ-10〉 하나은행의 성년후견지원 신탁의 구조와 특징 23
〈그림 Ⅱ-11〉 치매공공후견제도의 범위 24
〈그림 Ⅱ-12〉 생명보험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용한 특별수요신탁의 설계 25
〈그림 Ⅱ-13〉 금융권 특별부양신탁 설정 추이 30
〈그림 Ⅱ-14〉 유언대용신탁 규모 추이 및 후견감독사건 접수 건수 31
〈그림 Ⅱ-15〉 국내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관련 제도 변화 33
〈그림 Ⅲ-1〉 싱가포르 SNTC 특별수요신탁의 구조 및 수수료 보조금 45
〈그림 Ⅲ-2〉 홍콩 특별수요신탁의 구조 51
〈그림 Ⅲ-3〉 일본 신탁 수탁고 규모 추이 55
〈그림 Ⅲ-4〉 일본 신탁 유형별 수탁자산 및 업권별 신탁대리점 수 추이 55
〈그림 Ⅲ-5〉 일본 특정증여신탁의 구조 및 내용 57
〈그림 Ⅲ-6〉 특정증여신탁 설정 규모 추이 58
〈그림 Ⅲ-7〉 일본 후견제도지원 신탁의 구조 및 내용 59
〈그림 Ⅲ-8〉 후견제도지원 신탁 연간 청구 건수 및 수탁고 추이 60
〈그림 Ⅲ-9〉 일본 후견인 유형별 선임 건수 추이 61
〈그림 Ⅲ-10〉 일본 후견사건 청구 건수 전체 및 유형별 추이 61
〈그림 Ⅲ-11〉 일본 유언대용신탁의 구조 및 내용 62
〈그림 Ⅲ-12〉 유언대용신탁 설정건수(좌)와 민사신탁과 공익신탁 설정건수 추이(우) 63
〈그림 Ⅲ-13〉 일본 생명보험신탁의 구조 및 내용 64
〈그림 Ⅳ-1〉 우리나라 인구피라미드 변화 및 베이비붐세대의 이동 70
〈그림 Ⅳ-2〉 국내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및 사망자 수 추계 71

〈그림 Ⅳ-3〉 연령별 치매 인구 및 전체 치매 인구 추이 71
〈그림 Ⅳ-4〉 연령별 뇌졸중 환자 및 전체 환자 수 추이 72
〈그림 Ⅳ-5〉 남녀 연령별 뇌졸중 환자 비중 추이 72
〈그림 Ⅳ-6〉 전체 장애인 및 인지취약 장애인 규모 추이 73
〈그림 Ⅳ-7〉 연령별 인지취약 장애인의 분포: 전체 및 장애 유형별 74
〈그림 Ⅳ-8〉 연령별 인지취약 인구 분포 74
〈그림 Ⅳ-9〉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75
〈그림 Ⅳ-10〉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구성비 75
〈그림 Ⅳ-11〉 치매가구 보유 자산 규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추정치 76
〈그림 Ⅳ-12〉 국내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제도의 구성 79

Abstract

Trusts for the Cognitively Vulnerable: Status & Reforms

The number of people with cognitive vulnerabilities is rapidly increasing in Korea, and the need for Special Needs Trusts(SNTs) to support daily financial management and prevent abuse is growing. Yet existing SNTs remain underutilized, with financial institutions acting as passive suppliers and only limited public trust initiatives underway.

In the U.S. and the U.K., where family trusts are well established, governments promote the use of SNTs by linking them to welfare protections and tax incentives. Singapore and Hong Kong have established public SNTs with guaranteed principal and low fees to support less wealthy families with special needs. In Japan, large private trust banks, together with community banks, serve as the primary providers of Disability and Guardianship Trusts, while the government has focused on fostering a favorable environment for management-type trusts.

As millions of Korean Boomers enter old age, stronger public-private cooperation is needed to meet the rising demand for trusts. The government should revise Disability Trust schemes in line with welfare and tax systems, ease regulations that discourage private-sector participation in management-type trusts, resolve legal uncertainties in linking guardianship and trusts, and reinforce protections for vulnerable groups with fewer assets. The private sector should pursue cost reductions while maintaining service quality and expand access to trust and estate planning services for a broader range of cognitively vulnerable individuals.

요 약

국내 인구 고령화의 진전과 정신적 장애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인지취약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일상적 자금관리를 지원하고 자산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의 활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제공 중인 장애인특별부양신탁, 발달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은 국내 관리형 신탁업에 대한 제도적 제약과 신탁에 대한 대중의 이해 부족으로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금융기관의 참여는 소극적이며, 소규모 시범사업 형태의 공공신탁이 시도되고 있는 수준이다.

가족신탁이 발달한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 비금융 및 비영리기관 주도로 특별수요신탁을 제공 중이며, 수익자의 복지 수급권 보장(미국), 적극적 세제 혜택 제공(영국) 등의 이용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공공 수탁자가 신탁원금 또는 관리비용 보전을 담당함으로써 저수익 소액 다건의 특징을 가지는 중·저자산층 인지취약자의 신탁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신탁 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대형 신탁은행의 과점 상황 속에서 민영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특정증여신탁 및 후견제도지원 신탁의 공급을 확대해왔으며, 정부는 관련 법제 및 후견제도 정비, 복지형 신탁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신탁판매대리점 규제 완화를 통한 고령자의 신탁 접근성 제고 등 시장 환경 조성에 집중하였다. 보험회사는 신탁은행과의 제휴, 신탁자회사 설립, 특화 판매대리점 등을 통해 생명보험과 신탁 관리 및 사후 사무서비스 연계 상품을 제공 중이다.

향후 국내 인지취약자의 자산동결 및 자산 남용 예방의 유용한 수단인 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정부는 신탁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후견 업무와 신탁의 연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 제거, 자본시장법 내 홍보, 자산운용, 업무 위탁, 판매 규제 등 민영 부문의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저소득층 인지취약자의 자산 보호와 후견적 재무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신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영 부문은 일부 부유층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 국한되었던 신탁업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업권별로 지속 가능한 관리형 신탁업의 영위에 필요한 서비스 품질과 수수료 수준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우리나라의 인지적 취약(Cognitively Vulnerable)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장 최근 치매역학조사 발표자료[1)]에 의하면, 2025년 현재 국내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은 9.2%(97만 명)로 2026년에는 치매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유병률도 전체 노인 인구의 28.1%(약 298만 명) 수준에 이르는 등 2030년 인지 저하를 경험하는 노인 인구가 498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또한 뇌졸중 등 중증 뇌손상 질환자 인구와 뇌병변장애 인구의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령 인구 중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2010년 37.1%에서 2024년 55.3%까지 증가하였고, 이들 중 뇌병변장애 비중이 10% 정도(약 14만 명)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조산율 증가와 함께 발달장애, 정신적 장애에 대한 진단 기술의 발전, 사회적 인식 개선 등으로 오티즘(자폐성장애)과 지적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인 및 정신적 장애인의 규모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말 기준 37.7만 명(전체 등록장애인의 14.2%)에 이르고 있다.

스스로를 위한 의사결정 능력에 제약이 있는 인지취약 인구를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요구되겠으나, 무엇보다 보호자의 부재나 부모의 사후에도 이들의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소득 흐름과 목돈 수요를 보장하는 재무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축적된 자산이 있거나 증여·상속을 통해 이연된 자산이 있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무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경제적 학대나 재산권 침해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22년 경제적 학대 경험[2)]을 신고한 노인 3명 중 2명이 75세 이상 노인이었고, 치매 노인의 재산권 침해 가해자의 80% 이상이 친족과 가족이었으며, 간병인 등 제 3자를 통한 재산권리 침해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 3. 12.),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2)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해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등 경제적인 착취를 하거나, 재산에 관한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노인을 통제하는 행위로 정의함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를 경험한 경우가 23%로 전체 학대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26%로 가장 많았다.

전통적 가구의 해체에 따른 취약 인구에 대한 돌봄 기능이 상당 부분 공공복지제도로 편입되었지만 금전의 '관리'에 대한 지원 부문은 제외되어 있다. 2013년 도입된 법정 후견제도가 인지취약층 피후견인이 자산관리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후견인의 대다수가 가족이나 친족인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담, 재산 남용의 문제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후견제도에 대한 보완 및 대안으로서의 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증여상속 수단으로서의 가족신탁이 발달한 영미권 국가들, 정부 주도의 공공신탁이 발달한 싱가포르와 홍콩,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관리형 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거듭해 온 일본 등에서는 취약층 인구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여 재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수요신탁제도가 발전되어 왔다. 미국, 싱가포르, 홍콩의 특별수요신탁(Special Needs Trust; SNT), 영국의 장애인 또는 취약층 신탁(Disabled/Vulnerable Persons Trust), 일본의 특정증여신탁, 후견제도지원 신탁 등 그 명칭은 다양하고, 신탁 구조, 세제 혜택 및 복지 수급권 보장 여부 등 그 제도적 특징에는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취약층 신탁 수익자의 안정적 자산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목적은 공통적이다.

우리나라도 신탁법 및 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복지형, 가족신탁의 다양화와 종합재산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 중이며, 최근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자산 편입이 허용되면서 관리형 신탁 시장의 성장 기회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산관리에 대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집단 중 하나인 인지취약자를 위한 신탁의 국내 제공 현황과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진단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일본을 제외한 해외 주요국의 경우 민영 금융기관은 인지취약자 신탁의 직접적인 제공 주체로서 보다는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신탁 계약과 연계하거나 수탁자산의 운용사로서의 역할을 주로 담당해왔다. 일본은 대형 신탁은행을 중심으로 상품화된 취약자 신탁을 제공 중이며, 보험사의 경우도 자회사 설립이나 전문화된 판매채널을 이용해 취약층 지원 신탁상품을 제공하는 신탁은행과의 협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3) 국회입법조사처(2024)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의 인지취약 인구를 위한 신탁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신탁업 규제 환경이나 상속 및 복지제도, 후견제도 등의 환경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특별수요신탁 시장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인지취약 인구를 위한 신탁 제도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인지취약 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신탁 제도의 특징과 시장 환경을 점검하고, 해외 제도 및 시장환경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국내 관리형 신탁시장의 확대에 비례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수요신탁 제도의 개선 방향과 민영 금융기관의 참여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2. 선행 연구 및 연구 구성

기존 국내 연구는 우선 법학계를 중심으로 주로 장애인 대상의 취약층 인구를 위한 신탁 법제의 현대화와 신탁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 내용에 대한 연구(이중기 2009)와 장애인특별부양신탁, 발달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 각 신탁 유형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연구가 있다(한기정 2009; 김나래 2019; 배광열 외 2020; 제철웅 외 2014 등).

금융 및 보험 부문의 연구는 고령화 시대 복지형 신탁의 활성화와 종합자산관리자로서의 신탁업자의 역할 확대(한아름 2020; 송홍선 외 2021; 나미선 2023), 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강성호 외 2024; 권효상 2011, 2018; 류건식 외 2017; 양희석 2020; 지광운 2023; 양지훈 2024; 오영표 2022; 임준 외 2024), 보험회사의 신탁업 및 종합자산관리시장 참여시 구체적인 시장 전망 및 사업모델 연구(진익 외 2010) 등이 있다. 국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국내 치매머니에 대한 규모 추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2025).

취약인구 대상 신탁에 대한 금융기관의 참여와 관련, 보험청구권신탁의 복지적 기능에 대해 다수의 연구들에서 단편적 언급이 있었으며(오영표 2022 등), 정봉은 외(2015)의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인구를 위한 임의후견신탁의 시장규모 추정 및 참여 가능성을 진단한 바 있다. 특히 일본의 치매정책에 대한 연구(류건식 외 2023), 치매신탁과 보험회사의 참여방안에 대한 연구(류건식 2025)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이라는 연구의 조작적 정의를 위해 국내 관련 법제와 현재 제공 중인 신탁 유형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종류별 제도 및 이용 현황을 검토한다. 다만 특별수요신탁 관련 통계는 신탁협회나 업계 차원에서 집계되고 있지 않아, 부족한 자료와 시장 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2025년 6월 중 국내 장애인신탁 및 후견신탁을 취급 중인 은행, 증권, 보험업계 신탁 전문가 5인 및 사)자폐인사랑협회 발달장애인 신탁·재산관리서비스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국내 신탁 이용 현황과 시장의 특징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을 제공 중인 영미권 국가들, 싱가포르 및 홍콩,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법제 내용과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제도와의 비교 지점을 점검한다. 향후 국내 인지취약자 인구 규모와 보유 자산 규모, 관련 제도 정비 움직임 등 시장환경 변화를 검토하고 주요 국가의 제도를 참고하여 국내 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 국내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현황

1.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의 정의와 범위

가. 신탁의 정의와 유형

신탁은 위탁자(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 사이 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의미한다(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즉, 위탁자가 어떤 사정에 의해 또는 목적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자산의 소유권 및 관리 권한을 타인(수탁자)에게 위임하되, 위임의 목적인 신탁사무(수익자 복지 등)를 명시하고 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 불이행 시 해지나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contract)을 의미한다. 신탁은 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수탁자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재산의 소유권이 유지된 채 단순히 그 관리를 믿고 맡기는 민법상의 '위임'이나 '대리'와 구분된다.

〈그림 Ⅱ-1〉 신탁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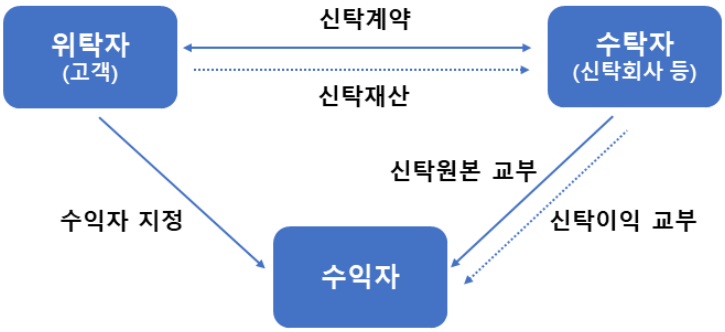

자료: 신관식, "신탁의 이해와 특성"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신탁은 신탁 설정의 주요 목적, 수탁 재산의 종류, 위탁자 및 수익자의 특징, 수탁자 유형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표 Ⅱ-1〉 국내 신탁 유형의 분류

구분	신탁 설정의 주요 목적	수탁자산 특징	위탁자/수익자 특징	수탁자 유형
세부 기준	• 자산운용 중심 vs. 보호·관리 중심 • 증여·상속 목적 - 유언장 대용 - 분쟁 예방 • 후견적 재산관리 - 본인 인지 저하 대비 - 미성년, 정신질환·중독·장애 자녀의 재산 보호 및 관리	• 금전 여부 - 금전/재산 • 자산운용 위임 정도 (금전신탁) - 특정/불특정 • 설정 자산의 개수 - 1개/2개 이상	• 위탁자와 수익자의 동일인 여부 - 위탁자=수익자(자익)/위탁자≠수익자(타익) • 수익자의 특정 여부 - 불특정 다수(공익) • 수익자의 연속적 지정 여부 • 수익자의 특별 수요 보유 여부 - 미성년, 장애인, 중대질환자, 고령자 등	• 개인 - 가족/후견인/제3자 • 기업(신탁업 인가 여부) - 금융기관 신탁업자 - 비금융기관(비영리 단체 등) • 공공기관 여부 - 정부산하 기구, 공공기관 등
신탁 유형 예시	• 운용형 신탁 • 관리형 신탁 • 유언대용신탁 • 후견신탁 (성년후견지원 신탁)	• 금전신탁 • 재산신탁(유가증권, 부동산, 연금, 보험금 청구권, 금전채권 등) • 종합재산신탁	• 자익/타익/공익신탁 • 수익자연속신탁 • 치매신탁 • 장애인특별부양신탁 • 발달장애인신탁(특수지원 신탁)	• 민사신탁(가족신탁) • 상사신탁 • 공공신탁

자료: 현재 국내에서 제공 중인 신탁 유형을 중심으로 저자가 작성함

신탁 설정의 주된 목적에 따라 자산증식 목적과 자산관리 목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를 운용형 신탁, 후자를 관리형 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운용형 신탁은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투자상품인 '증권'에 해당하여, 이를 수탁받기 위해 신탁업자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관리형 신탁은 적극적 운용 요소 없이 자산의 보관관리를 주업무로 하기 때문에 금융투자업 인가가 불필요하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자산의 증식보다는 안정적 운용과 관리를 중시하는 관리형 신탁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복지를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을 복지형 신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신탁은 단순히 유언장을 대신하기 위해 설정하는 증여상속 목적인 경우와 이에 후견적 자산관리 목적이 추가된 경우로도 나눌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신탁으로, 피상속인 본인이 위탁자이자 수익자로서 신탁사무로 발생한 수익권 등 권리 이익을 향유하다가 사망 시 다른 법정 상속인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약서상 명시된 상속재산 권리인(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제도이다(신탁법 제59조). 피상속의 상속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류분 제도가 적용되는 상속법 체계로 인해 유류분 제도와 신탁과의 충돌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 후견적 자산관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후견신탁(일본의 후견제도지원 신탁)은 성년후견제도[4]를 이용하고 있는 피후견인(주로 재산관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포함)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가족 또는 제3자의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신탁이다. 신탁 설정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법정 후견인이 위탁자로 수탁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와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감독과 지시 하에 수익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 원본과 수익을 지급하는 신탁이다.

신탁은 수탁가능 자산의 종류별로도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신탁업법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에서 수탁가능 자산을 열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전신탁과 금전 외 자산의 유형별로 증권, 부동산, 연금 등의 재산신탁으로 구분되고, 둘 이상의 자산 유형이 조합된 종합재산신탁이 있다. 위탁자가 자산운용의 방식을 특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과 수탁자에게 위임하는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불특정금전신탁 중심의 운용형 신탁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종합재산신탁 등의 규모가 해외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 2024년 11월 이후부터는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재산으로 편입이 가능해졌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따라 위탁자 스스로가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 위탁자 이외의 사람이 수익자가 되는 타익신탁으로 분류 가능하다. 대표적인 자익신탁으로 채매신탁(일본의 인지증신탁)이 있다. 위탁자의 인지 상태가 양호할 때 신탁 계약을 하고 수탁자에게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위임하다가 치매 발병 이후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에 대한 비용의 지급처리를 맡아주는 상품이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도 등록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장애인 자녀가 모두 지급받는

4) 국내 후견제도는 민법상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대상으로 하며, 성년, 한정, 특정, 임의 후견 등 4가지 유형이 존재함(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절에서 설명함)

경우 증여과세자산 불산입 혜택(최대 5억)을 제공하는 자익신탁이다. 2020년 1월부터는 부모나 친지 등이 직접 신탁 계약의 위탁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타익신탁 형태의 장애인특별부양신탁으로도 설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은 공익신탁(Public Interest Trust)도 있다. 공익신탁법에 근거해, 법무부가 인가한 신탁회사에 위탁된 신탁자산을 특정 공익사업(즉, 대상자는 있으나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은)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신탁을 의미한다. 법무부의 인가, 감사 및 시정 보완 요구 등 관리감독 하에 운영되며, 우리나라 1인 가구, 무자녀 부부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공익단체 등에 기부하는 채널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신탁설계를 위탁자의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는 취소가능신탁(미국의 Revocable Trust)과 변경이 불가능한 취소불능신탁(Irrevocable Trust)로도 나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위임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자산이나 수익 등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반면, 후자의 경우 신탁 설정 이후 위탁자에 의한 신탁의 해지나 변경이 불가능하여 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재산 보호를 돕는 복지형 신탁의 설계가 주를 이루며 세제 혜택 제공의 근거가 된다.

수탁자의 유형별로도 분류가 가능하다. 수탁자가 신탁업 인가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민사신탁, 상사신탁으로 구분 가능하다. 상사신탁은 금융청의 인가를 받은 신탁은행이나 신탁회사 등이 수탁자가 되어 재산 관리 및 운용에 대한 보수(계약체결 시 보수, 운용보수, 관리보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신탁업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신탁 업무를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재산적 기초나 인력이 있는지, 신탁 업무상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사회적으로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면허 취득 후에도 규제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 민사신탁은 주로 가족이나 친족이 수탁자가 되어 재산을 관리 또는 승계하는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비용이 저렴하고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하지만, 전문적 지식이 없는 수탁자로 인해 신탁재산이 유용 또는 횡령될 우려가 있어 신탁감독인 지정을 통한 감독을 신탁법 내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위탁자, 수탁자 또는 감독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공공신탁(Public Trust 또는 Governmental Trust)으로 구분되며, 주로 사회적 취약층의 재산관리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정된 신탁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사회가족개발부(MSF) 산하 Special Needs Trust Company(SNTC)의 특별수요신탁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나.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의 조작적 정의와 범위

이상의 다양한 신탁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주제인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을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자산관리 관련 의사결정 시 인지적 기능이나 판단능력의 저하로 후견적 도움 또는 보조적 의사결정 지원 등의 특수 지원이 필요하거나 그 필요가 예견되는 인구를 위한 신탁'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지취약층 또는 예비 인지취약층 인구에는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자, 뇌졸중 등 중증질환자, 뇌병변 등 뇌 손상이 동반된 신체적 장애인과 발달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인을 포함한다. 아래 〈그림 Ⅱ-2〉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본 연구에서 정의한 특별수요신탁의 수익자 범위이다.

구체적인 신탁 유형으로는 장애인특별부양신탁, 발달장애인신탁, 치매신탁, 후견신탁 등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만, 유언대용신탁, 보험청구권신탁, 공익신탁에서도 수익자를 인지적 취약자로 설계하는 신탁들이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한 신체장애인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뇌병변 및 뇌전증 장애를 제외하면 본 연구의 범위보다 더 포괄적이나 근거 법제나 상품 등을 검토함에 있어 이를 분리하기 어려워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그림 Ⅱ-2〉 본 연구의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의 수익자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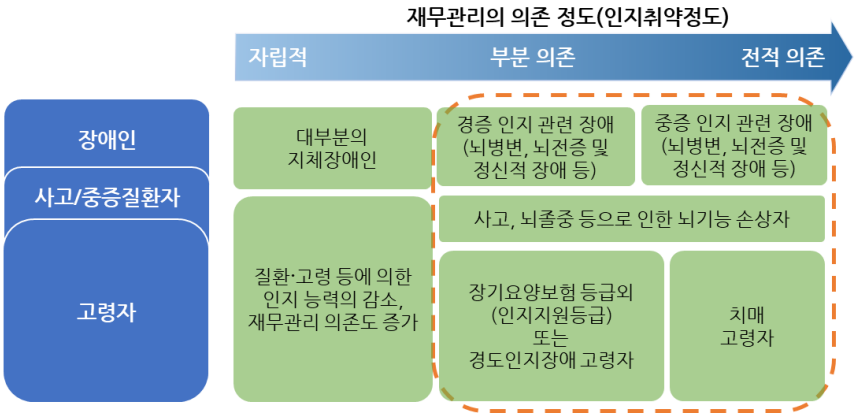

주: 점선 표 안의 영역이 본 보고서에서 정의한 '인지취약자'임
자료: 저자가 작성함

2.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제도 및 이슈

가. 국내 신탁업 관련 법제 변화

우리나라의 신탁제도는 민사적 계약 관계로서의 신탁에 대한 정의와 관련 규정을 담은 '신탁법'과 신탁업 인가 사업자의 신탁사업 범위와 의무 및 감독 등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내 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5] 신탁법은 1921년 일본의 신탁법을 모델로 1961년 제정되었으며, 신탁업 관련 규정은 2001년 '신탁업법' 제정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정비되다가[6]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으로 통폐합되었다. 자본시장법을 통해 금융투자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규제가 정비되면서 신탁업의 업무 범위와 감독 체계도 명확해졌으며, 특히 금전신탁 및 부동산 신탁 중심의 투자형 신탁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한 복지·상속·유언 등 생활밀착형 신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영미권 국가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가족신탁, 증여신탁, 공익신탁 등 복지형·관리형 신탁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2011년 신탁법 전면 개정(2012년 7월 시행)을 통해 자기신탁, 유언상속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신탁유형에 대한 근거 법령이 도입되었다.[7] 그 외의 신탁업, 세제, 등기 관련 내용은 자본시장법 체계 속에서 부분적으로 개정되거나 운용 지침으로 분산 처리 또는 장기과제로 남아 점진적으로 다듬어지고 있다. 2022년 금융위원회의 신탁업 혁신방안에서도 가계재산 종합자산관리사업자로서의 신탁업자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 개

---

5) 이 외에도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에 의한 집합투자신탁의 설정 및 운용,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탁형 자산유동화에서 유동화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근로자의 연금자산의 보존과 운용을 목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행하는 신탁자산의 관리업무, '저작권법'에 근거한 저작권신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권신탁 등 지적재산권 영역 신탁 업무, '공익신탁법'에 근거한 공익신탁의 인가·공시·감독 등에 관한 업무 등이 있음

6) 신탁업법은 신탁업의 인가, 영업 범위(겸영 제한), 자산의 분리 관리(고유재산과의 분리), 감독 체계, 수익자 보호(계약 공시, 회계 보고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2005년 7월 개정을 통해 종합재산신탁제도 도입, 신탁재산의 운용 범위 확대,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등이 이루어졌음. 이후 신탁업법 전면개편을 통해 투자신탁, 유동화신탁 부분이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고, 그 외 신탁 업무 부분은 위의 주석 5)의 각 법으로 편입되었음

7) 2008년 12월 법무부는 '신탁법 개정 착안 사항'에서 "①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의 유연화, ②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유형의 신탁 유형 도입, ③ 다수 당사자가 있을 경우(예, 복수 수익자)의 법률관계 구체화, ④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 조정 및 기능의 강화, ⑤ 신탁에 관련된 제3자 권리 보호, ⑥ 수탁자 의무와 책임의 합리적 제한, ⑦ 그 밖의 신탁제도 현대화를 위한 법률관계의 구체화 등을 포함하였으며(이중기 2009), 2011년 전면 개정 과정에서 이들 대부분이 반영됨

선 사항들이 제안되었으며, 수탁 재산의 다양화, 의료·법률·세무 등 비금융 서비스 전문기관의 참여 확대, 고령화 시대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가업승계신탁, 주택신탁, 후견신탁 등의 활성화,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Ⅱ-3〉 금융위원회 신탁업 혁신방안의 내용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10.12.), "신탁업 혁신방안 발표" 내용을 인용함

나. 국내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관련 법제 현황

국내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관련 법제는 신탁법, 자본시장법, 공익신탁법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수익자의 정의와 범위, 재무관리 지원 의무 등에 대한 법제, 법정후견제도 관련 민법 조항 등이 있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 및 특수지원 신탁(발달장애인신탁), 유언대용신탁, 성년후견제도와 후견신탁, 공익신탁 부문으로 나누어 보다 세부적인 법제 현황을 살펴본다.

1) 장애인특별부양신탁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이미 1998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의 5항[8] 및 제52조의 2)에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제도적 보완과 운영지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동법에 의해 정의된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해당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며, 신탁 이익 전부에 대해 장애인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등 해당 요건(〈표 Ⅱ-2〉 참고)을 모두 충족한 신탁 계약에 한 해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년 장애인복지법과의 조화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표준신탁 계약서를 마련하고 2016년 이후 수탁기관이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리보고서 작성, 사후보고 의무 등이 강화되었다. 원래 자익신탁으로 도입되었으나, 본인이 신탁 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증인 경우 등을 고려해 상증세법 개정(2016년)에서 부모 등 제3자가 신탁 설정자가 될 수 있는 타익신탁 구조가 포함되었다.

신탁 종료 시까지는 원본 인출이 금지되었었으나, 2018년 2월 상증세법 개정(제45조의2 제6항)을 통해 의료비, 간병비, 특수교육비 등 특정 용도별 인출을 허용하고, 2021년부터는 중증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서 정의)의 경우 기초생활비 목적으로 월 150만 원까지(미달할 경우 해당 미달 금액 한도로 원금 인출도 가능) 정기적 수령 구조도 가능해졌다. 가장 최근에는 수익자 편의 중심의 제도 개선, 유언 및 후견제도와의 연계 방안, 집합신탁(Pooled Trust) 구조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상속재산의 범위)의 5항에서 신탁재산이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됨을 명시: ⑤ 신탁의 이익을 받는 자(이하 "수익자"라 함)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로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봄

〈표 Ⅱ-2〉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내용	조문
자익 신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자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신탁되었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타익 신탁	②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타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제4항 단서에 따른 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신탁 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가. 장애인 사망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장애인 사망 전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면세 한도	③ 제1항에 따른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은 5억 원을 한도로 한다.
증여세 즉시 부과 사유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신탁원본을 인출하여 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수익자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은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의료기관이 인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장애인이다.

〈표 Ⅱ-3〉 우리나라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의 장애인 범위

내용	조문
소득세 법상 장애인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 · 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 · 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삭제 〈2025. 2. 28.〉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국내 복지형 신탁 중 유일하게 세제 혜택이 있는 신탁 유형이나 도입된지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적 설정 건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2018년 말 기준, 장애인특별부양 신탁 누적 설정 건수는 36건, 수탁액은 155.4억 원 수준이다.[9] 이는 특별부양신탁제도가 가지는 여러 수요측 및 공급측 제약 요인들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 6월 진행한 은행, 증권, 보험권 신탁 전문가 5인과의 인터뷰 내용에 근거해 각각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수요측 요인으로 신탁 원본 인출에 대한 제약이 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원본 인출 요건이 완화된 바 있으나, 경증 장애인 및 그 외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상황 변화나 자금 수요를 위해 신탁 원본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제도 설계 당시에 비해 급격히 낮아진 금리 수준에서 근로 능력 등에 제약이 큰 발달장애인 등의 경우 지급되는 신탁 이익에만 의지하여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월 지급금액이 기초생활수급에 비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10]

9) 조세금융신문(2020. 6. 25.), "금융세제선진화 세미나: 외면 받는 장애인신탁 면세·원본인출 족쇄가 문제"

10) 1998년 제도 도입 초기는 연 12%의 고금리 시기로, 5억 원 신탁 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 발생이 가능했으나,

이러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탁 이익으로부터의 소득이 복지 수급권 산출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아 장애인연금을 포함한 자산조사형 소득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11]

증여세 즉시 부과 사유가 매우 경직적인 것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타익신탁의 경우, 부모 사후 자산 처분이나 자산 유형 변경 등을 통해 상속 자산을 재조정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대다수 가계에서 부동산이 편입된 신탁자산의 자산 가액 원본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과세 대상이 되며,[12] 집의 리모델링 등으로 거주 주택을 떠나야 하는 경우 신탁 계약 해지도 불가피하다(단, 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계약할 경우 과세 면제). 또한, 두 명 이상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다른 장애인 자녀로 변경하거나 비장애인 자녀에게로 수익자를 변경하는 설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설계 변경에 대한 제약은 장애인 수익자의 보호에 주된 목적이 있겠으나, 수탁기관의 감독 강화 등을 전제로 보다 다양한 상황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도 필요해 보인다.

〈그림 Ⅱ-4〉 국내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의 구조

자료: 우리은행 블로그(2024)

최근 1%대 금리로는 최저생활비에도 미치기 어려운 상황임(연이율 1.5% 계산 시 월 62만 5천 원). 금융위원회(2014)가 이에 대한 규정 보완을 요구했으나, 세금 문제, 탈세 등 부작용 우려로 논의가 중단됨

11)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보조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고, ② 중증 장애인이 받게 되는 장애인연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수도 있으며, ③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고, ④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등에서 탈락할 수도 있음

12) 본 연구의 신탁 전문가 인터뷰조사(2025년 6월)에서 평소 주당 평균 1~2건 정도 장애인 가족 대상 특별부양신탁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나, 계약 체결로 연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증여세 즉시 부과 의무를 꼽고 있었음. 예를 들어, 신탁 부동산 매각 시 증여세 즉시 납부 의무가 부과되는데, 최대 면세액 5억 원 기준, 7~8천만 원을 납부해야 함. 또한,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자금 목적은 원본 인출 허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등 인출 목적도 매우 제한적임

신탁업자의 입장에서는 특별부양신탁에 대한 수수료 규제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취급 기관들에서는 다른 가족신탁상품들에 비해 신탁보수를 대폭 할인하여 운영하고 있어[13] 판매 유인이 크지 않고, 주로 사회공헌의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특히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금융기관 인력들이 부동산 자산의 변동 사항에 대처해야 하거나 장애인 수익자의 일상 업무까지 지원해야 하는 상황 등 신탁 관리서비스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여 이에 대한 업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2) 특수지원신탁(발달장애인신탁)

비금융권 기관(공익법인)에서 제공 중인 특수지원신탁은 이러한 특별부양신탁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특히 제한된 인지 기능으로 인해 재산의 보호는 물론 일상생활과 밀접한 수입지출 관리도 지원받되, 보유 자산 규모가 증여세 혜택을 받을 정도로 크지 않은 경우 유용한 신탁으로 설계되었다. 2015년 11월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폐인사랑협회가 무연고 및 보호자의 지원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보호와 지출관리를 돕기 위해 제공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그 모체이며,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22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림 Ⅱ-5〉 자폐인사랑협회 및 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신탁의 구조

〈자폐인사랑협회 재산관리지원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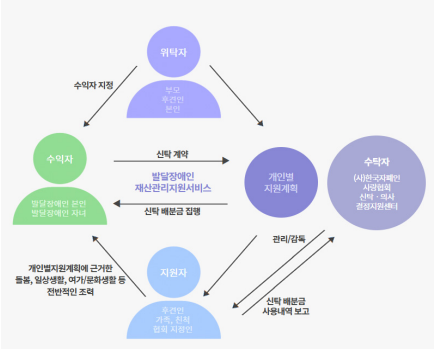

자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신탁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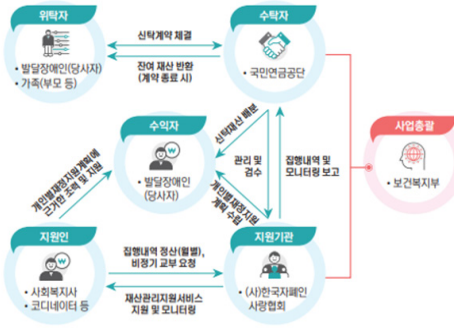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13) 재산 유형 등 개별 계약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은행 및 증권사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의 경우 신탁 설정 수수료는 신탁재산가액의 0.2~1% 수준, 관리 수수료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탁원본 평균잔액의 0.1~1% 수준임

국민연금 신탁 시범사업의 경우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부모를 위탁자로, 국민연금공단을 수탁자로,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지원기관으로 하는 구조이며, 국민연금공단이 재산관리, 계약체결, 신탁배분금 지급, 지원기관 감독 및 검토의 역할을 담당하고,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이용자 모집 홍보, 초기 상담, 재정지원계획 수립, 배분금 사용 내역 검토 및 정산, 지원인 양성교육관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폐인사랑협회는 국민연금 시범사업의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신탁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밀착된 재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자폐인사랑협회의 신탁 및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세제 혜택 미적용, 복지 수급권 미보장의 한계가 있고, 금융기관과 같은 대외적 신뢰를 갖추기 힘든 상황에서 부모의 참여가 제한적인 '소액 자익신탁' 중심의 입출금 업무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비영리기관으로서 수수료, 보수 수령이 불가능하여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범사업 중인 국민연금과의 협업모델을 확대해 집합적 운용이 가능한 공공 특별수요신탁 제도로 운영하는 안이 제안된 바 있었으나 구체화 되지 못하다가[14] 최근 신정부 출범 공약으로 다시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표 Ⅱ-4〉 국내 장애인 특별부양신탁과 특수지원 신탁(발달장애인신탁)의 비교

구분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특수지원 신탁 (발달장애인신탁)	공공 집합 특별수요신탁 (제안 중)
운영자	금융기관	정부+공익법인	(정부 또는 별도 공공기관)
신탁의 목적	• 세법상 장애인 등을 위한 자산 원본의 보호 및 관리, 일부 운용 수익을 필요에 따라 인출	• 등록 발달장애인의 재산 보호 및 일상생활, 치료, 요양 목적에 따른 지출관리 지원	• 고령자(치매 노인)를 포함한 취약층 인구의 재산 보호 및 일상 지원
운영 비용	• 신탁 설정(1회성), 관리 수수료(매년) 발생(기관별로 상이)	• 실비 수준의 비용만 충당 • 별도 수수료, 관리비용 없음	• 설정, 관리 수수료 최소화 (구체적 사항은 논의 중)
특징	• 5억까지 증여세 면제(원본 침해 불허 등 면세 요건 있음) • 제한적인 원본 인출 허용 • 복지 수급권 미보장	• 증여세 불산입 혜택 없음 • 원본과 수익을 발달장애인을 위해 자유로이 사용 가능 • 복지 수급권 미보장	• 집합적 운용, 계정별 관리 • 복지 수급권, 세제 혜택, 원본 인출, 잔여 자산 귀속 등 구체적 사항은 논의 중

자료: 제철웅(2015)을 참고로 작성함

14) 2024년 12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예지 의원 발의로 제안되었으나 현재 폐기된 상태임

3) 유언대용신탁[15]을 활용한 치매 또는 중증질환자 신탁

특별부양신탁이나 발달장애인신탁이 장애 자녀를 위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신탁임에 비해, 본인의 중대 질병, 사고, 치매 등으로 인한 인지 손상의 상황에 따른 자산동결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유언대용신탁이다. 2011년 전면 개정된 신탁법 제59조에 근거한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 자신의 사망 이후를 대비하여 수탁자의 관리하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는 신탁으로, 유언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재산의 사후 처분을 위탁자의 의사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신탁법 제60조의 수익자연속신탁과 함께 활용하여 수익자 사망 또는 수익권 소멸 상황에서 다른 자에게 순차적으로 수익권이 귀속될 수 있도록 지정함으로써 유연한 신탁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다만, 국내 증여상속법제상 상속인 권리를 보장하는 유류분제도에 근거하여 유언대용신탁의 내용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므로 증여상속자 간 분쟁의 여지는 존재한다.

〈표 Ⅱ-5〉 우리나라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근거 법령

항목	법조문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탁법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언장을 대신하여 본인의 인지취약 상태에 따라 치료나 증여상속 목적의 인출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인지 저하가 예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인지기능 저하의 진행 상황에 맞춰 신탁수익 등을 치료비로 활용하고, 치매가 중증

15) 유언신탁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유언신탁은 위탁자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생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차이가 있음

으로 진행되어 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 설계된 신탁 계약 내용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다가 사망 이후 잔여 자산을 상속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도 자산 동결로 인해 자신들이 치매 부모의 치료비 조달을 해야 하는 부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가족 또는 제3자 지급청구대리인을 지정하면 병원비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근거한 금액, 미리 지정된 일정 한도의 생활비 등을 지급 청구함으로써 예금 인출이 가능하고, 특히 본인의 의사판단이 어려운 경우 기타 지인이나 악의적 주변인에 의한 자금 인출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금융권 최초로 하나은행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체결되었고, 이후 계속적 성장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일반 대중의 인지도는 높지 않으나 신탁에 대한 설명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이용 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16]

〈그림 Ⅱ-6〉 하나은행의 유언대용신탁의 구조와 특징

신탁 구조	특징
	•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상품 운용과 안정적 노후자산관리 준비가 가능 • 위탁자가 건강할 때 인지 저하 등으로 인한 치료·요양비 지급 설계, 사후 상속 설계가 가능 • 신탁가능 재산: 부동산, 금전, 금전채권, 보험금 청구권, 유가증권

자료: 하나은행 홈페이지 '하나 리빙트러스트' 소개 내용임

4) 후견제도와 후견신탁[17]

우리나라는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및 그 밖의

16) 하나금융연구소(2024)에서 전체 응답자의 9%만이 유언대용신탁을 알고 있었음. 다만,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응답자의 42%가 가입 의향을 보임

17) 본고의 '후견제도'는 법정 미성년후견과 만 19세 이상 성년에 대한 법정 및 임의후견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후견신탁'은 '후견지원 신탁' 또는 '성년후견신탁'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음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2013년 7월 민법 개정을 통해 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 2 및 제959조의 14).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피후견인의 사무처리 능력이나 도움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법적 보호를 차별화하고 있으며, 피후견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함께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피후견인 당사자의 잔존 의사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원의사결정제도(Supported Decision Making; SDM)로의 대체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나(제철웅 2019), 현 시점에서 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법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어 국내 제도의 특징에 대해 우선 살펴본다.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전반적 지원을 위해,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특정 분야에 대해, ‘특정후견’은 특정 사무에 한정된 지원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18] 이들은 모두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선임 및 업무 등이 정해지는 법정 후견으로, 후견감독인에 대한 선임은 가정법원의 판단에 의해 재량적으로 이루어지며 의무사항이 아니다(민법 제940조의6). 이에 비해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에 후견인 및 후견업무가 정해지며,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즉, 후견감독인의 선임이 필수적이다(민법 제959조의15).

후견 제도의 개시와 변경, 종류를 다루는 후견사건의 진행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데, 후견인 후보에 대한 분쟁이 없는 경우 통상 후견사건의 접수에서 심판까지 3~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분쟁이 있을 경우 전문가 또는 공동 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그림 Ⅱ-7〉 후견사건의 진행과정

자료: 하나은행 홈페이지

18)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특정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대리권뿐 아니라 동의권, 취소권 등 일부 재량권을 가지는데 비해, 특정후견인은 대리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데 둘의 차이점이 있음

우리나라 후견사건의 유형별 접수 건수는 성년후견이 70.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미성년, 한정, 특정, 임의 후견 순이다. 후견감독사건[19]에서도 성년후견이 65.8%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미성년, 특정, 한정, 임의 후견 순이다(2023년 말 기준).

〈그림 Ⅱ-8〉 유형별 후견(감독)사건의 접수 건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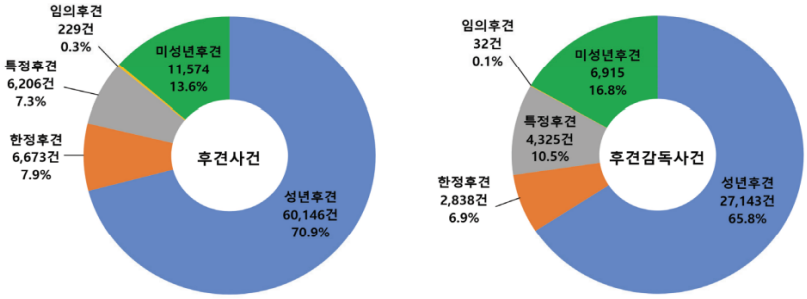

주: 청구인이 해당하는 사건본인과의 관계별의 개수를 집계한 것(35,640건)을 모수로 함(즉, 1건의 종국 사건에 대해 복수의 청구인이 있는 경우에 각 청구인이 해당하는 사건본인과의 관계별 개수를 모두 집계함)
자료: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2024)

청구인 유형의 경우, 피후견인 본인이 청구한 경우가 18.6%이며, 자녀,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기타 친족 등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가 5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구정촌장 등 제3자가 청구한 경우는 25%로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Ⅱ-9〉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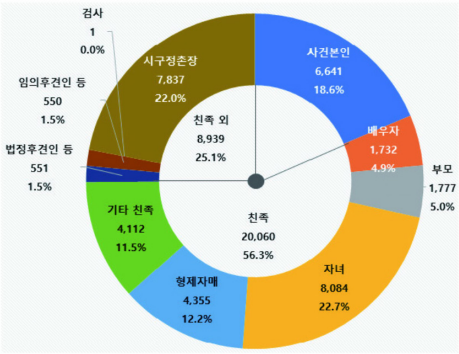

주: 기타 친족이란 배우자, 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를 제외한 4촌 이내의 친족을 의미함
자료: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2024)

19) 후견감독사건은 후견 개시 이후 후견인의 재산관리, 권한남용, 감독 필요성 등을 다루는 사건임

후견인의 지원 업무는 피후견인에 대한 신상지원과 재산관리에 대한 지원으로 양분될 수 있는데, 가족이나 친인척 개인이 후견인의 주를 이루는 국내 상황에서 재산관리 지원 업무에서의 전문성 부족,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의 한계점이 누적되면서 신탁을 활용한 후견제도의 보완과 피후견인의 재산 보호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성년 및 한정 후견인의 재산관리 지원 목적의 신탁상품이 소개되었고, 최근 치매 인구의 증가 등으로 유사한 상품들이 증가하고 있으나[20] 법제화된 개념은 아니다.

즉, 후견신탁(또는 '후견지원신탁'이라 함)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자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인 후견인이 수익자인 피후견인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생활비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인 수탁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되, 신탁 설계의 변경, 계약의 집행 및 종료 또는 해지 등 모든 절차에 대해 법원이 관여하고 결정하도록 한 신탁이다. 금융기관의 표준계약서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개별 상품별로 세부 신탁 설계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임의후견의 경우는, 후견 필요가 발생하기 전에 신탁 계약 시 후견체결을 통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 경도인지장애 등 인지 저하가 예견되는 고령층 인구의 자산보호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림 Ⅱ-10〉 하나은행의 성년후견지원 신탁의 구조와 특징

신탁 구조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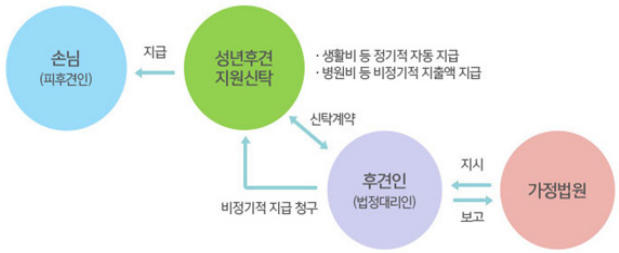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의 재산 대상, 계약 체결·집행·종료의 모든 절차에 법원이 관여하고 결정함 • 신체적 장애만 있는 경우, 일시적 능력 결여인 경우는 신청 불가함

자료: 하나은행 홈페이지

20) 최근에는 기존 신탁 구조에 후견인이 지정되거나 후견개시 심판이 있을 경우, 재산관리 방식을 자동 전환하도록 설계된 형식으로 제공 중(신한은행 미래안심신탁, KB국민은행의 KB치매안심신탁 등)

이러한 유용성에 비해 실제 시장에서의 후견신탁의 설정 건수는 많지 않은데, 피후견인의 권한 제한에 대한 심리적 부담, 가정법원의 개입 등으로 인한 자산관리의 소요시간과 비용 부담 증가와 함께 후견인 당사자도 신탁 관리업무 부담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국내 후견인 교육 체계는 교육에 대한 접근성(교육시간 및 지역 불균형, 전국적 접근성 부족), 표준화(지자체 간 격차가 크고 표준화된 커리큘럼 부재), 정기 보수교육 체계화(정기 재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관리도 부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크다.

이에 최근 '치매관리법 제12조의 3(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근거, 의사결정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가 그 권리를 적절히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고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하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이 없는 저소득층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가 우선 대상이며, 지자체 단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후견심판청구절차 및 관련 비용과 공공후견인의 활동비(월 20~40만 원)을 지원한다.

공공후견인의 자격 기준은 민법 제937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후보자 모집과 선발 등의 사무는 광역치매센터가 수행하고 있다. 공공후견인의 역할은 통장 등 재산관리 사무지원, 관공서 서류발급 등 사무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원,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등으로, 특정 후견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Ⅱ-11〉 치매공공후견제도의 범위

자료: 중앙치매센터(2020)

5) 보험금청구권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그 자체가 특별수요신탁의 하나로 분류되기는 어려우나, 보험 수익자가 미성년, 질병·고령·장애·중독 등 다양한 이유로 수령 보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힘든 취약 상태에 있거나, 이들을 보호하고 후견해야 할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권한을 남용해 자금을 횡령하거나 탕진할 위험이 있는 경우, 유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신탁 또는 후견신탁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그림 Ⅱ-12〉 생명보험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용한 특별수요신탁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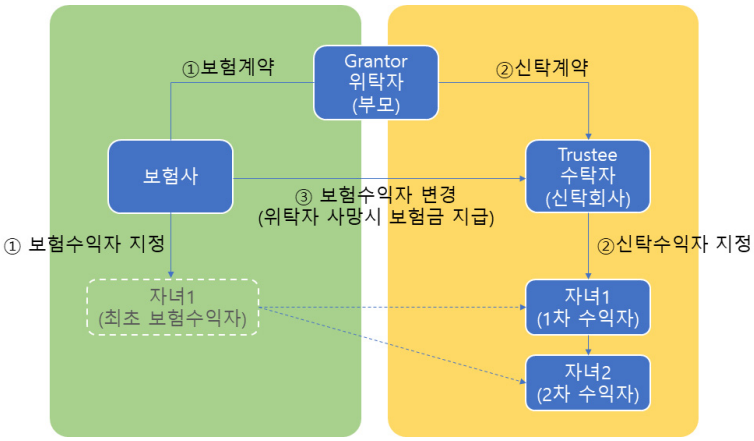

자료: 오영표(2024)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국내 관리형 신탁의 확대 필요성을 반영하여 2022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방안의 내용과 2023년 6월 법무부의 신탁재산 귀속 방법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그 허용 환경이 조성되었다. 즉, 불확실한 보험사고에 근거한 보험금청구권이 현존 재산권에 대한 재산만을 인정하는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기조에서, 보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조건부·기대권적 성질의 채권이 발생하고, 이를 신탁재산으로 이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다만, 2024년 11월 금융위원회가 그 구체적 요건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함으로써 매우 협소한 범위로 도입되었다. 즉, 현행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위탁자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를 겸하는 보험계약에 한해 보험계약 수익자를 수탁자로 지정·변경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으며, 신탁 계약의 수익자를 협소하게 제한하고(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일정 금액(3,000만 원) 이상의 일반사망에 대한 보험금 요건을 두고 있으며, 보험계약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향후 복지신탁의 유용한 수단인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에 대

한 상당 부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희석(2024) 등은 특히 주계약 여부나 사망보장 여부에 관계 없이 종신, 정기급부형 확정 보험금에 대한 신탁 허용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고, 강성호 외(2024), 송윤아(2025) 등에서도 수탁 가능한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확대를 통해 신탁의 복지적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들에서 대출채권 금지 요건의 폐지와 위탁자 요건의 완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표 Ⅱ-6〉 보험금청구권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내 법적 쟁점

현재	개선 방향
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① 일정 금액 이상의 일반사망 보험에 한정하며, 재해사망 질병, 상해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 사항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계약 대상에서 제외 ② 보험 약관상 보험계약대출이 허용되지 않거나 신탁 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함 ③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며, ④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됨	① 주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종신, 정기급부에 대한 신탁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② 일정 금액 이상 요건과 보험계약대출 금지 요건은 과다하여 폐지할 필요가 있음 ④ 역시 너무 한정적이므로, 폐지하거나 사실혼 관계, 동거인, 4촌 이내 혈족, 공익법인 등까지 범위 넓힐 필요가 있음

자료: 양희석(2024) 내용을 정리함

6) 장애인·노인 복지 목적의 공익신탁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 등의 인지취약자를 신탁 수익자로 지정하는 공익신탁의 형태도 현행 신탁법상 인정되고 있다. 2011년 개정 신탁법에서는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신탁의 목적이 공익에 관한 경우 그 신탁의 이익을 받는 자를 수익자로 간주하고(제2조 제2호 나목), 신탁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이 명확하고 신탁의 이행이 가능한 때에 해당 신탁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제4조 제2항 등). 예를 들어, 자산가 A씨(위탁자)가 금융기관(수탁자)을 통해 특정 장애인복지단체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 계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 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을 위해 해당 자산을 활용하는 경우 공익신탁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익신탁은 일반 민사신탁의 한 유형으로 존재하므로 별도의 통계집계나 보고 및 감독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3. 국내 신탁 시장 및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이용 현황

우리나라는 신탁시장이 금융상품 판매 목적의 특정금전신탁 위주로 발전하면서 최근까지도 투자형 자산 증식 중심의 운용형 신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합재산신탁 등 관리형 신탁 시장 규모는 제한적으로,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종합재산신탁을 일부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가입자 규모가 미미하다(정승희 2023). 은행 및 투자회사들이 시장을 선점 중이며, 보험사의 진입을 통한 경쟁구도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총 수탁고 규모는 1,378조 원으로, 이 중 금전신탁 633조 원, 재산신탁 745조 원, 종합재산신탁 0.8조 원 수준이다. 계약자 수는 각각 906.2만 건, 9.7만 건, 977건, 기타 3,831건으로, 금전신탁의 계약자가 99%에 이르고 있다. 계약 건당 평균 수탁규모는 금전신탁 약 7,300만 원, 재산신탁 75.8억 원, 종합재산신탁 7.1억 원 수준이다.

〈표 Ⅱ-7〉 신탁시장 상품별 비중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23년 말(A)	2024년 말(B)	증감(B-A)	증감률
금전신탁	퇴직연금		289.5	327.7	38.2	13.2
	수시입출금		75.6	92.5	16.9	22.4
	정기예금형		68.9	71.6	2.6	3.8
	채권형		72.9	64.2	△8.7	△12.0
	주가연계신탁		31.6	13.0	△18.6	△58.9
	기타		48.7	50.3	1.6	3.1
	불특정		14.4	13.5	△0.9	△6.1
	소계		601.6	632.8	31.2	5.2
재산신탁	부동산	담보신탁	358.2	387.2	29.0	8.1
		토지신탁	99.2	101.5	2.3	2.3
		관리·처분신탁	25.9	26.3	0.4	1.5
	금전채권		215.0	220.1	5.1	2.4
	유가증권 등		10.0	9.4	△0.6	△6.1
	소계		708.3	744.5	36.2	5.1
종합재산신탁			0.8	0.8	0.0	5.5
합계			1,310.7	1,378.1	67.4	5.1

자료: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2022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신탁업 인가를 받은 회사는 총 60개이며, 은행 18개, 증권사 21개, 보험사 7개, 부동산신탁사 14개 등이다. 보험권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7개 회사가 신탁업 겸영을 위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았다. 업권별 수탁잔고는 2024년 말 은행 648.1조 원(전체 수탁고의 47%), 증권사 275.1조 원(20%), 부동산전업신탁사 427조 원(31%)이며 보험사는 27.9조 원 규모로 전체 시장의 2% 수준이다.

〈표 Ⅱ-8〉 신탁업 인가 유형

구분			개수	회사명	인가 단위		
					종합	금전	부동산
겸영	은행	국내 은행	16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씨티, 국민,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산업, 기업, 농협, 수협, 전북	O		
				제주		O	
		외은 지점	2	도이치, 홍콩상하이		O	
	증권사		21	현대차, NH, SK, 교보, 대신, DB금융투자,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영, 신한투자, 유안타, 유진투자, 하나, 한국투자, 키움한화투자, KB, IBK, 키움	O		
				하이투자, 우리투자		O	
	보험사		7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O		
				교보생명, 삼성화재, KB손해보험		O	
전업	부동산신탁사		14	KB부동산, 교보자산, 대신자산, 대한토지, 무궁화, 신영부동산, 신한자산, 우리자산, 코람코자산, 코리아, 하나자산, 한국자산, 한국토지, 한국투자부동산			O
계			60		38	8	14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 3. 27.), "2024년 신탁업 영업실적[잠정]"

국내 특별수요신탁상품은 중 장애인특별부양신탁과 후견신탁은 과거 은행권을 중심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현재 설정 건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공식적인 전체 수탁 잔고나 계약 건수에 대한 통계집계가 되지 않아 신탁시장 내 비중이나 추이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이나,[21] 보도자료 및 금융투자협회 제공 자료에 근거할 때 그 이용 실적이 매우 미미한 수

21) 금융투자협회 제공 신탁 계약현황 자료에서는 신탁 종류를 금전신탁/재산신탁/종합재산신탁/기타로 구분, 금융감독원 연차보고서에서는 은행신탁 수탁고 추이가 금전/재산/기타로 구분되는 등 장애인특별부양신탁 자료를 별도로 제공

준임을 알 수 있다.[22)]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말 금융투자협회에 보고된 관련 상품의 설정 건수는 전체 36건, 수탁액 155.4억 원으로, 이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NH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7개 은행, 보험, 증권사의 모든 실적을 합한 수치이다. 2025년 6월 본 연구를 위해 진행했던 은행, 보험, 증권 업계 신탁 전문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S증권을 제외하면 2018년 금융투자협회에 보고되었던 설정 건수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3)]

〈표 Ⅱ-9〉 금융권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상품 현황

구분	상세	상품명	출시 시기
은행	KB국민	KB장애인평생케어신탁	2023. 5
	신한	신한 S Life Care 장애인신탁 미래안심신탁	2022. 6
	우리	우리장애인사랑신탁	2018. 9
	하나	장애인신탁 하나 Living Trust/Care Trust[주)] 성년후견지원 신탁[주)]	2010
증권사	신영	장애인특별부양신탁	2018
	KB	장애인부양신탁 KB치매안심신탁	
보험회사	삼성생명	생전설계신탁/매칭신탁 특별부양신탁	2008.11
	미래에셋생명	평생부양신탁	2009. 9

주: 금융권 최초 '1:1 맞춤 설계형' 유언대용신탁으로 출시
자료: 한겨레(2019. 10. 20.), "이름값 못하는 '장애인 부양 신탁'"; 각사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이의 원인으로 복지 수급권 상실에 대한 부담, 원본 인출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필요에 따라 자산을 활용할 수 없는 점, 대부분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는 원본 자산에 대해 매각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증여세 즉시 부과 위험으로 인한 부담감, 신탁 해지 후 재설정

하지 않음

22) 조세금융신문(2020. 6. 25.), "[금융세제선진화 세미나] 외면받는 장애인신탁…면세·원본 인출 족쇄가 문제"

23) 최근 보험권 신탁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2025년 6월)에서, 장애인특별부양신탁, 후견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 중 수익자를 장애인 자녀로 설정한 경우를 모두 합한 계약 건수가 각 회사별 5건 미만으로 나타남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상담자의 대부분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인데, 성년후견인 선정에 대한 시간적,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계약으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기관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는 밀접한 관리서비스 제공 요구에 비해 저금리로 인한 신탁수익의 한계, 사회공헌 차원의 낮은 신탁수수료 부과 등으로 인한 수익성 한계 등도 공급의 적극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림 Ⅱ-13〉 금융권 특별부양신탁 설정 추이

(단위: 건,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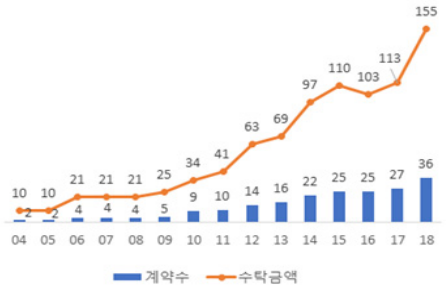

주: 2018년 말 7개 취급 회사 누적 설정 건수
자료: 금융투자협회(2025. 6.)

〈표 Ⅱ-10〉 금융권 특별부양신탁 계약 현황

구분		계약수(건)			자산 규모 (억 원)
			부동산	금융*	
S증권	신체	15	9	6	64
	정신	16	9	7	64
	합계	31	18	13	128
생보 Top3		5	N/A	N/A	20

주: 금융은 금전신탁, 유가증권신탁의 합계임
자료: S증권(2024. 12.); 생명보험협회(2025. 5.)

이에 비해 발달장애인신탁의 이용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1월 현재 국민연금 시범사업에서 수탁한 경우가 169명, (사)자폐인사랑협회에서 수탁 중인 경우가 440명으로 전체 609명의 발달장애인신탁이 가동 중으로, 특별부양신탁에 비해 이용이 활발하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자폐인사랑협회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73.4%가 홀로 생활하는 무연고 발달장애인이었으며, 24.4%는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 2.2%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순이었다(한국자폐인사랑협회 2025). 2025년 8월 현재 수탁 규모는 총 98억 원 수준으로, 대부분이 금전신탁(일반 예금) 형태였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와 지원인 21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6.9%가 "돈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답했으며, 87.6%가 "참여 전 기대했던 서비스 욕구가 충족됐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하였다.[24)]

24) 미디어생활(2024. 12. 26.),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은행권 중심으로 판매 중인 유언대용신탁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나, 5대 시중은행 전체 수탁자산 규모가 약 3.5조 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들 중 장애인이나 치매 수익자 등 취약층 수익자를 위한 유언대용신탁의 비중은 더욱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25] 다만, 후견(감독)사건의 접수 건수는 최근 16,000여 건을 초과하며 꾸준히 증가하여, 후견제도 시행 이후 2023년 말까지 총 127,990건에 이르고 있는데,[26] 이는 국내 고령자 인구 약 950만 명 기준, 1.35%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로 후견제도와 신탁 법제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 시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일본은 2019년 성년후견제도 누적 청구건수 54.5만 명, 고령 인구 약 3,589만 명의 1.52% 수준임).

〈그림 Ⅱ-14〉 유언대용신탁 규모 추이 및 후견감독사건 접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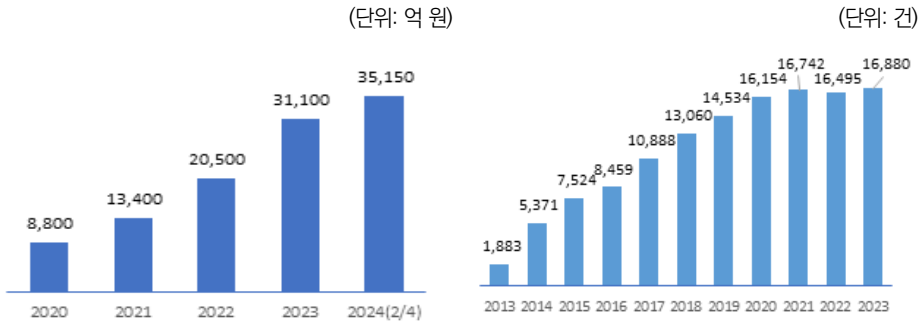

자료: 매일경제(2024. 6. 21.), "돈 맡기고 편히 떠나자-은행 유언신탁"

자료: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2024)

4. 소결

국내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관련 제도 및 시장 현황을 살펴본 결과를 크게 장애인 신탁 부문과 고령자 신탁 부문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신탁상품 중 유일하게 상증세법상의 혜택이 제공되는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제도 도입 후 28여 년의 시간이 지났으나 사실상 유명무실의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신탁 원본

25) 2025년 6월 은행업계 신탁 담당자들과의 전화 인터뷰 시, 회사별 5건 미만으로 조사됨

26) 성년후견제도는 개시 이후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원인이 소멸하거나 사망함으로 종료될 때까지 지속됨

의 인출 제약과 운용의 경직성이 높은 가운데, 대부분 노동능력이 매우 제한적인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는 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한 보장이 되고 있지 않은 점이 신탁 설정을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었다. 원본 인출 제약이나 자산가치 변화로 인한 증여세 재부과 위험이 높은 현 제도는 장애 자녀를 위해 최대 5억 원의 증여세 면세 혜택을 누리면서, 생활비 충당을 위한 보완적 수단에 대한 확보가 가능한 일부 고자산층 중증 장애인 보호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상황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비금융권을 중심의 발달장애인신탁의 경우, 유연한 신탁 설계, 일상생활과 밀착된 입출금 모니터링, 목돈 인출의 필요에 맞춘 재산관리서비스 등 인지취약 장애인의 부족한 재무관리 능력을 보완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다만, 세제 혜택의 부재, 제한된 사회복지사 인력에 의한 무료 서비스 제공 등으로 소액 다건의 관리 계좌 부담 등으로 인해 이용자 규모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 부문의 개입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고령자 신탁 부문의 경우, 유언대용신탁이나 후견신탁의 이용 시 재산에 대한 소유권 분리, 적절한 후견인 선정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 신탁 자체에 대한 인식 저변이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가정법원을 통한 후견인 선정이나 공증·등기 등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 심리적, 실질적 부담이 신탁의 활용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친족 후견인 비중이 80%를 넘는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재무적 후견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후견인의 참여 확대나 민간 후견인에 대한 자격 요건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후견제도와 신탁과의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후견인에 의한 재산 남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등 수요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신탁업자의 입장에서는 장애인 신탁이나 고령자 신탁 모두 신탁 설정에서부터 관리에까지 서비스 부담이 큰 상품임에도 수수료 설정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제한된 관리 수수료 하에 다양한 신탁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제약이 따르고, 수수료 수준이나 서비스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업계의 가이드라인도 없어 실무자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장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민영 공급자의 소극적인 참여는 충분히 논리적이며, 관리형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시장 특성별 공사 분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충분한 니즈 환기를 통해 신탁상품의 장점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가 제고될 경

우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에 대한 이용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하나금융연구소(2024)의 연구보고서에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인지도가 전체 중산층 연구 대상자의 9% 수준이었으나 상품 설명을 제시했을 때 42%가 이용 의향을 보일 만큼 관심이 높았다. 부유층의 전유물로서의 인식이 강한 신탁에 대한 이미지를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 대중들의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에 대한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Ⅱ-15〉 국내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관련 제도 변화

자료: 저자가 작성함

Ⅲ 해외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현황

해외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은 크게 영미법과 대륙법으로 양분되는 신탁 및 증여상속 관련 법제 환경의 차이, 신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정도, 신탁을 통한 취약자 지원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향이나 적극성 정도 등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본 장에서는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제도를 운영 중인 주요 국가들의 제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되, 특히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법제를 갖는 일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1. 영미권 특별수요신탁 및 취약자신탁

영미법 기반의 국가들에서는 이미 중세 영국 형평법(Equity Law) 등의 영향으로 재산의 법적 명의와 실질적 이익이 분리되는 신탁의 개념이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정착되어왔다. 사적 계약의 자유를 중시하는 영국과 미국의 법제 하에서 신탁의 유연한 설계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신탁이 발달할 수 있었다.

인지취약자 지원을 위한 신탁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기존 복지제도나 세제 부과에 있어 이들의 취약성(자신의 재무상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해 불리한 지위에 놓일 가능성을 제거하는 형태로 진화하였다. 미국에서는 1985년 Sullivan vs. Webley 사건[27]을 계기로 장애인이 신탁을 통해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면서도 복지 수급 자격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연방법 차원의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영국은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을 활용한 장애인의 자산 보호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1984년 상속법 개정으로 관련 세제가 강화되자 동일 기준으로 장

27) Sullivan v. County of Napa, 526 F. Supp. 395(N.D. Cal. 1981); 항소 후, 763 F.2d 1266(9th Cir. 1985): 장애가 있는 원고가 법정 승소금을 받아 신탁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나 Medicaid와 SSI 수급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면서 '법정 손해배상금을 공공복지 수급자격 심사 기준인 가용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가', '신탁이 수익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라는 법정 쟁점에 대해 당시 일관되지 않은 해석이 존재하였음. 이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주 정부 등 공공 부담 완화를 위해 1993년 OBRA 1396p(d)(4)의 개인 특별수요신탁과 집합신탁이 도입됨

애인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Real equality)'에 반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취약층 수익자(Vulnerable beneficiary)'에 대한 상속세 예외 적용 규제를 법제화하였다. 아래에서 미국과 영국의 인지취약자 지원을 위한 신탁 제도 특징과 이용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미국의 특별수요신탁(Special 또는 Supplementary Needs Trust; SNT)

미국의 특별수요신탁은 근로소득 능력이 제한된 장애인 등이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연방 의료급여 Medicaid와 소득급여(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의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신탁으로, 연방사회보장법(Federal Social Security Act; FSSA)과 각 주의 신탁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93년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OBRA)를 통해 장애인 신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42 U.S. Code §1396p),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의 내부지침서(Program Operations Manual Systems)에서 복지제도 수급 자격 평가 자산 기준에 신탁자산의 예외 취급을 허용함으로써 도입되었다.

〈표 Ⅲ-1〉 미국 특별수요신탁의 근거 법제

근거 법령		내용
연방사회보장법(FSSA) 42 U.S.C. §1396p(d) - 신탁자산액의 취급 (Treatment of trust amounts)	(d)(4)(A)	개인형 SNT에 대한 규정(제3자)
	(d)(4)(C)	집합형 SNT에 대한 규정
사회보장청(SSA)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Program Operations Manual System; POMS)	SI 01120.201 신탁-일반(Trusts-General)	Medicaid/SSI 수급자 자산 평가 시 신탁자산 포함 기준
	SI 01120.203 예외(Exceptions)	신탁(특히 d(4)(A), (C) SNT의) 자산 예외 인정 기준

자료: Cornell Law School 홈페이지

각 주마다 신탁 설립 요건, 승인 절차, 신탁종결 시 자산 환원 강제 여부 등에 대한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타익신탁(Third-party SNT) 형태로 신탁재산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로써 수익자는 이연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복지 수급 자격 평가에서 해당 자산이 제외될 수 있었다.[28] 2016년

‘Special Needs Trust Fairness Act’ 재정 이후 장애인 당사자의 유산, 법정 지급금, 근로소득 등 본인의 자산을 출연하여 자익신탁(First-party SNT) 형태의 특별수요신탁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신탁 기간 동안은 Medicaid, SSI 등 공공 복지의 혜택을 누리되, 신탁 종료 시 생전 지원받은 공공복지 비용을 잔여 신탁자산에서 우선 상계하도록 하는 환수 조항(Payback provision)이 추가됨으로써 공공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Ⅲ-2〉 미국 특별수요신탁의 유형

구분	자기출연 SNT (First-party SNT)	제3자출연 SNT (Third-party SNT)	집합 SNT (Pooled SNT)
위탁자	• 수익자 본인 외 부모/조부모/법정 후견인/법원 중 하나	• 수익자 본인 외 누구라도 가능(유언으로도 가능)	• 자기출연의 경우, 장애인, 그 부모, 조부모 또는 법원
수탁자	• 수익자 이외의 자 (개인/법인)	• 수익자 이외의 자 (개인/법인)	• 민간 비영리기관
수익자	• 65세 미만 장애인	•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	• 연령 제한 없음(일부 주 예외) • 다수 수익자가 개별 계좌 보유
신탁 재산	• 수익자 본인의 재산 출연 • 개인 상해보험금, 부모로부터의 유산 등을 통해 출연	• 수익자 외 누구나 출연 • 타인의 일생 동안의 기여, 유산 등을 통해 출연	• 자기/제3자 출연 모두 가능 • 소규모 자산 신탁 시 유리 • 집합적 운용이 되는 것은 아님
설계 특징	• 수익자 사망 시까지 해지 불가 • 신탁 종료 시 Medicaid 과거 이용 비용 우선 상계 후 잔여 기금 분배	• 취소가능 설계도 가능 • Medicaid 비용 상계 의무 없고, 기타 수익자 지정 가능	• 취소불능 설계로만 가능 • 관리 수수료 최소 수준 부과 • Medicaid 상환 후 잔여 기금 수탁기관에 지속 존치도 가능

주: 제3자출연 SNT는 연방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고 주법 및 신탁법 일반 원칙에 따르며, Medicaid 및 SSI 수급권 관련 POMS 지침에 의해 간접적으로 인정됨

특별수요신탁의 수익자는 신탁 설정 당시 SSI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연방사회보장법(FSSA) 및 사회보장청(SSA)의 규정에서 성인의 경우, ‘월 1,550달러(2024년 기준)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제활동(Substantial Gainful Activity; SGA)을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28) 각 주별로 상이한 신탁법의 조화 및 현대화를 위해 미국법률협회(The American Law Institute)에서 각 주의 판례법을 정리한 신탁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rusts)와 ‘주법 통일을 위한 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에서 신탁 관련 포괄적 모델법으로 제정한 통일민법전(Uniform Trust Code of 2000; UTC)을 과반수 이상의 주에서 채택 중임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미성년인 경우는 '주요 기능의 2개 이상의 영역에서 제한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정의되어 있다. 최근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약물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중증으로 진전되어 의사결정 능력까지 상실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Ⅲ-3〉 미국 특별수요신탁의 수익자 요건: SSI의 장애인 정의 및 심사 기준

근거 법령 및 실무 지침		특별수요신탁 수익자로서의 장애인의 정의	
근거 법률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0, Part 416, Subpart 1 (장애의 정의)	성인 (18세 이상)	의학적으로 확인 가능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근로활동(SGA)'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람은 장애인으로 간주됨. 이 손상은 a)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거나, b) 최소 12개월 이상 계속되었거나,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함(CFR §416.905(a))
		미성년	의학적으로 확인 가능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해 뚜렷하고 심각한 기능적 제한이 발생하고, 그 손상이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아동은 장애인으로 간주됨(CFR §416.906)
실무 기준	• SSA의 장애판단 절차 (Disability Determination Process), • 손상의 목록(Listing of Impairments) (20 CFR Part 404, Subpart P, Appendix 1)	5단계 심사 기준	1. 현재 경제활동(SGA) 여부 2. 심각한 장애 여부 3. 장애 목록(listing) 해당 여부 4. 이전 직무 수행 가능성 5. 기타 직무 수행 가능성
		장애 목록	• 성인용(1~12): 신체계통별로 근골격계, 감각/언어, 호흡기계, 심장질환, 소화기계, 비뇨기계, 신경계, 및 정신장애 등으로 구분 • 아동용(100~112): 학습과 인지 기능, 사회적 관계, 집중력과 작업속도, 자기관리, 신체건강과 체력 유지 중 2개 이상에서 현저한 제한이 있는 경우 • 위의 Listing과 잔존기능능력(Redidual Functional Capacity; RFC)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

자료: 미국 연방법 홈페이지

미국의 특별수요신탁은 원칙적으로 일반 신탁과 동일하게 과세한다. 즉, 특별수요신탁에 신탁된 자산은 장애인의 공적 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非)산정자산(Non-countable asset)으로 인정될 뿐, 증여 및 상속세 상의 혜택은 없다. 다만 제3자 특별수요신탁인 경우 인당 연간 18,000달러(2025년 기준) 또는 최대 생애면세한도(Lifetime exclusion) 13.6만 달러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상속세의 경우 부모 사망

시 상속세 대상이며(생애면세한도액까지 면세). 자익신탁의 경우 주정부 환수 규칙에 따라 Medicaid 비용 상환 후 과세한다. 신탁자산으로부터 얻는 이자, 배당, 양도차익 등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방식(최고 37%)인 일반 개인소득세(자익신탁) 및 신탁 소득세율(타익신탁)을 적용한다. 집합SNT의 경우 각 세분화된 계정을 독립적 세무 단위로 해석하고 있어(IRS Rev. Rul. 83-25), 계정별로 신탁 유형에 따라 과세한다.

치매의 경우, 미국 장애인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 심각한 인지적 손상(기억력, 문제해결 능력, 논리적 추론 및 의사소통 기술 등)으로 인해 주요 일상 활동을 제한하는 치매를 장애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의료, 요양,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미국 사회보장청(SSA)은 치매(Dementia)를 (신경)인지장애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장애목록 12.02), 장애수당 지급을 위한 자격을 규정하는 "Blue Book"에도 치매를 포함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초기 알츠하이머의 경우도 신속심사 대상 질환(Compassionate allowances)에 포함시킴으로써, 연방장애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및 SSI의 수급 개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즉, 미국의 초기 및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특별수요신탁의 수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자익 신탁은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령자 비중이 높은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인 경우는 집합(Pooled) 또는 제3자(Third-party) 특별수요신탁을 활용해야 한다.

특별수요신탁 외에도 본인의 인지 저하 상태에 대비하여 취소불능신탁인 '메디케이드신탁(Irrevocable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 MAPT)'을 설정하거나 지속적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 DPOA)을 통해 신탁의 설정·변경 권한을 명시할 수 있다. MAPT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 후 Medicaid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으나, 원본 인출이나 수탁자 변경 등이 불가하다. Medicaid 혜택 없이 보다 유연한 신탁 설계를 원하는 경우는 DPOA와 함께 취소가능 '생전신탁(Living Trust)'을 통해 의료지시, 지출 계획, 사후 자산 분배 기준이나 후견인 지명 등을 할 수 있다.

위임장 없이 치매 등으로 무능력자가 되는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 후견인 'Conservator'[29]를 지명하여 기존 신탁에 대한 관리를 위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신탁의 설정이나 수익자 변경 등은 불가능하다. 다만, MAPT 설정이나 증여자산 보호 목적 등과 같은 예외적인

29) 미국에서는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위주로 지원하는 경우를 Guardian, 금전이나 재산관리 위주로 지원하는 경우를 Coservator로 구분함(단, 주별로 두 경우 모두 'Guardian'으로 통칭하기도 함). 개별 계약에 의한 위임장에 의해 지정되는 대리인인 Durable Power of Attorney, 복지 수급권 대리 수령자인 Representative payee와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재산관리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과 유사함

경우, 법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신탁 설정 권한이 부여되기도 한다.[30] Conservatorship은 주로 가족, 병원, 변호사 등이 법원에 청구하면 의료보고서, 심리평가, 가족 진술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지명하게 되는데, 이들은 정기적으로 법원에 재산관리 보고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이들 중 주 정부에 등록된 자를 공공후견인으로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재산관리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은 보수를 받고 후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후견인(Professional guardian)인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전문후견인은 하나의 직종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주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등록 및 자격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국후견인협회(National Guardianship Association)와 대학 및 법률대학원 등에서 전문후견인 표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격시험을 시행하며, 윤리강령이나 실무지침서 등을 제공한다. The Center for Guardianship Certification에서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정기적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각 주마다 다른 신탁 법제, 세제, 복지제도 등에 대한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적 안내가 필요한 특별수요신탁의 특성상 주로 신탁법, 상속법 및 노인법(Elder Law) 전문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신탁의 설계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The ARC, PLAN of Massachusetts & Rhode Island, Guardian Community Trust 등 집합 특별수요신탁에 특화된 비영리단체 신탁회사도 전국적으로 존재하며, 전문 재무상담사(Financial advisor) 등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신탁자산의 운용을 담당하거나 고객 서비스 차원의 증여상속설계(Estate planning)로 신탁 전문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신탁제도의 생태계에서 인지취약자 등에 특화된 재정보호 솔루션을 제공 중인 True Link Financial[31]의 경우, 1,000여 개 이상의 법무법인, 후견인, Pooled Trust 운영기관 등을 위해 특별수요신탁과 보호자 관리형 카드를 연동하고, 일상 소비지출 카테고리 제한, 공공기관 제출용 지출 보고서 자동 생성, 후견인을 위한 사전 승인 필요 지출 및 긴급 지출 승인 및 알림서비스 제공, 모바일 앱 기반 수익자와 관리자에 의한 실시간 지출 조회 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탁시장의 기술적 플랫폼과 API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사신탁 중심의 미국 특별수요신탁은 그 규모 파악이 대략적으로라도 매우 어려운 상황

30) Uniform Guardianship, Conservatorship, and Other Protective Arrangements Act(UGCOPAA)에서 법원이 '보호적 조치'인 경우 후견인에게 특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신탁 설정도 이에 포함됨

31) True Link Financial 홈페이지

이지만, Visible National Trust[32]에 의하면 미국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등록장애인을 약 7,000만 명, 이 중 평생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인을 약 2,300만 명 정도로 볼 때 전체 가구의 약 17%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특별수요신탁에 대한 잠재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 영국 재량신탁 및 장애인/취약인신탁(Disabled/Vulnerable Persons Trust)

영국의 장애인/취약인신탁(Disabled/Vulnerable Persons Trust)은 관련 법제(Menatal Health Act 1983 등)에 근거해 중증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판정받은 자 또는 장애 관련 수급 대상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다. 미국의 특별수요신탁과 유사하나, 일정 조건 충족 시 상속세법(IHTA 1984 s.89), 소득세법(ITA 2007 s.7), 자본이득세법(TCGA 1992 s.89) 등의 예외 적용을 통해 관대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영국은 상속세(Inheritance Tax), 증여세(Lifetime Gift Tax)와 함께 신탁자산에 대한 설정 및 분배 과세와 보유 과세를 10년 단위로 부과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취약층신탁의 경우 이러한 신탁 과세가 대부분 면제된다. 일반 신탁 설정 시 325,000 파운드 초과분에 대해 20% 상속세를 부과하나, 특별 수익자 신탁 요건을 충족하면 초기 자산 이전에 대한 상속세가 면제되고, 10년 경과 후 과세 및 수익자 변경 시에도 과세 되지 않는다.

〈표 Ⅲ-4〉 영국 특별수요신탁의 세제 혜택

과세 항목	일반 재량신탁 (Discretionary Trust)	장애인/취약층 신탁 (DPT/VPT)
설정과세(Entry charge)	최대 20%(£325,000 한도)	면제
10년주기세(10-year charge)	최대 6%	면제
분배과세(Exit charge)	비례 과세(최대 6%)	면제
소득세	최고세율(39.4% 등)	수익자 기준 일반세율 적용 가능 (국세청 취약층 자격 신고 필요)
자본이득세	연간 면세한도 £3,000	수익자 개인 면세한도 (£6,000) 적용 가능

자료: GOV.UK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로 저자가 작성함

32)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자산관리전문가와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수요신탁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으로, 법부법인인 Visible National Trust LLC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2021년 설립된 델러웨어 소재의 Visible Foundation을 수탁자(비영리법인)로 두고 있음; Visible National Trust 홈페이지

신탁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취약층 수익자 지위(Vulnerable Beneficiary election)를 국세청에서 인정할 경우, 장애인 개인 세율을 적용하고, 자본이득세 연간 면세한도(Annual Except Amount; AEA)도 전액을 적용받는 등 관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잔여 자산에 대한 사회 환원 의무가 없고, 신탁증서의 자율 규정에 따라 2차 수익자 또는 용도에 따라 분배되는데, 귀속 방식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적격 신탁의 요건은 장애인/취약인 수익자의 생존기간 동안 i) 신탁 원본 인출과 신탁 수익 지급이 장애인/취약인 수익자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ii) 타인이 잠재 수익자로 명시될 경우 지급 최대 금액이 연간 3,000파운드 또는 최대 신탁 가치의 3%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장애인/취약인신탁은 수탁자 권한이 최대화된 영국의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의 특수한 형태로, 재량신탁은 특정 수익자가 신탁자산의 원본이나 수익에 대해 고정된 권리를 갖지 않는 신탁이다. 위탁자의 의향서는 신탁 운용 방향에 대한 지침(Non-binding guidance)의 역할을 할 뿐 수탁자에게 신탁자산의 소유권과 함께 관리에 대한 상당한 재량을 위임한다. 즉, 잠재적 수익자군(群)(Named class of potential beneficiaries)을 지정하되,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원금과 수익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수익자의 필요에 맞게 자금 흐름을 제어하고 주변인의 자산 남용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수익자 스스로는 재산 관리권이 배제됨으로써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33]

이러한 재량신탁의 구조가 장애인/취약인신탁에 그대로 적용되며, 수익자의 복지 급여로 미충족된 욕구들(주거비, 휴가, 컴퓨터 구입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을 수탁자가 서비스 공급자(예: 요양시설, 집주인, 여행사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지불 방식(Non-access payments)을 통해 충당할 수 있고, 개별 수익자별로 추가 기금 설정이 가능하다. 단, 이러한 수탁자의 업무에 대한 수수료 부담도 상당할 수 있다.

33) 영국 복지급여규정(Social Security (Income and Capital) Regulations 2006)에서는 자산과 소득 기준을 실제 지급받은 금전·현물의 사용 가능성, 즉, 수익자의 '실질적 통제력(control)'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수익자의 지시 없이 수탁자의 판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수익자의 자산, 소득으로 간주 되지 않음

〈표 Ⅲ-5〉 영국 장애인신탁 및 취약인신탁의 수익자 요건

유형	세제 혜택을 위한 수익자 요건
장애인 수익자	정신건강법(Mental Health Act 1983)에 정의된 정신장애로 인해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에 정의된 중증 장애인
취약층 수익자 인정 복지 수급권	• 간병수당(Attendance allowance) 및 상시 간병수당(Constant Attendance Allowance) • 개인 독립수당(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PIP): 장기 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중상 이상 요양 등급만) 또는 이동에 제약(상급만)을 받는 경우 지급 •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DLA): PIP와 동일 요건(PIP로 대체 중) • 장애연금 증액분(Increased Disablement Pension) • 군인독립수당(Armed Forces Independence Payment; AFIP): 중증 이상 부상/장애만 • 산업재해장애보상금(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 IIDB) • 아동 장애수당(Child Disability Payment) 및 성인 장애수당(Adult Disability Payment): 아동 DLA 및 성인 PIP와 유사한 스코틀랜드의 지원금

자료: GOV.UK 홈페이지를 참고로 저자가 작성함

장애인/취약인 수익자의 자격 요건은 〈표 Ⅲ-5〉와 같고,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국세청에 장애인/취약인 자격(Vulnerable person election)을 신청할 수 있다.

영국 정신건강법에서는 정신장애(Mental disorder)를 '정신의 장애 또는 기능손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치매와 같이 진단명이 명확하고 뇌기능 퇴행을 수반하는 경우 정신건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특히 일상적 활동에 장기적 영향이 있는 경우[34] 평등법(Equality Act 2010) 및 장애인보호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에서 정의하는 장애에 해당하며, 영국 정부가 채택한 유엔장애인권리장전(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에서도 치매를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치매 및 인지장애 고령자를 위해서는 Court of Protection(가정법원)이 관장하는 법정후견인(Deputyship) 지정제도와 계속적위임장(Lasting power of attorney) 제도가 재량신탁과 연계되어 후견신탁이나 치매신탁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 계속적위임장 제도는 본인이 아직 인지 능력이 있을 때 치매 등으로 인한 능력 상실에 대비하여 미리 위임장을 작성하는 제도이다. 보호신탁(Protective Trust)은 수익자가 파산, 중독, 무절제 등으로 인해 자산을 소진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자산을 보호하는 목적의 신탁으로 임의후견신탁과 유사하다.

34) 일상적 활동은 컴퓨터 사용, 시간 약속 지키기, 타인과의 상호작용 등을 포함, 장기적이란 12개월 이상을 의미함

영국에서도 신탁은 영미권 법제를 가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민사신탁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취약인구를 위한 신탁의 경우 소수 대형은행에서 취급 중이나 대부분은 법무법인, 신탁전문회사, 재무관리자문사 등 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제공 중이다. 대표적으로는 Liklaters LLP, Clifford Chance LLP, Freshfiedlds Bruckhaus Deringer LLP, Allen & Overy LLP, Slaughter & May 등에서 취약인신탁을 취급 중이며. 장애인 권익 옹호단체 Disability Rights UK,[35] Care Quality Commissions, Citizens Advice Bureau, Scope[36] 등은 취약인신탁 설정 절차를 지원하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직접 신탁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독립 신탁회사와 협업하여 취약인신탁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 주요 은행들에서도 장애인신탁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추세에 있다. 2024년 9월 영국의 대표적 은행인 Nationwide는 연말까지 장애인신탁 계좌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장애인 단체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일반 시중 은행 중 유일하게 장애인신탁을 제공 중인 Metro Bank의 경우, 25,000파운드 이하의 잔액에 대해 월 5파운드 정도의 관리 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Cater Allen과 같은 일부 프라이빗 은행에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장애인 신탁 계좌 서비스를 최소 설정액 기준 없이 무료로 제공 중이지만, IFA 등의 전문 중개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2. 싱가포르와 홍콩의 공공 특별수요신탁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장애인 지원 신탁이 공공 부문의 개입이 강화된 모델로 발전하였다. 싱가포르는 2000년대 지적장애인의 재산 침해 사례가 누적되면서 MINDS (Movement for the Intellectually Disabled of Singapor) 등 장애인권리옹호단체를 중심으로 저비용 공공 특별수요신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었고, 2008년 정부 주도의 비영리 공공신탁기관인 Special Needs Trust Company(이하 'SNTC'라 함)의 설립을 이끌었다. 홍콩은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크하여 정부 기구가 직접 수탁자가 되는 형식으로 공

35) 영국 정부 산하 기관으로, 장애인 인권 옹호, 인식 개선 운동, 정책지원을 담당하며, 사내 50% 이상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됨

36) 영국의 대표적인 장애인 고용 지원 및 권리 옹호 기관으로, 생명보험신탁이나 장애인신탁 설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임. 유사한 단체로 학습장애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Dosh와 자폐성장애인에 특화된 National Autistic Society에서도 신탁 설정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공 특별수요신탁이 도입되었다. 집합적 운용방식, 복지 수급권의 미보장 등 홍콩식 공공신탁은 싱가포르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상속세가 없는 세제적 특징이나 공공 부문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사전 상담 및 사후 관리강화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양국의 공공신탁 부문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히 각국의 특별수요신탁 현황을 살펴본다.

가.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사회가족부(M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MSF) 산하에 2008년 설립된 SNTC는 특별한 요구를 가진 개인을 위해 신탁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신탁회사이다. SNTC는 공공기관(Institute of Public Character) 자격을 가진 등록 자선단체(Registered charity)이자 공공신탁청(Public Trustee's Office; PTO)의 파트너 회사로, 신탁자산의 보관·운용 등 실질적인 수탁자의 역할은 PTO가 수행하고 있다. SNTC는 신탁 계약의 체결과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NCSS(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를 통해 정부 보조를 받고, 사회가족부(MSF)와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의 감독을 받는다. SNTC는 2025년 4월 1일부터 MSF 산하 장애인 대상 복지·재활·취업 연계 플랫폼인 SG Enable[37]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SNTC는 특별수요신탁의 수익자 요건을 "신체적, 감각적, 지적 및/또는 발달상의 장애 및 정신적 장애(Mental disorder)로 인해 교육 및 훈련 기관, 고용, 여가 활동 등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진입·유지·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제약되는 자(Persons with Special Needs; PSN)"로 정의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위탁자(Settlor)는 21세 이상의 PSN의 보호자로, 정신적 제약이 없고 파산자가 아니어야 한다.

싱가포르식 특별수요신탁은 맞춤화된 사전 상담과 사후 관리, 최소 설정 자금 및 수수료 지원, 수탁자산의 원금 보장 등 크게 3개 부문에서 SNTC를 통한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특별수요를 가진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를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 경험이 풍부한 전문 사례관리자(Case managers)들이 종합적 필요도 조사(Holistic needs assessment)를

37) 2013년 싱가포르 사회서비스부(MSF) 산하 센터로 출범한 장애인 지원 및 역량 강화 전문 공익기관으로, 협의의 공무조직은 아니나 정부 기능을 위임받은 보증 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형태의 준공공기관임. 법인명의 자산 소유가 가능하나 배당금 지급은 불가하며, 공익기관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제공함

수행하고, 개별 수익자의 필요를 반영하여 맞춤화된 돌봄설계(Care plan) 비용을 산출한다. 무료 초기 상담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특별수요신탁 설정이 이루어진다. 신탁 활성화 이후에는 돌봄 설계서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탁 운영자(Trust administrator)는 최소 연간 1회 이상의 주기적인 점검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탁 계정 설정을 위한 최소 요구 자금이 부족한 경우나 수수료 지급 여력이 부족한 경우 이를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신탁 설정을 위해서는 최소 5,000SGD가 요구되며, 수탁자산은 현금, 보험금, 유언장 등에 명시된 현금성 자산, 국민연금 상속분(CPF Nomination) 등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유가증권 등은 포함될 수 없다. 공공보험 및/또는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CPF(Central Provident Fund)[38]의 상속인 지정(Nomination)을 통해 수탁자산을 공급할 수 있는데 최초 설정 이후 보호자의 사망까지 신탁 계정은 비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되나 연간 관리 수수료는 발생한다. 부모 사후 또는 불능(incapacity) 상태가 발생하면 특별수요신탁 계정이 활성화되고 신탁 목적에 명시된 자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 신탁 기간 중 언제라도 정기적 또는 일시금으로 수탁자산을 추가(Top-up)할 수 있다.

〈그림 Ⅲ-1〉 싱가포르 SNTC 특별수요신탁의 구조 및 수수료 보조금

SNTC 특별수요신탁의 구조(Trust pathway)

1. 초기 설정 자산 5,000SGD로 SNTC 신탁 계정 열기
2. 보호자의 유언장, CPF 현금 및 보험 수익자 지정 등을 통해 증여·상속 자산을 해당 계정으로 수령
3. 보호자 사망 또는 불능 발생 시 신탁 목적(Letter of intent)에 명시된 대로 수익자에게 자금 지급

특별수요신탁 관리 수수료에 대한 정부보조금

수수료 유형	보조 전 수수료	MSF 보조 비율	보조 후 수수료
초기 설정 수수료	S$1,500	90 %	S$150
미활성 계좌 연간 관리수수료	S$250	100 %	S$0
계좌 활성화 수수료	S$400	90 %	S$40
활성 계좌 연간 관리수수료	S$400	90 %	S$40

자료: SNTC 홈페이지

38) Central Provident Fund는 싱가포르의 국민연금 및 사회보장 기금제도로, 한국의 국민연금+주택청약+건강보험+퇴진연금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임. 근로자와 고용주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납입하여, 세 가지 계좌(Ordinary/Special/Medisave account)로 나누어 사용하게 되고, 사망 시 남은 자산은 상속자 지정(CPF Nomination)을 통해 누가, 어떤 비율로 수령할 지를 미리 정하는 제도로, 개인(가족, 지인) 또는 기관(SNTC, 자선단체 등) 지정이 가능하며, 유언에 대해서도 우선 효력이 있는 상속 지시로 간주됨

싱가포르 사회가족부(MSF)의 보조금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수익자의 신탁 관련 수수료를 90~100%까지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초기 신탁 설정자금 5,000SGD에 대한 지원도 자산조사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 1:1 매칭 보조금 제도(Dollar-to-dollar co-matching grant)를 통해 특별수요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신탁 계좌의 설정 및 활성화, 연간 관리 수수료 등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줄이고, 초기 신탁 설정자금 5,000SGD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 자격심사를 통해 전액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Financial Assistance Scheme과 GOAL(Gift of a Lifetime)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기업과 단체들의 기부금 및 후원 자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특별수요신탁 설정 지원금 및 매칭펀드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싱가포르 최대 보험사인 Greater Eastern Life Assurance[39]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10만 SGD(약 1억 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SNTC 특별수요신탁 고객 특화 정기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표 Ⅲ-6〉 참고). 즉, GOAL 캠페인 등을 통해 조달된 재원으로 특별수요 자녀를 둔 부모의 SNTC신탁 설정의 초기비용 5천 SGD를 지원하고, 이후 신탁 계좌로 납입하는 부모의 기여분에 대해서도 매칭펀드를 제공하면, 이 자원을 이용해 정기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모의 사후 또는 중대질병 발생 시 10만 SGD가 신탁 계정으로 입금되어 자녀를 위해 사용되게 되는 구조다.

〈표 Ⅲ-6〉 싱가포르 'Greater Eastern Cares Term Plan'

상품 특징		상품 내용
Great Eastern A member of the OCBC Group	• 2021년11월 SNTC와 MOU 체결 • 일부 자선/비영리단체(예: SNTC 취소불능 특별수요신탁 고객)와의 배타적 계약으로만 제공 • 최소한의 보험료로 사망 및 중대질병에 대한 기초 보장이 가능한 정기보험으로 설계(최소 10만 SGD 보험금 지급) • 신탁자산 금전(Monies)을 보험료로 사용: 보호자의 신탁자산 납입액에 STNC 등의 재원에서 매칭펀드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줄임(최대 5천 SGD)	• 보험료: 최소 보험료 연 120SGD • 보장범위: 10만~30만 SGD • 보장기간: 85세 또는 100세 중 선택 • 피보험자: 17~75세 • 보험계약자: 17세 이상

자료: Greater Eastern Life 홈페이지 상품 브로셔; SNTC의 홈페이지 GOAL 내용 참고하여 정리함

39) 1908년 설립된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최초 최대 종합보험회사로, OCBC은행의 자회사(88.4% 지분 보유)임. 동남아 주요국을 사업 지역으로 생명, 건강, 재산, 상해, 일반 보험, 금융상품 등을 두루 제공하며, 특히 공적 장기요양보험, CPF(Central Provident Fund) 기반의 Dependents' Protection Scheme 등 국가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수백만 정책 가입자를 보유한 아시아 지역 주요 보험사 중 하나이며, 2017년 기준 84.5bil SGD, 2020년 약 800만 건(500만 건 이상이 정책 기반 보험) 계약을 보유 중임

치매 고령자 및 경도인지장애를 명시적으로 특별수요신탁 수익자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안내 영상을 제공하고 있어 초기 요구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시 특별수요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법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싱가포르는 정신능력법(Mental Capcity Act 2008)에 근거하여, 고령자의 인지기능 상실 이전에 재산·복지·의료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위임인(Donee)을 지정하는 지속적 대리권 위임제도(Lasting Power of Attorney; LPA)를 활용하거나, 인지기능 상실 시 가정법원 지정의 후견적 재무관리인인 'Deputyship'과 민사신탁의 연계를 통해 후견신탁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여상속 목적 신탁 설계 서비스와의 연계도 활발하다.

신탁과세 관련 싱가포르의 경우, 2008년 Estate Duty 폐지 후 증여, 상속세가 없으며, 신탁자산의 운용수익에 대해 17% 법인세율을 SNTC에 부과한다. 수익자에게 분배된 소득에 대해서만(20,000 SGD 이상의 과세소득에 한함) 개인소득세 과세 기준에 따라 0~24%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SNTC의 공익기관 지위로 인해, 특별수요신탁 지정 기부금 등에 최대 250%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SNTC는 특별수요신탁과 함께 특별수요저축계좌(Special Needs Savings Scheme)를 2014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SNSS는 부모의 CPF 상속인으로 특별수요가 있는 자녀를 지정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자녀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한 계좌로 이자수익이 보장되며 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부모의 자산이 CPF 계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별수요가 있는 자녀의 재산관리 능력이 사례 관리가 불필요한 정도로 자립적일 때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수익자 요건은 싱가포르 영주권자이며, 6개 ADL(씻기, 옷 입기, 식사, 화장실 사용, 실내외 이동, 자세의 전환) 중 1개 이상에서의 보조가 요구되거나, 특수교육(SPED) 학교에 재학하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이다.

SNTC의 SNT와 SNSS로부터의 수입이 특별수요가 있는 자에게 "보완적(Supplemental) 수익"인 경우, 자산조사 기반 복지 자격(의료비 보조금인 Medifund, 저소득층 고령자 대상 소득 급여인 Silver Support Scheme, 공공임대주택 신청 등)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이를 위해 SNTC 상담사와의 초기 돌봄 및 지출계획 수립 시 간접 결제 방식 지정 등 신탁 구조 설계에 주의가 필요하다.

SNTC는 특별수요신탁 및 저축계좌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및 홍보 활동을 담당하는 한편, 민간 비영리단체,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특별요구 당사자들과 가족 및 보호자

를 위한 직접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정부와 협업하며, 다양한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을 확대하고 있다.

2016년 돌봄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해 Institute of Financial Literacy(IFL)와 MoneySENSE and Singapore Polytechnic의 재무교육 프로그램 제공, 2019년 이슬람 가족들의 SNT 후원 약정을 위해 Majlis Ugama Islam Singapura(MUIS)와의 MOU 체결, 2020년 저소득 가구 재무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250명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대상 SG Financial Capability and Asset Building(FCAB)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으며, COVID19 기간 동안 SG Enable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들에게 재무 및 심리 상담 등을 제공했다. 2023년에는 Financial Care Plan(FCP) 앱을 출시하여 보호자들과 특별수요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요양계획과 재무적 필요를 관리하고, 최신화된 정보에 기반해 미래의 요양 필요를 예측하여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2023년)를 포함, SNTC의 공공신탁 모델을 벤치마크 하고자 하는 홍콩(2018년), 일본(2019년), 중국(2023년) 등의 정부와도 활발히 업무 제휴 중이다.

〈표 Ⅲ-7〉 싱가포르 SNTC의 재무제표 요약

(단위: 천 SGD)

구분	2024	2023	구분	2024	2023
제한기금(Restricted Funds)	6,391	6,005	수익	227	443
누적 적립금	4,827	4,315	수탁 수수료	20	21
재정지원기금	379	413	기부금	21	294
Care & Share 매칭 기금	11	22	현물 기부	11	9
GOAL 후원 지금	1,097	1,178	Wage credit scheme	-	(694)
IT 보안 운영 지원 기금	77	77	이자 소득	189	98
			기타 소득	36	22
비유동자산			지출	2,752	2,369
유형자산	218	348	인건비	2,052	1,873
사용권자산	5	8	기타 운영비	701	496
Less: 비유동부채	(3)	(111)			
유동자산	8,448	8,035			
Less: 유동부채	(2,277)	(2,275)			
순유동자산	6,171	5,760			
신탁기금(Trust Fund)			잉여/(결손)(정부보조금 제외)	(2,475)	(1,926)
PTO 보유 신탁기금	57,357	49,858	정부 보조금	3,161	2,953
Less: 위탁자 귀속 수탁고	(57,357)	(49,858)			
SSH 귀속 은행 예치금	18	22	당기 순잉여	686	1,027
Less: SSH 귀속 Monies	(18)	(22)			

주: 1 싱가포르달러(SGD) = 약 1,051~1,089원(2025년 기준)
자료: SNTC 홈페이지

SNTC 이용자 및 특별수요신탁 설정 건수를 살펴보면, 2024년 말 현재 누적 3만 2,271명(FY23/24 한 해 동안은 8,568명)이 SNTC를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돌봄계획(Care plan) 설정 4,185건(463건), 이 중 SNT 설정 1,265건(153건), SNSS 설정 834건(87건) 등으로 이용이 매우 활발하다. 싱가포르 총 인구가 약 604만 명 중 등록 발달장애인이 약 4.7만 명(전체 인구의 약 1% 수준),[40] 60세 이상 치매 인구 7.4만 명(치매 유병률 8.8%, 2022년)임을 고려할 때 SNTC가 싱가포르 인지취약 인구의 재산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의 인구 고령자 비중은 2024년 현재 19.9%로 지난 2014년 12.4%에 비해 급속히 증가 중으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SNTC 이용이 치매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말 SNTC의 신탁 수탁고 잔액은 5,736만 SGD(약 57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체 설정 건 수(1,265건)를 고려할 때 신탁 건당 약 45,344 SGD(약 4,5341만 원)의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연간 총수익이 22.7만 SGD임에 비해 총지출이 275.2만 SGD로 국고보조금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총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205.2만 SGD 규모에 비해 신탁수수료(2만 SGD)나 기부금 수익의 기여 수준(2.1만 SGD)은 미미하다.

나. 홍콩

홍콩의 공공 특별수요신탁은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Hong Kong SAR Government)의 사회복지부장 법인(Director of Social Welfare Incorporated)을 법적 수탁자로 하고, 산하 특별수요신탁사무국(Special Needs Trust Office; SNTO)을 통해 기금관리 및 분배, 돌봄계획 실행 및 모니터링, 신탁 종료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신탁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정부 부처의 장이 수탁자가 된 사례로, 싱가포르가 공공비영리기관을 설립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와도 차별화된다. 이러한 구조는 신탁 수수료 절감과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 정부가 수탁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을[41] 홍콩 정부가 수용한 결과로, 2018년 2월 5,000만 HKD달러 예산 할당을 통해

40) 싱가포르 사회가족부 '장애보고서(Disability Trend Report)(2025년 3월)' 및 관련 기사에서 정리함

41) 홍콩대학교 법학대학의 Lusina Ho와 Rebecca Lee가 비영리단체 Concern Group of Guardianship System and Financial Affairs와 함께 2,500명의 인지취약자 부모 및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90%가 유언장이나 계속적위임장(POA)이 없고, 5%만이 민사신탁의 설정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부모 사후 재무관리에 대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부 주도의 홍콩식 특별수요신탁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SNTO가 설치되고 2019년 3월부터 특별수요신탁 신청을 받으며 가동되었다.

홍콩식 특별수요신탁의 구조는 우선 위탁자는 특별수요가 있는 자의 부모 또는 친척으로, 18세 이상의 홍콩 영주권자이며, 신탁 계약(Trust deed) 서명 당시 파산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수익자는 지적장애(다운증후군 포함), 정신적 장애, 자폐(오티즘) 등을 가진 자로,[42] 홍콩의 영주권자이며, 통상적으로 홍콩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수탁자는 부모의 사망 이후 자산관리를 담당하고,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정기적 인출(Regular disbursements)을 해당 자녀의 돌봄자(개인 또는 단체)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신탁 계약은 싱가포르의 경우와 유사하게 부모 및 보호자 사망 전후 단계로 우선 구분되며,신탁 설정 단계, 부모 생존 중 비활성화 단계, 부모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활성화된 단계, 수익자 사망 등으로 계정이 종료되는 단계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표 Ⅲ-8〉 홍콩 특별수요신탁의 각 집행 단계별 내용

신탁 집행 단계		단계별 신탁 업무 및 특징
부모 생존 단계	① 신탁 설정 및 비활성 계정 단계	• SNT 사무국 직원이 부모와 함께 특별수요가 있는 자녀의 장기 돌봄계획, 예상 비용, 돌봄 제공자 목록 등을 작성 • 변호사 입회 하에 부모가 신탁 계약서(Trust Deed)에 서명하고, 의향서(Letter of Intent) 및 돌봄계획서(Care Plan)를 제출 • 이와 별개로 유언장 적성(SNT 계좌로 자산 이전 명시) • 최초신탁 설정 지급금(First Payment) 지급: 홍콩 후견위원회(Guardianship Board)가 정한 월 생활비 상한선(2.4만 HKD) × 12개월분 + 첫해 연회비(2천 HKD) 또는 돌봄계획에 필요한 1년치 비용 중 큰 금액 • 신탁 계정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연회비 없음
부모 사망 이후 단계	② 계정 활성화 및 집행	• 부모의 사망 통보 후 신탁 계정이 활성화되고 연회비 청구 시작 • 유언장에 지정된 집행인(Executor)이 유산 중 추가 지급금(Further Payment)을 SNT 계정으로 이체 • 이후 수탁자는 제3자로부터 기부금 수령 가능(단, 각 기부금이 최소 6개월분 생활비 상한선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돌봄계획은 수정 불가능
	③ 자산운용 및 돌봄 관리	• 신탁 계약서, 의향서에 지침에 따라 돌봄 제공자에게 자금 분배 • 정기적으로 돌봄계획의 수행을 점검 • 여러 신탁 계정의 자금을 집합 운용, 투자 수익/손실을 각 신탁 계정에 비례 배분
	④ 계정 종료	• 수익자 사망, 신탁 자금 소진, 수익자가 홍콩 외로 이주 등의 경우 종료 • 필요시 수익자를 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 연계/의뢰 조치 진행

자료: Ho(2023)를 참고로 저자가 작성함

공공신탁 도입의 계기를 마련함

42) 사회복지부의 SNT 실무 가이드라인에서 “수익자는 다운증후군신드롬을 포함하는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또는 오티즘을 가진 홍콩 영주권자”로 정의하고 있어 정신적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며, 치매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홍콩의 특별수요신탁은 최초 지급금 이후 비활성화 상태에서 정기적 또는 일시적 추가 불입(Top-up)이 가능한데, 홍콩 달러로 된 현금성 자산만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는 보호자가 자산의 운용과 투자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다만,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 수익자를 사회복지부장 법인으로 지정함으로써 사후 특별수요신탁 계정으로 보험금이 유입되도록 할 수 있다. 홍콩 특별수요신탁의 특징 중 하나는 '돌봄제공자(Caregiver)'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신탁 수익의 교부 등 수익자의 돌봄계획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을 위탁자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1인 가구 등 보호자 부재 시 홍콩 사회복지부의 협약 기관으로 등록된 비영리 사회복지단체를 공공 돌봄제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협약 기관으로 Tung Wah Group of Hospital(東華三院), Po Leung Kuk(원양국), New Life Psychiatric Rehabilitation Association(新生精神康復會), Fu Hong Society(扶康會) 등이 있다. Tung Wah Group of Hospital(東華三院)의 경우 사회복지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5개 병원과 수십 개의 보건센터를 보유한 홍콩 최대 규모의 비영리 복지단체로,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 교육, 사회복지 부문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Ⅲ-2〉 홍콩 특별수요신탁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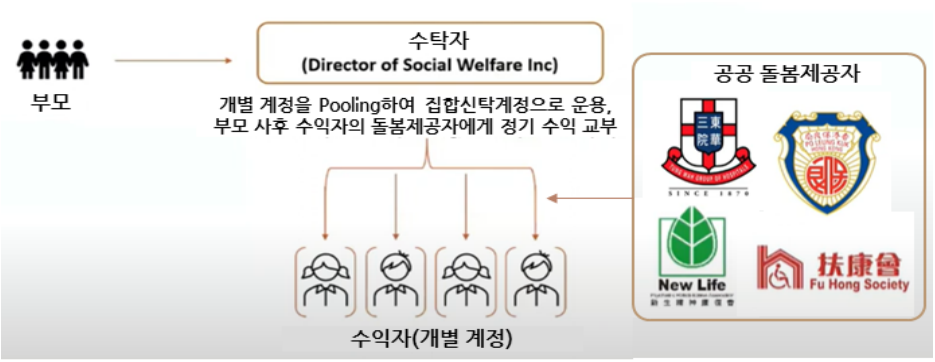

자료: Ho(2023)를 참고로 저자가 수정함

홍콩식 특별수요신탁의 또 다른 특징은 각 수익자의 신탁 계정이 집합적으로 운영되고, 수익은 각 계정의 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분배된다는 점이다. 이는 싱가포르의 계정별 운용 방식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신탁 계좌 활성화 이후 부과되는 관리 수수료 수준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 사이 연간 2만 HKD 정도로(약 320~350만 원) 매년 조정된다.

〈표 Ⅲ-9〉 홍콩 특별수요신탁의 초년도 수수료 및 요구 납입액

매년 10월 1일 이후	성년후견위원회가 정한 월 생활비 한도*12 (HK$)	초년도 연수수료 (HK$)	초년도 요구 납입액(HK$)
2019	17,000*12=204,000	21,000	225,000
2020	17,500*12=210,000	21,000	231,000
2021	18,000*12=216,000	20,000	236,000
2022	18,100*12=217,200	20,000	237,200
2023	20,000*12=240,000	20,000	260,000
2024	20,000*12=240,000	20,000	260,000

자료: 홍콩 SAR 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2025. 1. 15.)

홍콩의 특별수요신탁은 장애 및 고령자 수당(Disability Allowance and Old Age Living Allowance)과 같은 종합사회보장급여(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Assistance; CSSA) 또는 기초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Allowance; SSA) 수급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분배된 신탁자산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 기준으로 과세하며, 증여상속세나 자본소득세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치매 및 인지장애 고령자의 경우 특별수요신탁의 수익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 Mental Health Ordinance에 근거한 인지기능 상실자(MIP)의 경우, 후견위원회(Guardianship Board)를 통해 후견인(Guardian) 및 재산관리인(Committee)을 지정할 수 있다. 전자는 의료/복지/주거 등의 신체적 또는 의료적 결정권을, 후자는 금융 및 부동산 등 재산 관리권을 부여받는다. 인지기능 상실 이전에는 지속적 위임장(Enduring Power of Attorney; EPA) 제도를 통해 재산관리에 대한 위임자를 설정할 수 있다(단, 의료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은 후견제도를 활용한다).

홍콩 내 약 25만 명의 발달장애인 및 정신 장애인에게 유익한 재무관리 대안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신청률이 저조한 상태이다. 전체 신청 건수는 88건이나 이 중 18개 SNT만 설정된 상태이다. 2019년 이후 아직까지 신탁 계정이 개시되거나 종료된 경우가 없고, 따라서 활성화된 계좌의 평균 수탁자산 규모도 알기 힘든 상태이다. 2024년 3월 말 기준, 신탁 수탁고 규모는 888만 HK$로, 수탁자산은 위탁자의 최초 납입액과 누적 이자로만 구성된 정기 예금 및 저축 계좌로 보유되고 있다. 2023~24 회계연도 기준, 연간 이자 소득 규모는 약 21.5만 HK$이다. 관리 수수료는 계정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요구

하지 않으므로 현재까지는 없다(홍콩 SAR 정부 2025).

〈표 Ⅲ-10〉 홍콩 특별수요신탁 설정 당시 위탁자 및 수익자의 연령대

신탁 설정 당시 연령대	위탁자	수익자
11~20세	-	1
21~30세	-	2
31~40세	-	8
41~50세	-	3
51~60세	4	2
61~70세	10	-
71세 이상	4	-
전체	18	18

자료: 홍콩 SAR 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2025. 1. 15.)

싱가포르에 비해 홍콩의 특별수요신탁의 이용이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Ho(2023)는 일시금으로 최소 26만 달러(약 4,600만 원)를 낼 수 있어야 하는 점, 고정 비율의 신탁관리 수수료 부과로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자에게 더 불리한 수수료 구조, 사회복지 급여(CSSA 등)에 대한 수급권 상실 가능성, 잔여 자산에 대한 연속 수익자 지정이 불가능하여 수익자 사망으로 계약 종료 시 상속재산 배분규칙에 따라 잔여 자산이 배분되는 점 등이 제도의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그 밖에도 부모 사망 이후 활성화되는 신탁 구조에서 부모의 불능(Incapacity) 상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신탁 집행인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강제 집행 근거가 없어, 법적 소송 절차 등을 장애인 수익자가 감당하기 힘든 점 등도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꼽힌다. 계정에 묶은 자산의 원금 보장이나 투자수익률 저조한 점도 꼽았다.

3. 일본의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제도 및 시장

일본은 196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 이후 복지국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親亡き後(부모 사후 장애인 자녀)' 문제를 국가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가족 중심의 장애인 부양 환경

속에서 일본의 높은 상속증여세 구조로 인한 부담을 개선하고자 1975년 장애인 신탁에 대한 상속세 특례 조항을 도입하였다. 이후 2000년대 고령 치매 인구의 급증과 이들의 재무관리 지원 기능에 있어서 성년후견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후견제도지원 신탁 상품이 상품화되었다. 본 절에서는 우선 일본 신탁 법제의 변화 및 시장 확대 과정을 정리하고,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의 상품 구조와 제공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가. 신탁 관련 제도 변화 및 시장 현황

일본은 1922년 신탁재산의 분리, 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 등을 명시한 신탁법 제정을 통해 신탁을 법제화하였다. 1981년에는 영리 목적 신탁업자에 대한 인가 요건, 행정적 규제, 감독 체계를 명문화한 신탁업법을 제정하였고, 1945년 은행법에서 예금 취급 금융기관에서만 신탁 업무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이후 대형 은행 및 신탁은행 등 주도의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중심의 자산증식형 신탁이 발전하였다.

2000년대 이후 인구 고령화,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노후화된 신탁법 개정(2006년) 및 신탁업법 개정(2004년)을 통해 신탁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수탁가능 자산의 확대, 집합 운용 허용, 설계 변경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관리형 신탁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포괄신탁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0년 이후에는 교육비 및 출산 자금 증여 신탁 등 가족신탁에 대한 비과세 확대, 후견제도 연계 신탁의 도입, 디지털 자산의 신탁화 가능성 검토 등 더욱 다양해진 신탁 수요에 대응하여 신탁업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2024년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회사는 2004년 신탁업법 개정에서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방지, 영업행위의 적정성, 소비자 보호 등의 이유로 신탁업 등록 가능 대상에서 제외되어(신탁업법 제3조) 본업 내 신탁업을 영위가 불가능했다. 금융청 등록으로 신탁상품의 단순 소개와 판매 등을 담당하는 '신탁 계약대리점' 업무가 가능하며(신탁업법 제67조), 신탁업 겸영은 금지되어 있으나(보험업법 제97조), 소비자 보호 및 기능 분리를 위한 자회사 방식 신탁업 수행은 가능하다.

일본의 신탁시장은 2003년 이후 연평균 5.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4년 3월 수탁 잔액 약 1,702조 엔, GDP(약 609조 엔)의 279%에 해당하는 거대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림 Ⅲ-3〉 일본 신탁 수탁고 규모 추이

(단위: 조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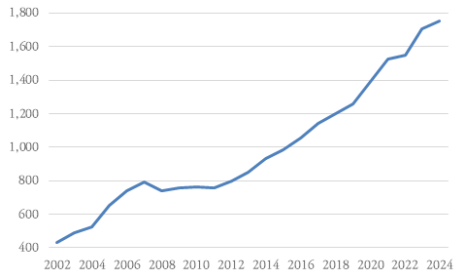

자료: 일본신탁협회, 「日本の信託」, 연도별

〈표 Ⅲ-11〉 일본 주요 시장 환경 변화

구분	제도 도입 및 인구구조 변화 내용
2000년 대	2001년 DC형 퇴직연금, iDeCo 도입 2004년 신탁업법, 2006년 신탁법 개정 2009년 생명보험금신탁 허용 2007년 초고령사회 진입
2010년 대	2012년 단카이1세대 고령 인구 진입 2014년 NISA 도입 2015년 자녀양육비 증여 신탁 비과세
2020년 대	2022년 단카이1세대 후기고령 인구 진입 2025년 고령화율 30%

자료: 저자가 작성함

일본의 신탁시장은 스미토모미츠이신탁은행 등 상위 3개 대형 은행계 신탁회사가 전체 시장의 약 97%를 점유하는 과점 시장 형태로,[43] 비은행 신탁회사는 대부분 '대리점'이나 '파트너사'로 참여하고 있다. 2017년 신탁 계약 대리점 등록 요건이 완화된 이후 특히 신용조합·농협·신용금고 등의 참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역 고령자의 자산 이전 및 치매 대응 수요에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된 결과로 보인다.

〈그림 Ⅲ-4〉 일본 신탁 유형별 수탁자산 및 업권별 신탁대리점 수 추이

(단위: 조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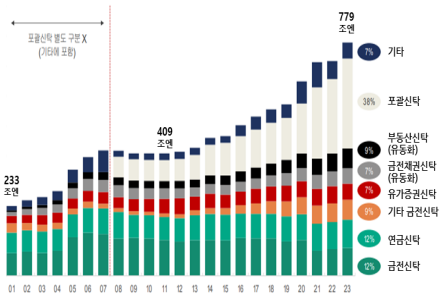

주: 투자신탁과 재신탁 수탁고를 제외한 수치로 계산됨
자료: 박지홍(2024) 자료를 수정함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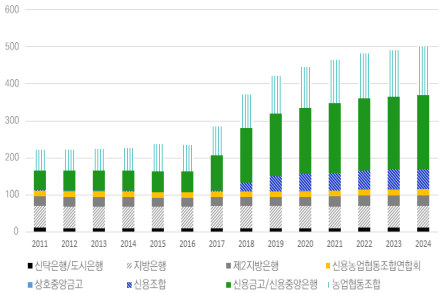

자료: 일본신탁협회, 「日本の信託」, 연도별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43) Reuters(2021. 3. 1.), "Exclusive - An 'industry custom': Little-known fees help Japan trust banks dominate profitable niche market"

일본 신탁업 시장은 업권별로 초기 전략, 시장 진입 시기, 운영 방식, 대표 상품, 강점 및 한계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 전통적으로 고액 자산가 및 법인을 중심으로 운용형 신탁을 제공해 오던 은행계 신탁회사는 초기에는 복지형 신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2013년 이후 관련 서비스에 시범적으로 진입하였으며, 고자산 고객기반과 전국에 걸친 인프라를 활용하여 치매 대비 신탁이나 후견형 신탁과 같은 고령자 보호 상품을 확대해왔다. 다만 고비용·저수익 구조의 복지형 신탁에 대해 CSR(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증권계열 신탁회사는 여전히 투자형 신탁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운용에 집중하고 있다. 유가증권신탁,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해 자산운용 수익을 추구하는 이들 기관은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복지형 신탁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나 생활지원 기능이나 후견적 수요 대응 전환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보험계 및 비은행계 신탁회사는 생활자 보호 및 후견 대응에 초점을 맞춘 상품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 보험 상품에 기반한 사망보험금청구권 신탁, 생활지원 신탁 등 특정 목적형 상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 중이나 상품 설계 인프라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은행계보다 약점을 지니며, 고수익이 어려운 상품구조의 특성상 서비스 유지 및 확장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처럼 일본 신탁시장은 고령화와 복지 수요의 확대, 제도적 정비와 시장 구조의 다층화가 맞물리며 복합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단순한 금융투자 수단을 넘어 고령자 삶의 질과 밀접한 종합자산관리 도구로 확장되고 있으며, 향후 치매 인구의 후견적 재산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제도 및 이용 현황

일본에서는 196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쳐 1973~75년 사이 의료보험 무상화, 장애인연금 제도 정비 등 복지법 개정이 계속되던 가운데, 중증 장애인의 상당수가 가족 부양에 의존하다가 부모 사후 생계 기반이 무너지는 '親亡き後(오야나키 아토) 문제'가 정책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재산 상속 시에는 상속세·증여세 부담 때문에 부모가 충분한 생활자금을 남겨도 실제 활용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부모 사망 후(親亡き後) 생활 안정을 위해 1975년 「상속세법」에 '특별장애자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제21조의4) 조항을 도입했다. 이미 신탁은행을 통한 유언대용신탁 등 재산관리형 신탁 실무가 발달하고 있던 상황에서, 신탁회사가 장애인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생활비·의료비를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면 직접 관리가 어려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재무성(당시 대장성)과 복지부(후생성) 사이의 협의로 이루어졌다.

2013년에는 후생노동성이 세제 특례 대상을 중·경도 장애인까지로 확대할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고, 재무성 법안요강과 국세청 집행지침이 그 요구를 반영해 국회 2014년 개정으로 이어졌다. 그 밖에도 2012년 도입된 치매 고령자들을 위한 후견제도지원 신탁, 인지취약자를 수익자로 설계하는 유언대용신탁 등의 민사신탁, 생명보험신탁, 공익신탁 등 우리나라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특정증여신탁

장애 등 특별한 수요를 가지는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가 자녀의 생활 안정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고, 수탁자인 신탁은행은 신탁수익에서 수익자인 자녀의 생활비·의료비 등을 지급할 경우 상속세 특례가 적용된다, 원본 인출 제한, 지급된 금액으로 인한 복지 수급권 자격 상실 가능성 등 우리나라의 장애인특별부양신탁과 매우 유사하다.

〈그림 Ⅲ-5〉 일본 특정증여신탁의 구조 및 내용

신탁 구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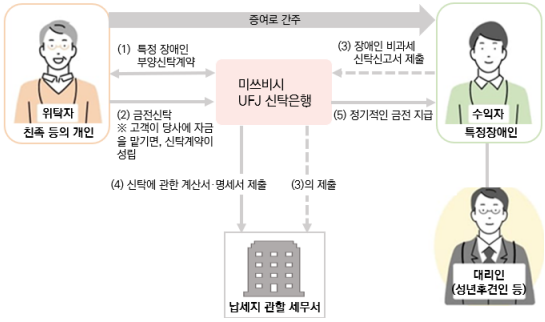	• 위탁자: 부모, 친척(개인만 가능) • 신탁재산 범위: 현금, 유가증권, 금전채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부동산(거주용에 한함) 및 토지(6종) • 증여세 비과세: 특별장애인 6천만 엔, 특정장애인 3천만 엔 • 적격요건: – 장애인 수익자 사망 시에만 신탁 종료 – 신탁 원본은 수익자의 생활 보장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그 외 목적 담보로 제공 불가

자료: 三菱UFG 신탁은행 홈페이지, “특증증여신탁의 작동방식”의 그림을 번역함; 일본 신탁협회 홈페이지, “특정증여신탁” 브로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관련 세제 혜택은 일본 「상속세법」 제21조의4 (특정증여신탁(特定贈与信託)에 관한 조항)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통상 연간 증여재산합계 110만 엔 초과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별장애인(중증)인 경우 최대 6,000만 엔, 특별장애인 외 특정장애인(상대적으로 경증)인 경우 3,000만 엔이 비과세되는 등 장애 심도에 따라 차이를 둔 것이 특징이다.

장애 정도의 구분은 장해자기본법을 포함한 관련 근거법령과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노인성 질환(치매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특별장애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12〉 일본 특정증여신탁의 장애인 수익자 판단 기준

구분	근거법령	판단 기준
특별 장애인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21조의4,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의4	• 중증장애+상시개호 필요 • 중증 신체장애인(신체장애인 수첩 1~2급)+상시개요 • IQ 50 이하 등 중증 지적장애(요육수첩 A등급) • 조현병 등 중증 정신장애(정신장애자복지수첩 1급) +65세 이상 고령자로 의료기관, 시정촌장 등이 '특정장애자에 준함'으로 인정한 경우(예: 중증 치매로 요개호 3급 이상인 경우 등)
특정 장애인	「장해자기본법」 제2조	• 비교적 경증 및 개호 필요성 낮은 경우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조 1항의 장애인, 신체장애자 수첩 보유자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전반: 신체장애인 보험복지수첩 소지자(3~6급 포함)
	「지적장애자복지법」, 「정신장애자보건복지법」상 진단기준 및 인정자	• 경도 지적장애(요육수첩 B등급), 정신장애자보건복지법상 등록자(2~3급), 자폐, 발달장애 등 진단자 +65세 이상으로 위와 유사한 상태로 시정촌장 등의 인정을 받은 자

자료: 저자가 작성함

〈그림 Ⅲ-6〉 특정증여신탁 설정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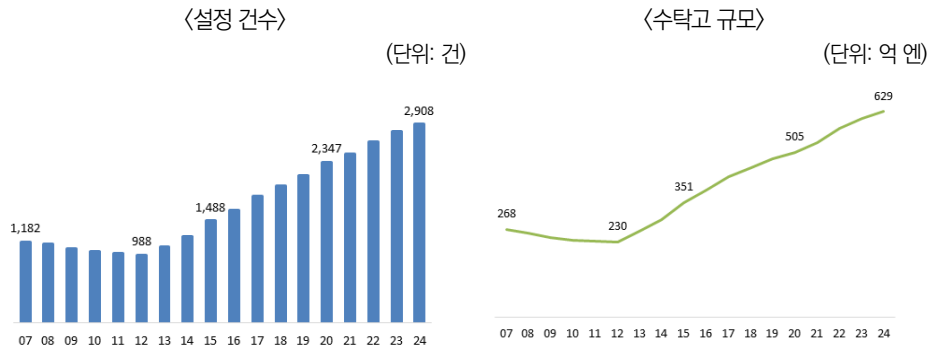

자료: 金融庁(2024)

특정증여신탁은 2010년대 초반 1,000건, 수탁고 규모 230억 엔 정도 수준에서 2024년 현재 2,908건, 수탁고 규모는 629억 엔에 이르는 등 세 배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특히 2014년 특정장애인에 대한 세제 확대 이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 인구 1억 2,600만 명 중 약 7.6%인 960만 명을 장애인구로 보면, 특정증여신탁 수익자 수는 전체 장애인구의 약 0.03% 정도가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특별부양신탁 이용에 비해 활발하다고 할 수 있겠다(국내 장애인구 약 264만 명 중 36~40건 수준, 0.001% 미만).

2) 후견제도 및 후견제도지원 신탁(後見制度支援信託)

후견제도지원 신탁은 고령자·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정 후견제도와 연계한 신탁으로, 후견인(친족 또는 법인)의 재산관리 역할의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 2월 최고재판소 가정국이 전국 가정재판소에 '후견제도지원 신탁' 운용 지침을 발령하면서 도입되었다. 피후견인은 생전 수익자로 자금을 수취하고, 후견인이 예금계좌를 통해 생활비 등 지출을 관리하되 가정재판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림 Ⅲ-7〉 일본 후견제도지원 신탁의 구조 및 내용

신탁 구조	내용
	• 위탁자: 개인(성년/미성년 피후견인) • 수익자: 고객(위탁자) 자신(자익신탁) – 수익자 변경 불가 • 가정재판소의 지시서 제출 및 승인 필요 • 신탁금액 및 운용 방법 – 신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설정 – 원본보증 되는 지정금전신탁으로 운용 – 예금보험의 보험대상임

자료: 이경훈 외(2024) 그림 자료 재인용; 정봉은 외(2015)를 참고하여 작성함

수탁자인 신탁은행 등은 피후견인 수익자를 위해 신탁재산을 보호하고, 신탁재산을 정기적으로 정액으로 분할교부하거나 긴급 지급함으로써 수익자 생활의 안정을 돕는다. 후견인이 신탁은행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가정재판소의 지시서가 요구되며, 모든 교부는 가정법원의 감독 하에 이루어짐으로써 후견인의 재산 남용으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후견인이 변경되더라도 지속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피후견인 사망 시 남은 자산은 상속분으로 인계되며, 다른 상속신탁상품 및 서비스와 결합하면 판단능력 상실 후 상속까지의 공백 기간을 보완할 수 있다. 금전신탁에 후견제도지원 특약을 추가해 합동운용 방식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

후견제도지원 신탁은 제도 도입 당시인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급성장하였다가 2017년 후견제도지원 예금 도입 이후 신탁 설정 건수는 급감하고 예금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누적 이용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말 기준 35,391건이다.

일본의 후견제도지원 신탁 구조에서는 수탁자(예: 신탁은행 등)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재산 관리 행위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후견신탁과의 중요한 차별점이다. 즉, 신탁 재산의 사용은 가정법원의 사전 지시서(指示書)에 따라 수행하게 되는데, 수탁자는 후견인의 자금 요청에 대한 용도 적절성, 지출 계획 등이 법원의 지시서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판단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 및 기록보관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후견인이 자의적으로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유용할 수 없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운용수수료 외의 신탁관리 비용은 대부분의 신탁은행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이러한 감독 기능이 신탁업자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8〉 후견제도지원 신탁 연간 청구 건수 및 수탁고 추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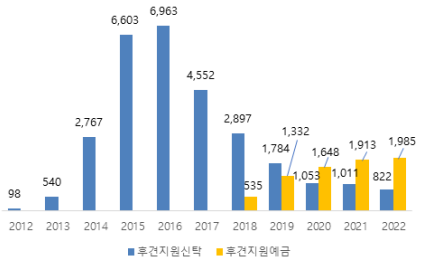

자료: 金融庁(2024)

(단위: 억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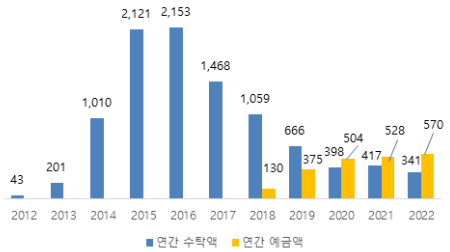

자료: 일본 신탁협회(2024)

\우리나라와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 일본은 성년후견인 중 변호사, 법무사의 비중이 51.7%로 전문후견인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도 성년후견제도 시행 초기에는 친족후견인 비중이 높았으나, 2012년 이후 제3자 후견인 선임이 친족후견인의 선임을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며, 전문가 후견인으로 법무사가 변호사나 사회복지사보다 훨씬 많이 선임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제3자 후견인 규모의 증가가 후견제도지원 신탁 제도 도입과 맞물려 후견신탁의 성장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9〉 일본 후견인 유형별 선임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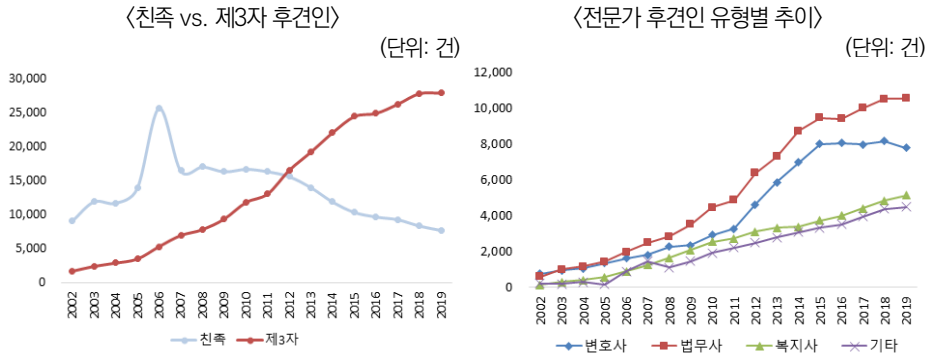

자료: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2024)

일본은 2019년 기준 전체 성년후견사건 청구건수가 누적 54.5만 명으로 해당 연도 고령인구 규모(약 3,589만 명) 대비 1.52% 수준에 해당되는데, 최근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

〈그림 Ⅲ-10〉 일본 후견사건 청구 건수 전체 및 유형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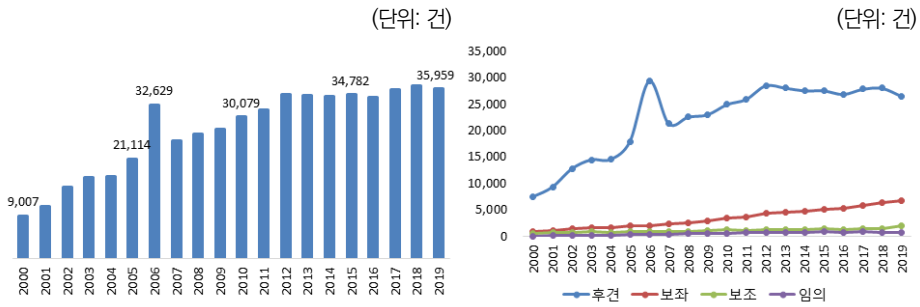

자료: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2024)

3) 유언대용신탁(遺言代用信託)[44]

일본의 유언대용신탁은 2006년 신탁법 개정으로 구조가 명확해졌는데, 고객이 신탁은행 등에 재산을 위탁하고 생전에는 본인이 수익자로 해당 자금을 이용하다가 사후 지정된 수익자에게 재산이 자동 승계되는 신탁이다. 일시 및 분할 지급이나 연속 수익자 지정도 가능하고 설계의 유연성이 크다. 수탁자 사망 시 상속 절차 없이 수익자가 자금을 신속히 수령하여 장례비용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단,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류분 제도로 인한 상충이 있을 수 있다. 위탁 가능 자산은 금전으로 제한되고, 신탁 기간은 금융기관별로 최대 5~30년이다.

〈그림 Ⅲ-11〉 일본 유언대용신탁의 구조 및 내용

신탁 구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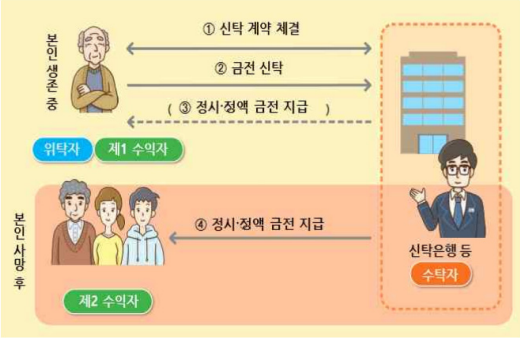	• 위탁자: 피상속인 • 수탁 자산: 금전에 한함(고객 보유 금융자산의 1/3 이하까지만 가능) • 신탁재산을 유산분배 이전 계약대로 자동 승계하는 기능 • 유언장 관련 과정이 없어 (유언신탁 대비) 비용 절감 가능 • 집합 운용 방식으로 수수료 절감 가능, 분할 수익에 대해 과세 • 설정 수수료: 신탁 재산의 1~3%+운용수수료

자료: 이경훈 외(2024) 그림 자료 재인용; 정봉은 외 (2015)를 참고하여 작성함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201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가장 큰 특징은 집합 운용 방식으로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고, 신탁 수익의 분할 지급 및 분할 수익자별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를 통해 크게 활성화되었다. 신탁 설정 시 상속·증여 시점의 유예가 가능하고, 소득세와 상속세의 연결 규정이 있다. 주로 신탁은행 및 은행계열 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직접적인 제공자는 아니지만 보조적·연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4) 이는 신탁은행에서 위탁자의 유언장을 작성, 보관, 집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칭하는 '유언신탁'과는 별도의 상품임

2009년 출시 후 2023년 9월 현재 누적 이용 건수가 21.2만 건(2013년 대비 3.3배 증가)으로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상속 목적 신탁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간접적이지만 유언신탁, 자기신탁 등을 포함하는 민사신탁의 설정 건수를 통해서도 특별수요신탁에 대한 시장 수요를 짐작할 수 있는데, 2018년 연간 2,223건에서 2021년 3,200건, 2023년 4,434건으로 급증 추세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공익신탁 설정 건수는 2023년 378건 수준으로 지난 2018년 438건에 비해 매년 소폭 감소 중이다.

〈그림 Ⅲ-12〉 유언대용신탁 설정건수(좌)와 민사신탁과 공익신탁 설정건수 추이(우)

(단위: 만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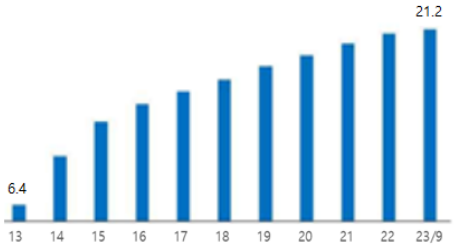

자료: 이경훈 외(2024) 재인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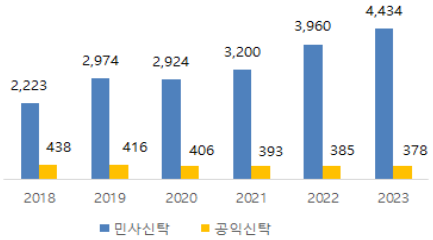

자료: 青木·杉山(2025)

4) 생명보험신탁

일본은 2009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생명보험신탁에 대한 신탁 업무를 허용하고,[45] 2016년 금융청 감독지침 정비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또는 제휴 형태의 신탁 업무를 확대하였다. 현재 보험회사는 자회사, 신탁판매대리점의 형태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판매할 수 있으며,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 비금융신탁회사의 위탁기관이 될 수 있다.

위탁자(부모) 사망 시 생명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위임하는 신탁 계약을 통해 장애 및 고령 배우자 등의 보험금 관리를 도울 수 있는 구조로, 국내 보험금청구권 신탁과 매우 유사하다.

45) 2004년 신탁업법 개정에서 신탁업자가 수탁 가능한 재산을 열거한 조항이 삭제되고, 수탁가능 범위를 신탁법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신탁법 제1조에서는 신탁행위의 목적이 되는 대상을 '재산'으로 정의하였고, 금전적 환산가능성, 이전·처분 가능성, 현존·특정성 있는 재산에 해당하면 무엇이든 신탁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함. 2009년 보험업법 제99조 제3항에서 생명보험회사가 겸영업무로써 '그 지급하는 보험금-이는 보험급부, 즉, 단순히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는 확인적 선언에 불과하므로 보험금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해석됨-에 관한 신탁 인수를 행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생명보험회사의 신탁업 겸영을 허용함

다만 일본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와 동일인 조건이 없으며, 목적이 취약층 유족 보호 등으로 명확한 경우 만기보험금, 생존보험금의 신탁자산 활용이 가능하며, 금융청의 표준계약서 등 실무지침이 제공되고 있다.

〈그림 Ⅲ-13〉 일본 생명보험신탁의 구조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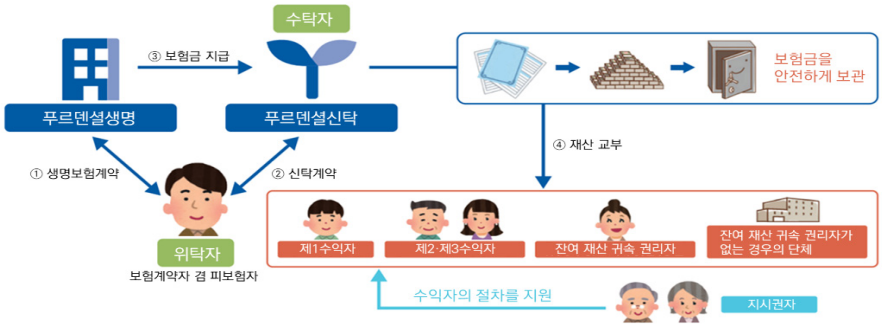

자료: 일본 푸르덴셜신탁 홈페이지

대부분의 특별수요신탁이 신탁은행을 통해 제공되는 상황에서 보험권의 경우, 주로 제휴 신탁은행을 통해 보험청구권신탁을 중심으로 신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이나 후견제도지원 신탁을 직접 취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제일생명은 미즈호신탁은행과, 소니생명은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과 제휴하여 장애인 자녀나 치매 질환을 가진 부모를 둔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생명보험신탁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표 Ⅲ-13〉 일본 생명보험신탁상품 판매 현황

생명보험회사	신탁회사	판매개시 시기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미쯔이스미토모신탁은행주식회사 (츄오미쯔이스미토모신탁은행)	2010. 7
	푸르덴셜신탁주식회사(100% 자회사)	2015. 10
다이이치생명보험주식회사	미즈호신탁은행주식회사	2014. 1
소니생명보험주식회사	미쯔이스미토모신탁은행주식회사	2017. 2
FWD후지생명보험주식회사	미즈호신탁은행주식회사	2017. 12
다이이치프런티어생명보험주식회사	미즈호신탁은행주식회사	2020. 7
지브롤터생명보험주식회사	푸르덴셜신탁주식회사	2021. 9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상호회사	주식회사 리소나은행	2023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미즈호신탁은행주식회사	2023

자료: 이지연(2022)을 참고하여 수정함

2010년 푸르덴셜생명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7개 생명보험회사가 신탁대리점으로 등록하고, 신탁회사와 제휴해 주로 보험금청구권신탁 영업을 하고 있다. 신탁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거나(푸르덴셜생명보험과 푸르덴셜신탁회사) 다른 신탁회사(주로 신탁은행)와 제휴하여 신탁 계약대리점 지위를 얻어 해당 보험회사의 생명보험 상품과 연계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이지연 2022). 처음 도입 시 사망보험금 최저 3,000만 엔 기준에서 현재 1,000만 엔 기준으로 낮아졌고, 취급기관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구체적인 상품 현황은 〈부록 II〉 참고).

이 중 미즈호신탁은행의 판매 실적 자료에서 생명보험신탁인 미래안심지원 신탁의 판매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용 규모는 작은 편이나 전체 수탁건 수 및 수탁 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후견제도지원 신탁의 경우는 후견제도지원예금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장 현황을 반영하여 수탁 규모가 최근 감소 추세에 있다.

〈표 III-14〉 미즈호신탁은행의 특별수요신탁 판매 실적(2023년)

상품		2021	2022	2023
생명보험신탁(미래안심지원형)	수탁건수(건)	91	125	177
	위탁금액(백만 엔)	527	789	1,096
후견제도지원 신탁	수탁건수(건)	3,024	2,724	2,476
	위탁금액(백만 엔)	91,152	83,058	76,148

자료: 미즈호 신탁은행 홈페이지(2023)

5) 공익신탁

공익신탁(公益信託, Kōeki Shintaku)에 대한 별도 법제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1971년 제정된 법무성 민사국의 통달(행정지침) 「공익신탁에 관한 민사상 취급에 대하여」와 이후 2006년 개정 신탁법, 민법, 세법 등을 통해 공익신탁이 법제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익 목적(학술·예술·복지·환경보호 등)의 실현을 위해 자산을 신탁하고 그 수익을 지정된 수익자 또는 공익활동에 사용하는 신탁으로, 각 공익 목적에 따라 총무성, 문부과학성, 환경성, 후생노동성 등으로 주무 관청이 정해진다. 원칙적으로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주로 신탁은행)이 수탁자가 되며, 행정지침과 주무관청의 감독을 통해 규제된다. 일정 요건 충족 시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가 공제되고, 상속세 면제도 가능하다.

4. 소결

주요 국가들의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제도 도입 배경과 운영 특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과거 부모 사후 장애인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제도에서 출발하여 지속적인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정부의 개입 정도나 방법, 제공 혜택의 내용과 형식, 고령 인지장애자 증가에 따른 제도 확장의 가능성, 금융기관의 역할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정부의 개입 방식에서 있어 일찍이 장애인 자녀 부양가족의 직접적인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특례를 도입한 일본에 비해 미국·영국은 장애인 신탁이 의료 및 소득 급여 등의 자산조사형(Benefits test) 복지제도와 연계되거나 세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복지의 수단으로 등장하였고, 상속세제가 폐지된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정부가 특별수요 신탁의 운영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모델로 도입되었다.

〈표 Ⅲ-15〉 주요국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제도의 특징

구분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
특별수요 신탁 도입 배경	• Sullivan vs. Zebley 대법원 판결, 장애인 부모 및 ARC 요구 • 복지 수급권 유지 + 자산 상속 조화	• 특별한 도화선 없음 • 세제 형평성과 기술적 제도 정비	• 장애인 피해 + 장애인부모단체의 사후 돌봄 요구 • 치매 고령자로 확대	• 장애인 자산 보호, 고령자 치매 자산 도·착취 우려 • 후견제도의 한계 보완
직접적인 법제 변화	• 1993 OBRA법 개정 (Pooled, Payback 조항 추가)	• 2002년 장애인신탁 비과세 제도 도입 • 2005년 취약 수익자 정의 추가	·2008년 SNTC 설립	• 2005년 특정증여 신탁 • 2012년 후견제도 지원 신탁
도입 주체	• 연방의회, 복지단체, 변호사	• HMRC(국세청)	• 가족자원부(MSF), SNTC 설립	• 금융청 + 신탁은행 주도 + 복지부 협력
수탁자 특징	• 가족, 비영리, 법인 수탁자	• 법인 수탁자, 가족	• SNTC+DBS Trustee	• 신탁은행 중심(공공, 민간 혼합) + 지역 금융기관 연계
제도 설계의 특징	• 복지 수급권 유지 + 증여상속 관련 권리 확보 조화 중심	• 기존 재량신탁 체계에 세제 혜택 부여	• 복지서비스 중심 (공적 연금/보험제도 연계 및 상담·관리서비스 직접 제공)	• 대륙법 기반 신탁법 복지와 금융의 통합적 구조

자료: 저자가 정리함

영미권 특별수요신탁의 경우 근로 능력이 없는 장애인 기초 수준의 지출을 복지제도로 보장하되, 부가적인 목돈 수요에 대한 대비를 신탁제도를 활용한 자산 보호를 통해 제공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취약층 수익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발달장애 등 선전척 인지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층 치매 인구도 포함하고 있다. 특별수요신탁에 대한 접근과 실질적인 제공, 사후적 신탁 관리 등에 있어 비금융 부문 및 비영리단체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지속적 위임장이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전문후견인 또는 공공후견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증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취약층 수익자의 재산관리 지원 인력의 역량을 제고하고 있는 점을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직접 중저소득 이하 취약 인구의 재산관리 수요에 대응하여 소액 다건의 계약에 대해 밀착된 사후 관리서비스에 소요되는 막대한 인건비와 운영 비용을 제공하고, 신탁자산의 원금까지 보장하고 있었다. 공공 부문에서 충분한 초기 상담과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대중의 신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영 보험회사의 참여와 기부금 확대, 계약 종료자들의 잔존자산 기여분 등의 장치를 통해 향후 치매 고령층의 특별수요신탁 이용 증가로 인한 SNTC 운영 비용 증가에 대한 정부 부담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특별수요신탁 제도로 보이나, 신탁업법상 동일 목적의 소액 다건 계약에 대한 집합적 운용 허용, 위험 기피적 운용 수요에 대응하는 예금자보호 제공, 수탁자산의 포괄성, 업무 위탁 및 재신탁 허용, 신탁판매대리점의 자격 요건 완화 등 관리형 신탁에 대한 소비자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환경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장애인 및 후견신탁의 확대 필요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신탁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대형 신탁은행이 부응하였고, 신탁판매대리점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 비 도시지역에 분포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신탁상품 취급을 통해 고령층 인구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사법서사나 전문후견인 등 인지취약자 신탁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역할도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정 후견인 중 전문후견인의 비중이 높은 점은 국내와의 큰 차이점이었다.

상속세 면세 요건의 완화, 전문후견인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력 증가, 후견인 감독에 대한 법원과 금융기관의 역할 분담 등 정부와 법원에 의한 적극적인 신탁 시장 환경의 조성이 일본의 인지취약자 및 보호자의 신탁제도에 대한 신뢰 형성과 지원 신탁의 설정 건수

증가에 있어 주효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견제도지원 신탁의 연간 신청 건수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인출 구조를 가지는 후견제도지원예금으로 대체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싱가포르에서도 SNTC의 특별수요신탁과 별도 저축계정을 함께 제공하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용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신탁상품의 보완재로서 이들 저축계정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금이나 기타 금융수단에 비해 신탁상품이 가지는 강점은 특히 인지취약자의 경우 그 후견적 재무관리 기능이라 볼 수 있는데, 이용의 편이성과 충분한 보호기능의 이해상충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견제도의 최근 세계적인 추세는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의 '잔존능력'을 존중한 의사결정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후견신탁에서도 보조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나라식 후견지원 신탁 모델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 인지취약자의 재산관리 지원에 있어 공공 부문과 민영 부문의 역할 분담이나 제도 설계 시 이러한 후견적 서비스 기능을 누가 제공하며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와 홍콩에서처럼 인지취약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례 관리자나 상담 인력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별수요신탁의 소개에서 종료까지의 경험 제공이 가능한 비영리단체의 역할 강화, ICT 기반 인지취약자 지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 중인 미국 True Link의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Ⅳ 국내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의 개선 방향

1. 국내 인지취약자 규모 및 보유 자산 규모

본 절에서는 고령자 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인구, 중대 질환자 수, 발달장애를 포함하는 정신적 장애인 등 국내 인지취약 인구의 대략적인 규모와 보유 자산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특별수요신탁 관련 국내 시장 환경의 변화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앞 장의 일본 사례에서 살펴본 일본 신탁시장 환경변화 요인들을 국내 상황에 대입하여 보면, 〈표 Ⅳ-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Ⅳ-1〉 국내 인구구조 변화와 일본 신탁시장 환경 변화와의 비교

구분	2000	2010	2020	2030(추계)
인구구조 변화	-	• 베이비붐 1세대 은퇴 시작(2015) • 2023년까지 대규모 은퇴	• 총인구 감소 시작(2020) • 초고령사회 진입(2024) • 베이비붐 1세대 65세 진입(2020년)+9년 • 베이비붐 2세대 은퇴 시작(2024)+10년	• 베이비붐1세대 75세 진입(2030)+9년 • 베이비붐2세대 65세 진입(2029)+10년 • 치매머니, 후기고령자 보유 자산, 상속 급증
제도 변화	• DC형 연금, IRP 도입(2005) • 신탁업법 자본시장법으로 통합(2009): 수익자 보호, 투자설명 의무화 등	• 신탁법 개정(2012년 시행): 신탁대상 확대(영업, 담보권신탁 등), 자기신탁, 유언대용/ 수익자연속신탁 도입 • 성년후견제도(2013) • ISA(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2016) • 세법 개정: 장애인신탁 일부 목적 원금 인출 허용(2014)	• 중증 장애인 최저생계비 목적 원금 인출 허용(2020) • 중개형 ISA 신설(2021) • 금융위원회 신탁업 혁신방안(2022): 종합재산신탁 활성화, 비금융 서비스 결합, 가업승계/주택/후견신탁 등 고령화 대응 신탁 활성화 • 국민연금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시범사업(2022)	• 공공신탁 도입 논의 중 • 관리형 신탁제도 개선 검토 중: 집합 운용 허용,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 신탁판매 자격 요건 완화 등 • 전문후견, 공공후견제도 확대 검토 등
일본	• 축적 자산의 연금화/소득화, 효율적 배분 중심	• 장수리스크, 자산고갈 대비 위한 자산운용 중요성 강조	• 인지능력 저하 고령 소비자 보호, 고령층 편중 자산의 이전 및 승계, 상속준비 강조	• 시니어 고령화 본격화(치매, 간병 수요 증가) • 상속 본격화

자료: 나미선(2023)의 일본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함

가. 인지취약 인구의 규모

2020년 국내 베이비붐 1세대[46]의 65세 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33%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 인구 및 후기 고령 인구 진입이 향후 약 20년 정도 계속되면서 신탁시장 및 증여상속시장에 주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1〉 우리나라 인구피라미드 변화 및 베이비붐세대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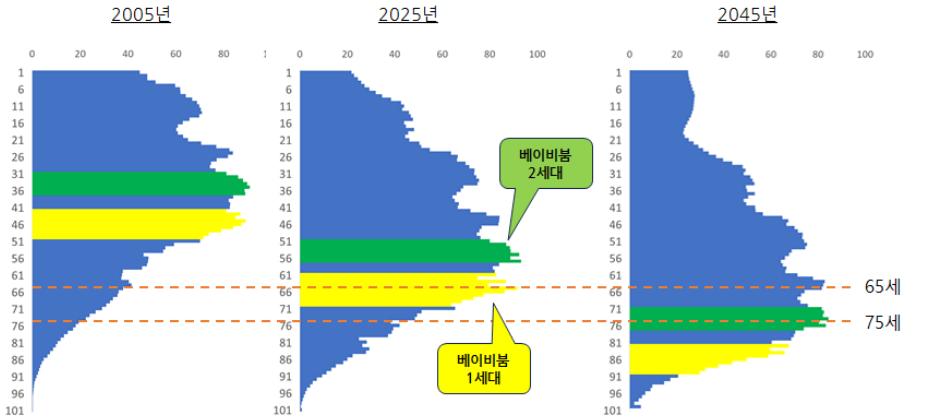

구분	규모	2025년 현재 연령	은퇴 시작 (60세)	고령자 진입 (65세)	후기고령자 진입(75세)
베이비붐1세대 55~63년생(9년)	714만 명 (총인구 14%)	62~70세	2015 ~2024년	2020 ~2029년	2030 ~2039년
베이비붐2세대 68~74년생(7년)	900만 명 (총인구 19%)	51~57세	2028 ~2034년	2033 ~2040년	2043 ~2050년

자료: 통계청, 인구상황판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2025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약 1,051만 명(총인구의 20.3%)으로, 2035년 총인구의 30%, 2050년 40%(1,89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장래 사망자 수도 2020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60년 정점을 이룰 것으로 추계 되어, 관련 상속자산 및 증여상속 설계 수요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6) 국내 베이비붐 코호트는 1세대(55~63년생) 약 714만 명, 2세대(68~74년생) 약 900만 명으로 구성됨

〈그림 Ⅳ-2〉 국내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및 사망자 수 추계

(단위: 만 명, %)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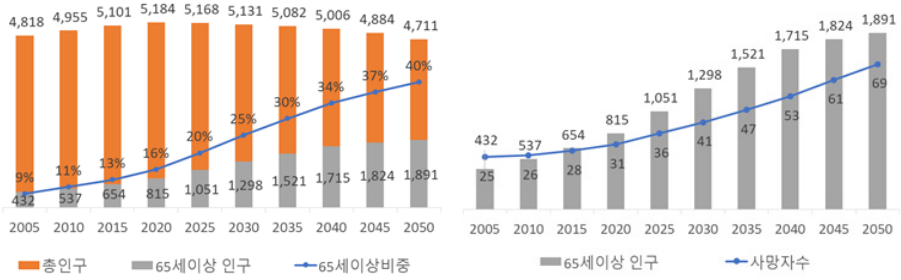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4. 9.), 고령자 통계, 장래 사망자 수 추계

고령 인구의 급증에 따라 치매 환자 및 뇌졸중 등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중증질환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전국 치매역학조사에 의하면, 국내 2025년 현재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고령 인구의 9.2%)으로 치매 인구 1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치매로의 진행이 예견되는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47] 진단자 수도 298만 명(고령 인구의 28.12%)에 이르고, 2033년까지 이들의 규모가 4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보건복지부 2025) 신탁을 활용한 치매에 대한 대비와 증여상속 설계 수요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3〉 연령별 치매 인구 및 전체 치매 인구 추이

(단위: 만 명, %)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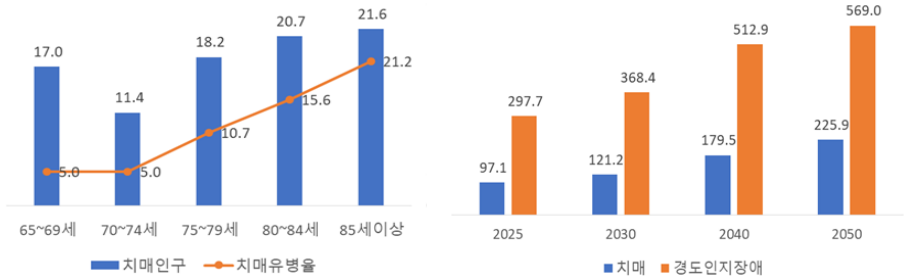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 3. 12.),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47)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기능의 저하가 객관적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감퇴된 상태이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보존되어 있는 상태. 경도인지장애의 10~15%가 매년 치매로 진행됨(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뇌졸중도 인구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다. 2023년 한국뇌졸중 등록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뇌졸중은 매년 국내에서 13만~15만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여 성인 장애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Ⅳ-4〉 연령별 뇌졸중 환자 및 전체 환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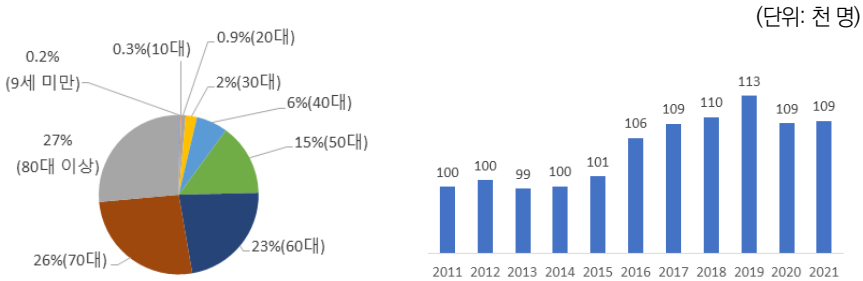

자료: 김용재(2024)

〈그림 Ⅳ-5〉 남녀 연령별 뇌졸중 환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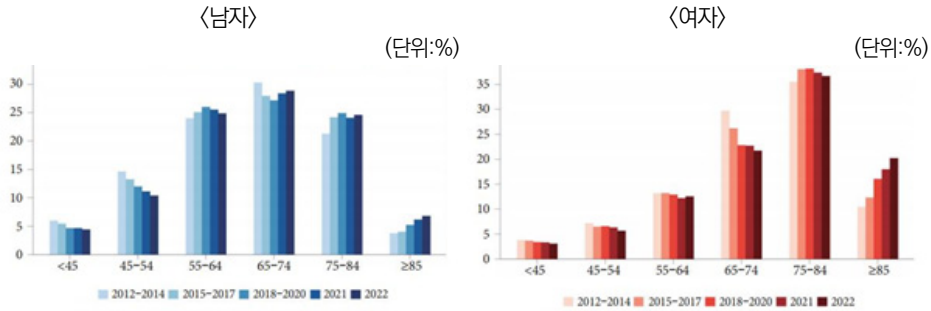

자료: 김용재(2024)

뇌졸중 환자의 80% 이상이 60세 이상이며, 과거에 비해 고령 환자 비중은 더욱 증가하여[48] 노인 인구 비율이 4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50년에는 약 40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49]

48) 미국심장협회(AHA)는 최근 10년간의 연구 결과에 근거해,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생존자 중 최대 60%가 1년 안에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며, 약 40%는 치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수준의 인지 장애를 경험하며, 30% 이상이 5년 내 치매로 진전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함(연합뉴스 보도자료(2023. 5. 8.), "뇌졸중 생존자 최대 60%, 1년 내 인지기능 저하")

49) 서울경제(2024. 1. 29.), "초고령화에 뇌졸중 환자도 급증…'골든타임' 놓칠라"

한편, 국내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2024년 현재 약 263만 명으로 총 인구의 5% 정도이다. 과거에 비해 대부분의 신체적 장애인 수는 감소 추세인 반면, 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의 비중은 2014년 12.1%에서 2023년 14.2%로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뇌손상을 동반한 신체장애인 뇌병변장애 및 뇌전증장애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장애인 중 약 23.4%인 58만 명 정도를 인지취약층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50]

〈그림 Ⅳ-6〉 전체 장애인 및 인지취약 장애인 규모 추이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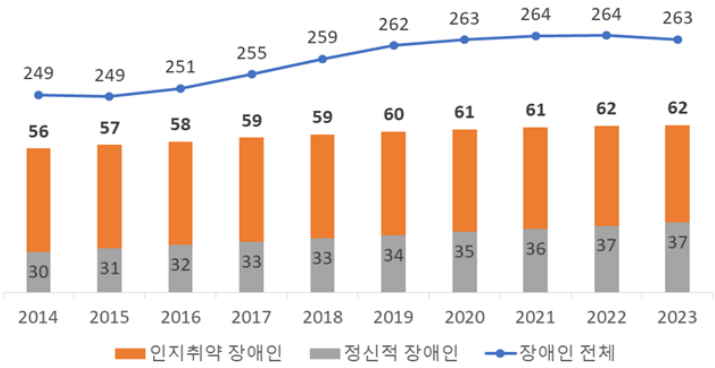

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오티즘(자폐성), 정신 장애를, 인지취약 장애는 정신적 장애와 뇌병변, 뇌전증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장애인 현황

연령별로는 뇌병변장애와 정신장애가 50대 이후 급증하고, 자폐성 장애의 경우 학령기 및 이전 연령에서, 지적장애의 경우 20~3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고 있다.[51]

50) 2024년 현재 뇌병변장애는 23.7만 명(전체 장애인의 9.3%), 뇌전증장애 6천 명(0.3%), 지적장애 22.9만 명(8.5%), 자폐성장애 4.2만 명(1.4%), 정신장애 10.3만 명(3.9%)를 단순 합산함

51) 이와 함께 정신적 장애로의 진전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 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에 대해 F코드로 진료받은 실인원 수는 약 259.3만 명으로(입원, 외래, 낮병동 모두 포함),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치료 수진자 수가 5,675명으로 나타남

〈그림 Ⅳ-7〉 연령별 인지취약 장애인의 분포: 전체 및 장애 유형별

(단위: 천 명)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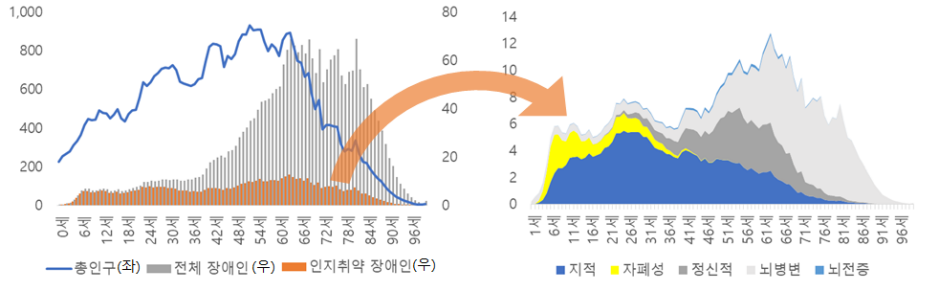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24), 장애인 통계

이상의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인구, 뇌졸중 환자 수(연간 14만 명으로 추정), 인지취약 장애인 규모 등을 참고하여, 2025년 현재 국내 특별수요신탁 잠재 시장 규모를 단순 합계하면, 약 467만 명, 연령분포는 아래와 같다.[52] 특별수요신탁을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을 포괄하는 광의로 정의하여 장애인 전체 인구를 포함할 경우, 672만 명까지로도 볼 수 있다.

〈표 Ⅳ-2〉 인지취약 유형별 인구 규모

65세 이상 고령 인구(2025년)		1,051만 명
	치매 환자	97만 명
	경도인지장애자	298만 명
뇌졸중 환자 수(연간)(2024년)		13~15만 명
장애인 전체(2024년)		263만 명
	인지취약 장애인	61.7만 명
후견제도 설정건수(2023)		12.8만 건
사망자 수(연간)(2025년 추계)		35.8만 명

〈그림 Ⅳ-8〉 연령별 인지취약 인구 분포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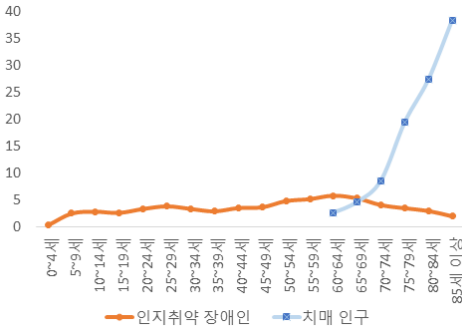

주: 후견제도 설정건수는 기존 인지취약 인구들과 중복 가능하여 특별수요신탁 잠재시장 규모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연령별 분포는 연령별 정보가 제공된 치매, 경도인지장애, 장애인구만 합산함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52) 뇌졸중 환자 수나 장애 인구의 경우 장기 추계 자료가 부재하여 시장 규모 추정 값에는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이들의 연령별 분포를 고려할 때 고령 인구 증가와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인지취약 장애인(특히 성년기 이하의 경우)의 신탁 수요에 대해서는 그 부모의 연령 및 자산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 정보 수집 등의 어려움으로 진행하지 못했음

나. 인지취약 인구의 보유 자산 규모

우선 고령자 가구 보유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조사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국내 전국 조사 중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3개 기관 공동 작성 통계로 전국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한 결과를 행정자료와 연계하여(2023년 3월 말 기준)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의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65세 이상 노인 가구 10,078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2023년 9~11월)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두 조사의 고령자 평균 보유 자산 규모의 차이가 크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기준, 2023년 가구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 5,5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6만 원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4억 3,540만 원)보다 2,000만 원 높은 수준이다. 고령자 가구의 경우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1.3%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 1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그림 Ⅳ-9〉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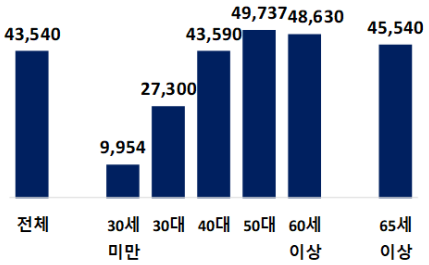

〈그림 Ⅳ-10〉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구성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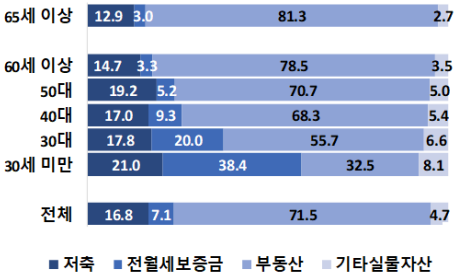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2023년 기준 자료임

2023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국내 65세 이상 가구가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는 평균 4,912만 원, 부동산은 3억 1,817만 원으로, 고령가구 자산 중 60% 이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평균 비중은 약 22%, 97% 이상이 예적금,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과 연금자산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 치매머니(Dementia Money) 관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2025년 5월 공개한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

보유 자산은 154조 원, 국내총생산(GDP)의 6.4%로 나타났다. 2050년에는 GDP 15.6%인 488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림 Ⅳ-11〉 치매가구 보유 자산 규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추정치

(단위: %,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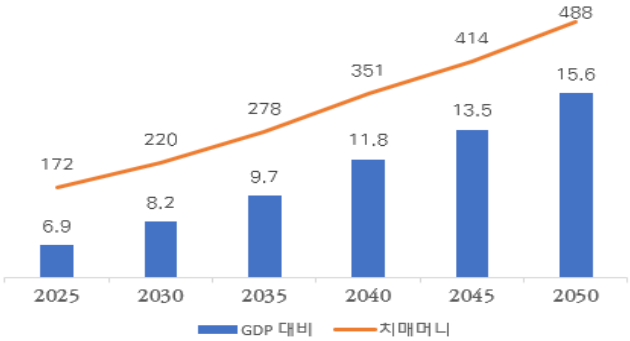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25. 5. 6.), "치매머니 154조 원, 2050년엔 488조 원 넘는다"; 서울대 건강금융센터

산출 근거에 대한 정보 확보가 어려워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앞서 일본의 치매머니 산출 방법을 국내 기존 치매 인구 및 65세 이상 가구 보유 자산 규모 자료에 근거해 산출한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53]

〈표 Ⅳ-3〉 치매가구 보유 자산 규모: 본 연구 결과(Max Proxy)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3월 말)	2023년 노인실태조사(9~11월)
전국 가구 대상(65세 이상만 분석)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조사(N=10,078명)
순자산액 4억 5,540만 원 부동산 81.3%, 저축 12.9% (전체 가구 4억 3,540만 원)	총자산 3억 6,729만 원 부동산 3억 1,817만 원(총자산의 60%), 금융자산 4,912만 원(13.4%)
*65세 이상 치매 인구수 97만 명	
=442조 원(순자산), 57조 원(금융)	=356조 원(총자산), 47.6조 원(금융)

자료: 저자가 작성함

53)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연구소의 치매머니 추정 근거를 살펴보면, 전체 고령자 인구 중 치매 인구수를 추계하고 이에 대해 65세 이상 가구주 보유 평균 자산 규모를 곱하여 계산하였는데,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면 국내 치매머니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순자산) 약 442조 원, 노인실태조사 기준(총자산) 약 356조 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장애인 가구의 보유 자산 규모에 대한 조사 자료 역시 조사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2년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조사자료(2022년 10월)에서 2021년 3월 말 기준 장애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8,658원, 부채는 5,862만 원, 순자산은 3억 2,796만 원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가구는 각각 5억 1,557만 원, 9,132만 원, 4억 2,425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연간 경상소득의 경우, 비장애인가구 6,301만 원, 장애인 가구 4,557만 원이다. (전체 가구 기준, 자산 50,253만 원, 부채 8,801만 원, 순자산 41,452만 원, 소득 6,125만 원이다.) 이에 비해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3년 주기) 결과, 월평균 소득이 305.8만 원(연소득 3,670만 원)으로 전국가구 평균 483.4만 원(연소득 5,801만 원) 대비 63.3% 수준(2022년 4분기)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의삶패널조사의 4차 자료'(2021년)을 활용한 연구(임정민 외 2024)에서는 중고령 장애인의 평균 자산 수준을 1억 7,102만 원으로 추정하였는데, 전체 인구 중 50대 가구주 평균 자산인 6억 451만 원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장애 유형별 보유 자산 규모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인지취약층 장애인(또는 미성년인 경우 그 부모)의 보유 자산 규모 파악이 어려웠다. 이 중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근거하여, 인지취약 장애인가구 보유 자산 규모를 추정한 결과 약 240조 원 규모로 나타났다.

〈표 Ⅳ-4〉 장애인 보유 자산 규모: 본 연구 결과(Max Proxy)

2022년 장애인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조사 (2021년 3월 말 기준)	2021년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4차) 활용: 50세 이상 중고령 장애인(N=1,796명)
한국장애인개발원	임정민 외(2024)
총자산 3억 8,658만 원 저축 6,335만 원 (비장애인가구 총 5억 253만 원)	총자산 1억 7,102만 원 (50대 가구주 전체 6억 451만 원)
*인지취약 장애인구 규모 62만 명	*인지취약 장애인구 규모(50대 이상): N/A
=240조 원(총자산), 39.3조 원(금융)	–

자료: 저자가 작성함

이상에서 추정된 국내 인지취약 인구의 보유 자산 규모는 대략적인 참고 자료이며, 장애인 가구의 경우 평균 보유 자산 규모가 전체 가구 평균에 비해 매우 낮고, 특히 인지취약 장애인의 빈곤율이 평균 장애인 가구에 비해 높은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의 수탁 가능 자산 규모는 추정된 결과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표 Ⅳ-5〉 장애유형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중 및 가구소득

장애유형	등록장애인(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명, %)		평균가구소득	중위소득
전체	2,641,896	610,983	23.1%	254.3	200
지체	1,153,262	180,962	15.7%	255.6	200
뇌병변	240,546	66,023	27.4%	239.7	190
시각	248,360	45,533	18.3%	249.5	190
청각	432,854	81,475	18.8%	222.8	161
언어	22,830	5,098	22.3%	259.9	199.6
지적	229,780	111,850	48.7%	324.5	291
자폐성	42,744	6,904	16.2%	413.6	350
정신	104,197	74,248	71.3%	198.4	150.2
신장	108,623	26,574	24.5%	270.5	226.7
심장	4,933	861	17.5%	280	232.8
호흡기	11,029	2,946	26.7%	233.8	165.9
간	156,345	1,661	1.1%	373.9	314.9
안면	2,757	535	19.4%	406.4	247.9
장루요루	17,117	2,825	16.5%	215.8	182.4
뇌전증	6,991	3,488	49.9%	281.8	232.9

주: 소득은 2018년 자료 기준임
자료: 이선우(2018)

2022년 장애유형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중과 중위소득에 대한 조사 결과, 인지취약 장애 해당하는 뇌병변, 지적, 정신, 뇌전증 가구의 빈곤율이 모든 장애 유형 중 가장 높은 4개 유형이었으며, 전체 등록장애인의 22% 수준을 훨씬 우회하고 있었다(단, 자폐성 장애는 제외). 다만, 중위소득의 경우 전체 장애인의 월 200만 원에 비해 높은 편으로, 인지취약 장애인 가구소득 분포의 편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2. 제도 개선 방향

국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 인구 편입이 향후 20여 년 정도 계속됨에 따라 치매 등에 대한 재무적 대비 및 자산 이연 수단으로서의 신탁에 대한 요구는 증가할 것은 자명하나,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취약 인구의 보유 자산 수준이나 고비용 저수익 구조의 취약자 지원

신탁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 부문의 참여와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제도를 〈그림 Ⅳ-12〉와 같이 니즈 조사 및 신탁 설계 영역, 자산관리 실행 영역, 사후적 감독 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도식화할 때, 현재 점선으로 표시된 공공 부문의 개입 영역을 어떤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Ⅳ-12〉 국내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제도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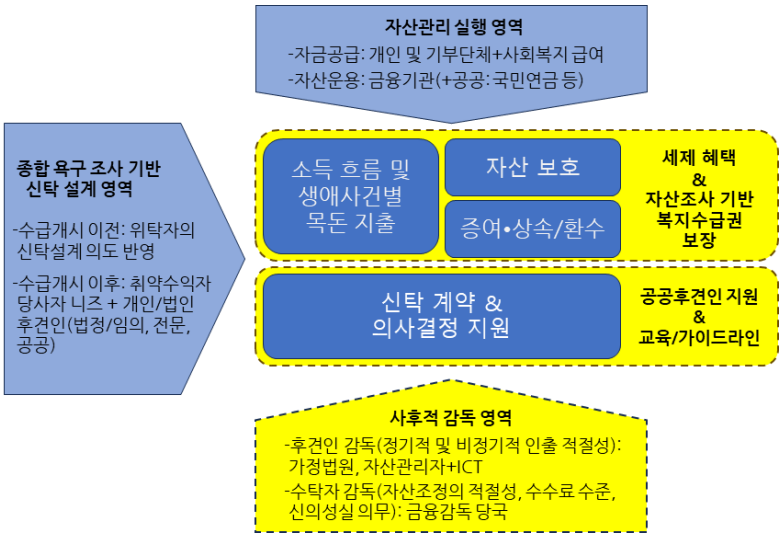

자료: 저자가 작성함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제도 설계에 있어 수요측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이들 인구의 대부분이 근로 능력의 부재로 소득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적절한 복지 수급권의 보장이나 신탁 수익 등을 통한 소득 흐름이 확보되지 않거나 질병이나 생애사건 등에 따른 목돈 지출 요구를 충당할 자산이 유지되지 못 할 경우, 이들의 삶의 질은 크게 손상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공공적 지원은 복지제도나 세제를 신탁 구조와 연계하는 간접적 방식이나 (싱가포르식으로) 신탁 설정 자금이나 수수료 지원 등과 같은 직접 방식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해외 사례에서 이러한 공공 부문의 지원은 취약자 지원 신탁의 종료 후 잔여 자산의 환수를 조건부로 하고 있음을 수요자들에게 환기할 필요가 있다.

공급자의 측면에서는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가지는 인지취약자 신탁에 대한 운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 집합 운용을 허용하고, 적정 수수료

수준을 업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거나, 정부 및 산하 기구(국민연금)에서 법적 수탁자가 역할을 담당하는 적극적인 개입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도 실질적인 자산 운용은 DBS Trustee나 HSBC Trustee 등 상업 신탁은행이 맡고 있으며, 금융기관 중심의 자산 운용 및 보관 업무와 비영리단체 중심의 수익자 관리 업무를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 제도적 여건을 고려할 때, 공공 부문의 참여는 크게 아래의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Ⅳ-6〉 인지취약자 신탁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 강화 방향

구분	민간 중심 특별부양신탁+후견신탁 활성화 환경 제공	정부 직영 공공 특별수요신탁 제도 도입
수요측	• 원본인출 규제 완화(경증 장애인 포함) • 복지 수급권 보장(단, 잔여자산 환수) • 세제특례 적용 수익자 확대(치매 고령자 포함 여부, 법적 근거 검토) • 공공후견인, 전문후견인 지원 강화	• 소액 설정, 자유로운 인출 설계 • 무료 또는 저비용 상담 & 관리 제공 • 장애인 대상자 확대(경중증 치매 포함) • 복지 수급권 보장, 세제 특례 적용 • 집합 운용, 원금 보장
공급측	• 대중 홍보 허용, 판매채널 확대 • 집합적 자산운용 허용, 수수료 현실화 등 • 지원 업무 위탁, 재신탁 허용	• 국민연금 담당 • 전국 지부에서 이용자 접점 •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인력 육성 • 수탁기관, 서비스 인력 감독 책임 명확화
고려사항	• 일정 수준의 수익모델화 필요 • 법적 불확실성 제거에 초점 • 사후관리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 자산운용 전문성 확보 • 비용 부담 높음
이용자 특성	중·상자산층 중심	중·저자산층 중심

자료: 저자가 작성함

일본 사례를 참고로 현재 유명무실한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이나 후견신탁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과 싱가포르식 특별수요신탁을 모델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지원 신탁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공공 부문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 특별수요신탁으로 도입하는 방향이다. 전자가 주로 중상층 이상을 중심으로 한다면, 후자는 중하 이하 자산층에 적합한 제도로 두 방향이 배타적이지는 않다.

이하에서는 민영 부문의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부문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출 경직성, 복지 수급권 미보장, 공급측 제공 유인 부족 등에 대해서는, 수탁자/법원의 사후 감독 강화를 전제로, 1) 경증 장애인의 신탁원본 인출 요건을 장애인의 '소득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필요'로 해석하고, 돌봄서비스 비용, 주거 이전비, 자립 초기비용 등의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사전 상담을 체계화하고, 특히 후견인이 있는 경우는 신탁자산 인출에 대한 의무 보고 시스템을 도입하며, 표준 회계 양식을 제공하는 등 제도 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2) 복지 수급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금융당국의 공동 지침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2항에서 명시된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규정 항목으로 '특별부양신탁으로부터의 수익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3)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이나 후견신탁과 같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의 상품에 민영 부문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신탁 목적이 유사하고 위험이 제한적일 경우는 개별 신탁 계좌 간 집합 운용(Pooling)을 허용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부동산신탁 등 관리 난이도가 높은 서비스 부문에 대한 업무 위탁이나 재신탁 등을 허용하는 등 수탁기관이 관리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관리형 신탁판매 자격 요건의 완화도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지역중심 금융기관을 신탁판매대리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설계사 채널과 같이 수요자를 찾아가고 장기적 관계 형성에 강점을 가지는 판매인력은 취약층 수익자를 위한 신탁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투자판매전문자격 요구 수준을 완화하되 충분한 교육과정을 통해 신탁판매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신탁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내 신탁업자의 광고 규제 제한을 관리형 신탁상품에 대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일반 대중이 신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후견신탁을 활용하도록 권유하는 일본의 사례, SNTC를 통해 영상자료를 포함한 신탁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탁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욕구 조사와 신탁 설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 등을 충분히 진단함으로써 신탁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경증 치매 인구가 인지 저하에 대비하여 치매신탁, 임의후견신탁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자산관리를 설계함으로써 공공복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이들 신탁상품에 세제 혜택 제공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전문 후견인 교육, 싱가포르의 사회복지사 대상 재무 교육 제도를 참고하여 충분한 초기 설계와 신탁관리 지원을 위한 인력을 육성하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대응 방향에서 치매신탁 및 후견신탁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후견 개시 기준, 업무 범위, 수행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간의 관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치매신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이 포함된 부동산의 신탁 허용, 의료·간병비 지급 목적의 신탁 부동산의 유동화 지원, 의료, 세무 등 전문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신탁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연내 이러한 제안들이 현실화될 경우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의 이용자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영 부문도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시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Lock-in 효과가 큰 신탁 고객의 경우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 고객 자료를 활용하여 후견적 재산관리 수요가 있는 목표 고객을 선정하고(예: 기존 사망보장 계약 중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신탁 특약 서비스 개발, 본인 사망보험금 계약 고객/치매&간병보험 고객 중 인지 저하자 대상 신탁 특약 서비스 개발 후 제안하기 등), 후견적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치매 및 발달장애인 전문가 내부 인력 육성, 설계사 채널에 대한 신탁교육, 고령자 및 장애인 전문단체와의 일상생활 지원 업무 위탁, True Link사와 같은 지출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급결제 기관과의 제휴 등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 차원에서 ESG Money를 단편적 이벤트성 지출 영역에 사용하기보다는 Greater Easten Assurance의 사례를 참고로 저소득층 대상 보험청구권신탁 지원이나 장애인 및 고령자 전문 비영리단체의 신탁 관리 시스템 개발 지원 등 금융 유관 영역에서 사용할 것을 제안해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제공 중인 장애인특별부양신탁, 발달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을 중심으로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의 제도 및 이용 현황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시장이 매우 협소하며, 해외 사례에 비해 그 활용이 저조하고 공급측의 적극성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해외 제도를 참고하여, 치매 고령자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취약층 수익자의 정의, 경증 장애인으로의 세제 혜택의 확대와 복지 수급권의 보장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그 밖에 관리형 신탁상품의 특성에 적합한 운용, 판매, 홍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저수익 고비용 구조의 특징을 고려하여, 시장화되기 어려운 저소득 인지취약층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에서의 공공 부문의 역할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영 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취약자 지원 신탁을 단순한 사회공헌 차원의 사업모델로서만 접근하기보다는 금융업권별로 적절한 수준의 운용 및 관리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신탁관리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수수료 절감을 위한 법률, 의료, 사회복지 기관들과의 협업체계 구축, ICT 기술의 활용, 업무 위탁이나 자회사 설립 등 다양한 사업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간의 계약 관계가 지속되는 신탁상품의 특성상 관리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통해 선한 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과, 그에 따른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지가 취약자 지원 신탁사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소라 하겠다. 스스로의 복지를 위한 의사결정 능력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인지취약 인구는 가장 취약한 인구로 간주된다(제철웅 2018).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 사업의 공공적 기여를 근거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 비용 분담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탁이나 후견제도 등 민사적 대리권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 환경에서 인지취약자들의 재산 보호에서 신탁이 가지는 장점을 홍보·교육하는 역할이나, 인지취약자의 잔존 의사결정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후견적인 신탁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

문 인력을 육성하고, 자격제도 및 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역할, 현행 장애인 및 치매 관련 복지서비스와 신탁관리 업무와의 연계 가능성 검토, 인지취약자 보호를 위한 공공 후견인 또는 시구청촌장 후견인의 역할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법무, 복지, 금융 부문 간 협업과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헌법 34조 6항에서 "국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근거해 인지취약 인구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자립과 개인의 수요에 맞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 등이 본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활성화됨으로써 인지적 약자에 대한 재산 남용과 고령층 인구의 자산 동결을 최소화하고 다음 세대로의 자산이연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며, 무엇보다 인지취약층 인구의 재무적 웰빙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특별수요신탁 및 취약자 지원 신탁에 대한 기초 통계 자료의 부재, 장애인 신탁 부문과 고령자 신탁 부문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세분화된 논의 부족, 정책적 및 사업적 제언의 구분과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의 구체화 미흡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다만, 기존 신탁 관련 연구들이 각 신탁 유형별 관련 법제 연구 또는 각 신탁상품별 신탁업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졌었다면, 본 연구는 신탁의 수요자 관점에서 '인지취약성'이라는 특별한 수요를 공유하는 장애인과 고령자, 중증질환자 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후견적 재산관리(법정 후견인에 의한 재산관리라는 의미가 아닌, 신탁 설정 이후 보다 밀착된 관리서비스를 요구하는 개념적 의미로)'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인지취약층 인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제도적 개선 사항들이 보다 구체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성호·이승주(2024),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재산 확대 필요성」,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2024),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10권: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방지」

권효상(2011), 「보험과 신탁」, 『보험법연구』, 제5권 제2호

_____(2018), 「보험금청구권 신탁 관련 법적 논의: 보험신탁상품의 개발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32권 제3호

금융위원회(2014), 장애인 금융제약 해소 간담회

김나래(2019), 「후견제도의 보완을 위한 신탁에 관한 소고」, 『성균관법학』, 제31권 제3호

김용재(2024), "Stroke Fact Sheet 2024 from Korean Stroke Registry"

나미선(2023), 「초고령사회 일본(산업별 시니어 시프트-금융)」, Special Report, 대신증권

류건식·이태열(2017), 「1인 1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전략」, 『CEO Report』, 2017-07, 보험연구원

_____·손성동(2023), 「일본 치매정책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_____(2025), 「한국 치매신탁시장과 보험회사의 역할」, RMI보험경영연구소 한·일세미나

박정희(2022), 「일본 푸르덴셜생명의 사후관리서비스 사례」,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박지홍(2024), 「일본 신탁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제14권 16호, 하나금융연구소

배광열·허정훈(2020), 「판단능력이 부족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의사결정지원모델 모색」, 『후견과 신탁』, 제3권 제1호

보건복지부(2024), 「2023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송윤아(2025),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①공공신탁을 통한 보험금청구권의 간병비 전환」,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송홍선·이효섭·황세운(2021), 「고령화시대 신탁업의 중장기 발전 전망과 과제」, 『연구총서』, 21-1, 자본시장연구원

안성포(2014), 「현행 신탁업의 규제체계와 그 한계」, 『한독법학』, Vol. 19
양지훈(2024),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연구」, 『보험법연구』, 제18권 제3호
양희석(2020),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용 및 그 주요 쟁점」,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_____(2024), 「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 관련 법적 쟁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140호
오영표(2020),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 방안」, 조세금융신문(2020.10. 8.), 전문가 칼럼
_____(2022),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용과 법적 쟁점」, KIRI 세미나 발표자료, 보험연구원
_____(2024), 「한국형 Special Needs Trust-보험금청구권신탁을 중심으로」, KIRI 세미나 토론자료, 보험연구원
이경훈·손준범(2024), 「일본 상속신탁 비즈니스 분석과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계정(2020), 「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제 61권 제4호
이선우(2018), 「장애인의 경제 상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6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중기(2009), 「「신탁법」의 개정방향, 「신탁법」 총칙의 개정, 신탁관계인제도의 개정, 새로운 신탁의 도입」, 『선진상사법률연구』, 제48호(특집: 신탁법제 현대화)
이지연(2022), 「일본의 민사신탁(가족신탁)과 생명보험신탁에 관한 검토」, Insurance Issues. 해외전문가칼럼, 『월간생명보험』, 생명보험협회
임정민·양은정(2024), 「장애발생 시기가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자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4(3)
임준·정수진(2024), 「보험회사의 고령시장 사업전략 연구」,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정봉은·이선주(2015),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정승희(2023), 「노인 돌봄과 신탁의 역할 확대」, 하나금융연구소
제철웅(2015), 「발달장애인 신탁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법학논집』, 제32권 제4호
_____(2019),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 방안」, 『후견과 신탁』, 제2권 제2호
_____·최윤영(2014), 「중증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도입 필요성」, 『비교사법』, 제21권 3호

중앙치매센터(2020), 치매공공후견사례집
지광운(2023),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37권 제3호
진익·김동겸(2010),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하나금융연구소(2024), 「중산층의 상속 경험과 계획」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2024),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 사건의 현황」
한국자폐인사랑협회(2025),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소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치매머니 2차 자문회의
한기정(2009), 「생명보험신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보험금융연구』, 제57권
한아름(2020),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일본의 신탁업 변화 사례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20-02호, 자본시장연구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신탁 계약현황(https://freesis.kofia.or.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24), 장애인 통계(https://www.mohw.go.kr/)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 N의학정보: 경도인지장애(https://snuh.org/health/nMedInfo/nView.do?category=DIS&medid=AA000095)
우리은행 블로그, 상속증여세 절세: 장애인신탁과 장애인보험, 우리은행 전문가 기고문(https://blog.naver.com/woori_official/223836324217)
_____ 홈페이지, 인지취약 지원 신탁 현황(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POTRT0063)
통계청(2024), 인구상황판(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Main.do)
_____(2024. 9.), 고령자 통계, 장래 사망자 수 추계(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Detail.do)
_____, 장애인 현황(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

idx_cd=2768)
하나은행, 하나 리빙트러스트(https://m.kebhana.com/cont/hidden/livingtrust/html/public/public01.html)
_____, 하나 성년후견지원신탁(https://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1/mall080104/1459692_115190.jsp)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강의자료(https://www.autismtrust.kr/)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홈페이지,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강의자료, 신관식, 신탁의 이해와 특성(https://autismtrustedu.kr/)

[일본]

金融庁(2024), "後見制度支援預貯金·後見制度支援信託導入状況"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2018), "認知症患者の金融資産200兆円の未来", Economic Trends(2018. 8. 28. 발간호)
미즈호 종합연구소(2018a), "高齢社会と金融", 긴급보고서(2018. 1. 31.)
_____(2018b), "高齢社会と金融"
스미토모미쓰이신탁은행(2022), "증가하는 인지증 고령자의 보유 자산", 조사월보, 2022년 5월호
일본신탁협회, "日本の信託", 연도별
青木·杉山(2025), "民事信託に関する裁判例と実務上の留意点"

三菱UFG 신탁은행 홈페이지, 특증증여신탁의 작동방식(https://www.tr.mufg.jp/tokuteizouyo/tokuteizouyo.html)
미즈호 신탁은행 홈페이지(2023)(https://www.mizuho-fg.co.jp/sustainability/business/structure/aging/other/index.htm)
신탁협회 홈페이지, 신탁통계핸드북 자료(https://www.shintaku-kyokai.or.jp/data/statistics_list/)
_____(2023), 특정증여신탁 브로셔(https://www.shintaku-kyokai.or.jp/arc

hives/045/202306/tokuteizouyo20230601.pdf)
푸르덴셜생명 홈페이지, 공개매거진 “푸르덴셜생명의 현상 2024”(https://www.prudential.co.jp/company/achievement/pdf/pru20241.pdf)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MCI) 고령자 수와 유병률의 장례 추계(https://www.mhlw.go.jp/content/001279920.pdf)
MUFG(미쓰비시 UFG은행) 홈페이지(https://www.bk.mufg.jp/index.html)
JIC 홈페이지(www.jicgroup.co.jp/index.html)

[미국]

Ho, Lusina, Rebecca Lee 외(2019), “Special Needs Financial Planning: A Comparative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United Nations(2014), “General Comment No.1(2014), Article 12: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C/GC/1

Cornell Law School 홈페이지, Legal Information Institute(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
_____,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42/1396p)
Greater Eastern Life Assurance 홈페이지, 상품 브로셔(https://www.greateasternlife.com/sg/en/personal-insurance/our-products/life-insurance/great-eastern-cares-term-plan.html)
Government of the U.K., Trust & Taxes: Vulnerable Persons Trust(https://www.gov.uk/trusts-taxes/trusts-for-vulnerable-people)
True Link Financial 홈페이지(https://www.truelinkfinancial.com/)
Visible National Trust 홈페이지(https://visiblenationaltrust.com/)
미국 연방법 홈페이지(https://www.ecfr.gov/)

[영국]

GOV.UK 홈페이지(https://www.gov.uk/trusts-taxes/trusts-for-vulnerable-people)

[홍콩]

Ho, Lusina(2023), "The Special Needs Trust Scheme in Hong Kong", 「為易受傷害/弱勢受益人而設的（香港）特殊需求信託」, HKU SPACE and Equality Rights Project at HKU Law 세미나 자료(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srAej9NZxwg)

홍콩 SAR 정부 홈페이지(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501/15/P2025011500244.htm)

[싱가포르]

싱가포르 사회가족부(2025. 3.), 장애보고서(Disability Trend Report)

SNTC 홈페이지, Annual Report 23/24(https://www.sntc.org.sg/)

_____, GOAL Sponsorship Scheme(https://www.sntc.org.sg/donate/goal-sponsorship-scheme)

Greater Eastern Life 홈페이지 상품 브로셔(https://www.greateasternlife.com/)

Special Needs Trust Company, SNTC 리플렛(https://www.sntc.org.sg/)

부록 Ⅰ 일본 고령층 자산 및 치매머니 규모

1. 일본 고령층의 자산 보유 현황

○ 일본의 60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 가계부문 금융자산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노후 대비 투자 장려 정책의 결과로 유가증권 보유 비중이 7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 고령층의 저축형 금융상품 보유 경향과 뚜렷한 차이가 있음

- 일본 총무성 전국소비실태조사 결과, 가계 금융자산의 약 60%를 60세 이상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보유 자산 비중도 20% 이상임
- 연령대별 개인 금융자산의 구성 비율을 예적금, 보험, 유가증권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고령자일수록 유가증권의 비중이 높아져 70세 이상 고령자에서 금융자산 중 유가증권 비중이 가장 높았음(미즈호 종합연구소 2018a)
- 2015년 가계 부문 유가증권 보유 규모 260조 엔 중 70세 이상 고령자의 보유 비중이 41%에서 2035년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부록 그림 Ⅰ-2〉 참조)

〈부록 그림 Ⅰ-1〉 세대주 연령대별 개인 금융자산액 (단위: 조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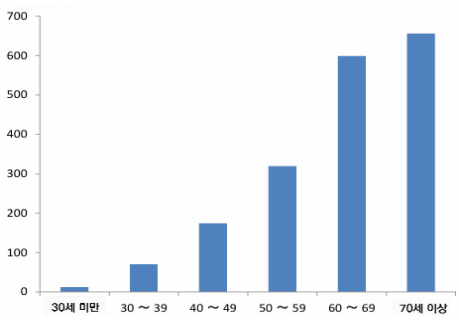

자료: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2018)

〈부록 그림 Ⅰ-2〉 유가증권 보유자의 연령대별 구성 (단위: 조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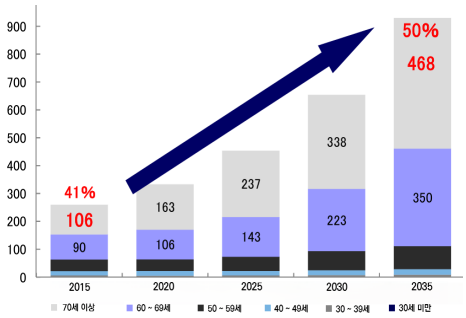

자료: 미즈호 종합연구소(2018a)

○ 일본의 치매 인구의 규모는 2022년 현재 443만 명으로 경도인지장애 559만 명을 합하면 1천만 명 정도로, 전체 고령자(3,603만 명)의 3.56%가 치매 또는 예비군에 해당함[54)]

- 2022년 연령대별 치매 유병률은 65~69세의 1.1%, 70~75세의 3.1%, 75~79세의 7.1%, 80~84세의 16.6%, 85~89세의 32.5%, 90세 이상의 50.3%임
- 치매 환자는 2030년 523만 명(고령자의 14%), 2050년에 587만 명, 2060년에 64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일본경제신문 2024)

○ 치매 인구의 증가로 인한 자산동결 사례와 노노(老老)상속이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 고령자가 보유 중인 치매머니(Dementia Money) 규모가 2017년 총 가계 자산의 7.8%에서 2030년 10.4%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55)]

- 2022년 치매 고령자 보유 장롱예금(동결 상태의 예금, 투자신탁 계좌 잔액 합계) 추정 규모가 60조 엔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스미토모미쓰이신탁은행 2022)
- 2017년 전체 개인 금융자산의 7.8%인 143조 엔을 치매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15조 엔(개인 금융자산의 10.4%)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2035년 치매 고령자 보유 유가증권 규모는 전체 가계 보유 유가증권의 1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미즈호 종합연구소 2018a)

〈부록 그림 Ⅰ-3〉 인지증 환자 추정 추이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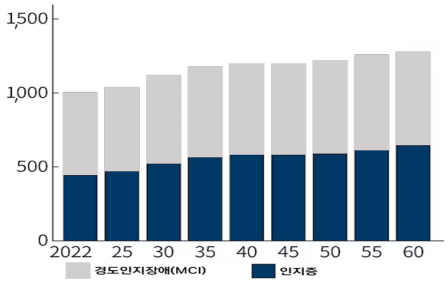

자료: 일본경제신문(2024. 5. 8.), "치매 환자, 2030년 추계 523만 명 8년 만에 80만 명 늘어"

〈부록 그림 Ⅰ-4〉 치매머니 추정 추이

(단위: 조 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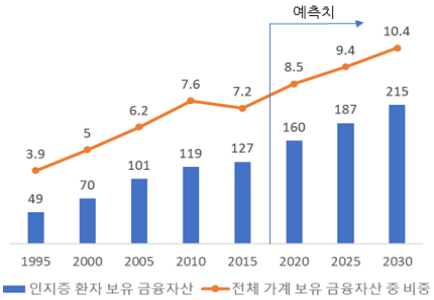

자료: 일본은행, 자금순환통계, 2017;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2018)

54)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55) 전체 가계 금융자산 총액(과거 자료는 일본은행 "자금순환통계", 추계자료는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2018년 자료")과 총무성 "전국소비실태조사"의 세대주 연령대별 금융자산 자료를 활용하여 세대주 연령대별 가계 금융자산액을 추정함. 추정된 연령대별 금융자산 잔액을 후생노동성과학연구의 연령대별 치매 유병률 자료에 근거한 치매 환자 수와 곱하여 전체 치매머니 규모를 추정함(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2018)

부록 Ⅱ 일본 보험사 특별수요신탁 판매 사례

1. 인지취약 인구 전용 생명보험신탁 '미래안심서포트'[56]

○ FWD생명, 제일프론티어생명, 메뉴라이프, 라이나생명 등은 발달장애인 특화 보험판매채널인 JIC(Japan Indemnity Company)사와 함께 특별수요가 있는 자를 수익자로 하는 인지취약자 전용 상품인 '미래안심서포트'를 미즈호신탁은행과의 제휴로 제공함

- 2017년 12월 FWD생명(구 FWD후지생명)과 미즈호신탁은행이 장애인 특화 보험판매대리점이자 신탁대리점인 JIC과 함께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와 부모를 지원하는 전용 생명보험신탁 '미래안심서포트'를 개발함
- 이후 2020년 7월 다이이치프론티어생명, 2023년 7월 매뉴라이프생명, 2024년 라이나생명 등이 JIC를 통해 미래안심서포트를 판매 중(FWD생명은 현재 판매 중단 상태)
- 특히, 메뉴라이프생명의 경우 월납종신보험을 기반으로 한 미래안심서포트 신탁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자산 규모가 작은 부모를 위한 상품임

○ 미래안심서포트의 구조에는 위탁자인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 개인(특별수요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 친족), 수탁자인 미즈호신탁은행, 수익자인 장애 또는 특별수요를 가진 자 외에도 신탁설정에서 신탁재산의 교부 등 전체적인 과정의 지원자 역할을 담당하는 JIC와 지도권자 등이 포함됨

- 위탁자는 생명보험회사의 일시납종신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개인이며, 수익자는 원칙으로는 위탁자의 배우자 또는 2촌 이내의 혈족인 개인, 지도권자[57]는 신탁 계약에 의거 수익자를 위해 수탁자와의 사이에서 신탁재산의 교부방법의 변경이나 일부 불출 등의 각종 수속을 수행하는 개인(주로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법인(수익자의

56) JIC(Japan Indemnity-system Center)는 1987년 설립되어 32여 년간 지적장애·자폐증 등 장애인 지원단체, 사회복지법인과 연계해 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보험을 판매하는 전문 보험판매대리점이자 신탁대리점으로, 동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약 10만 명의 장애인 등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음

57) 지도권자는 법정 후견인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신탁 계약 관련 업무에 한한 조력자이며, 기본적으로는 위탁자인 부모가 지정하나, JIC 또는 미즈호신탁은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시 거부할 수 있고, 생존 중에는 보험계약자의 요청으로 변경 가능하며, 사후에는 특별한 사정(지도권자 사망)이 발생하면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입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등)으로 구성됨

- JIC는 미즈호신탁은행의 신탁 계약대리점으로서 부모와의 사이에서 신탁상품 설명 및 신청 서류 접수 등을 실시하는 등 생명보험 및 생명보험신탁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장애 자녀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록한 '미래 안심 지원 노트'를 지도권자나 후견인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함
- 미즈호신탁은행은 자녀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기적 생활비(매월 또는 매년)와 필요시 긴급 자금을 지급하며, 자녀가 사망했을 때 남은 재산의 처리 방안(복지단체 기부 등)을 신탁 계약에 따라 실행함
- 수탁금은 원칙적으로 200만 엔 이상의 일시불 보험금을 대상으로 하며, 신탁보수는 신탁 설정 수수료 16,500엔(세전 15,000엔), 위탁자의 상속 발생 후 금전신탁 설정 시에는 사망보험금의 2.2%(세전 2.00%), 일괄 수령 시에는 110,000엔(세전 10만 엔), 관리 신탁 보수는 연간 22,000엔(세전 20,000엔) 등이 소요됨

〈부록 그림 Ⅱ-1〉 JIC의 '미래안심서포트'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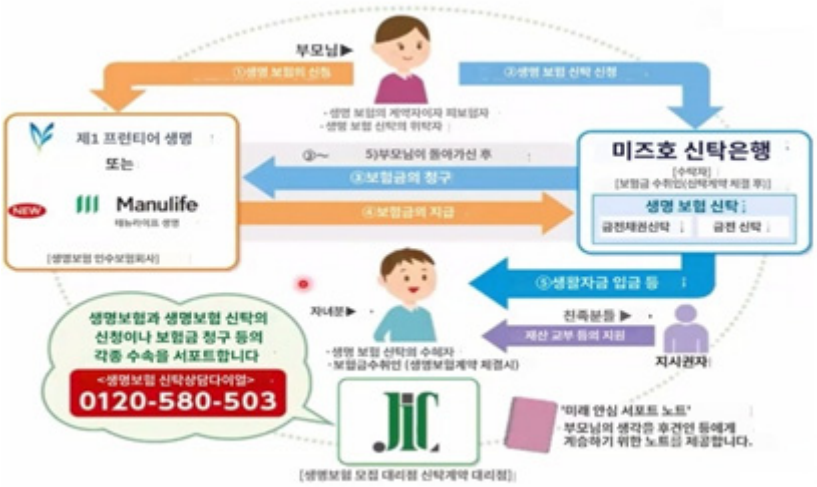

① 고객(보험계약자)이 푸르덴셜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
② 보험계약자는 푸르덴셜신탁과 신탁 계약을 체결
③ 고객 사망 시, 푸르덴셜생명이 보험금을 푸르덴셜신탁에 지급
④ 푸르덴셜신탁이 보험금을 신탁재산으로 관리
⑤ 수익자(배우자·자녀 등)에게 정해진 방식으로 지급
⑥ 남은 자산(잔여 재산)은 미리 지정된 수익자에게 전달

자료: JIC 홈페이지

2. 프르덴셜생명의 신탁자회사 프르덴셜신탁의 마이엔딩케어서비스[58)]

○ 일본 프르덴셜생명은 지역적 확대,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신탁자회사를 설립하고, 생명보험신탁 및 사후 법무적 사무 서비스를 강화한 마이엔딩케어 서비스를 전문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제공 중임

- 푸르덴셜생명은 2010년 중앙미쓰이신탁은행(현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과 일본 최초 생명보험신탁을 공동 개발하고, 제휴 방식으로 생명보험신탁 서비스를 제공함
- 신탁은행 지점 수, 인력 제한 등으로 인한 고객 서비스에서의 한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품질의 서비스 제공, 자산 규모가 소액인 경우에 대해서도 신탁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기에 유리한 자회사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함
- 2014년 11월 100% 자회사 형식으로 프르덴셜신탁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5년 9월 금융청으로부터 관리형 신탁업 등록을 마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함
- 보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보험금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장애 자녀나 치매 또는 개호 필요 고령 부모를 둔 경우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남은 가족이 금융 지식이 부족한 경우, 보험금 수익자의 관리 능력에 불만이 있는 고객 등 '보험금 지급 이후' 보험금을 계획적으로 지급하고 자산을 관리함으로써 고객이 원했던 방식으로 보험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 2023년 현재 푸르덴셜신탁의 생명보험신탁 수탁자산 잔고는 약 6조 6,000억 엔으로 2021년 5조 9,305억 엔, 2022년 6조 2,904억 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중임[59)]

- 2024년 3월 말 기준 연간 신계약 건수는 총 753건으로, 이 중 푸르덴셜생명이 625건, 자매사인 지브롤터생명이 128건을 차지함
- 2020년 5월 현재까지 누적 계약건수는 3,510건으로, 2018년 전년 대비 3.5배, 2019년 전년 대비 1.8배로 꾸준히 증가 중임

58) JIC(Japan Indemnity-system Center)는 1987년 설립되어 32여 년간 지적장애·자폐증 등 장애인 지원단체, 사회복지법인과 연계해 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보험을 판매하는 전문 보험판매대리점이자 신탁대리점으로, 동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약 10만 명의 장애인 등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음

59) 푸르덴셜생명보험사의 생명보험신탁(2023년도 결산, 푸르덴셜생명의 현상 2024(2024. 7.),)

○ 생명보험신탁은 미성년 수익자, 금융 지식이 부족한 배우자, 장애를 가진 자녀 등의 장기적인 보호를 위해 사망보험금을 계획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설계됨

- 보험금 지급 방식을 일시금, 매월 정기 지급, 특정 질병 발생 시 치료비 지급 등의 형식 중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음

〈부록 그림 Ⅱ-2〉 일본 프르덴셜사 생명보험신탁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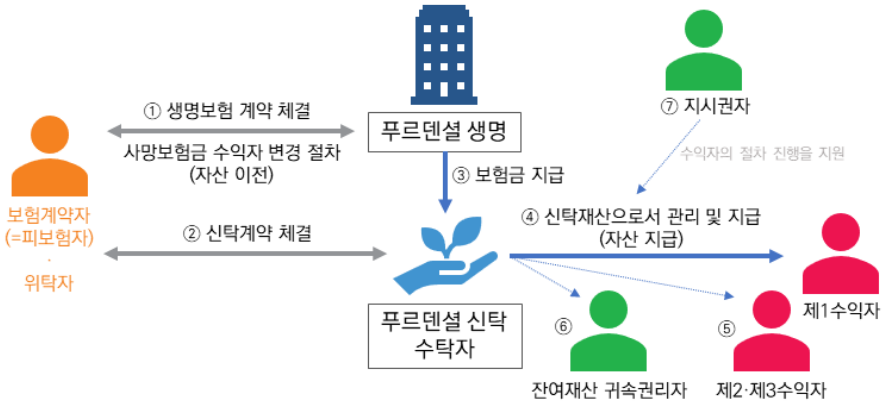

① 고객(보험계약자)이 푸르덴셜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
② 보험계약자는 푸르덴셜신탁과 신탁 계약을 체결
③ 고객 사망 시, 푸르덴셜생명이 보험금을 푸르덴셜신탁에 지급
④ 푸르덴셜신탁이 보험금을 신탁재산으로 관리
⑤ 수익자(배우자·자녀 등)에게 정해진 방식으로 지급
⑥ 남은 자산(잔여 재산)은 미리 지정된 수익자에게 전달

자료: 푸르덴셜생명(2024. 7.), "푸르덴셜생명의 현상 2024" 자료를 번역함

○ '마이엔딩케어'는 생명보험신탁에 추가하여 제공될 수 있는 법무 전문가(사법서사, 행정서사 등)와 연계된 서비스로, 행정 절차 및 상속 절차, 재산정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유족의 부담을 줄이고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임

- 사후 사무 수임자(사법서사, 법인 등)와 사후 사무 위임 계약[60]을, 프르덴셜신탁과 생명보험신탁 계약을 맺음으로써 사후 사무 위임 계약에 근거한 사후 사무 집행비용을 신탁재산(사망보험금 등)에서 지불할 수 있음

60) 사후 사무처리 위임 계약이란 위임자가 제3자에 대해 본인이 사망 후 여러 절차에 관한 사무 등의 대리권을 생전에 부여하는 것으로, 친족 등 관계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의료비, 관리비, 시설이용료 등 미지급 비용 정산, 화장 및 납골 등에 관한 처리, 유품 정리 등의 사후 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의미함(박정희 2022)

- 특히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치매 등 지병이 있는 독거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인 경우, 친족 등에게 부담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경우, 1인 가구로 사망 후 재산정리를 맡길 곳이 없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부록 그림 Ⅱ-3〉 일본 프르덴셜사 마이엔딩케어서비스 제공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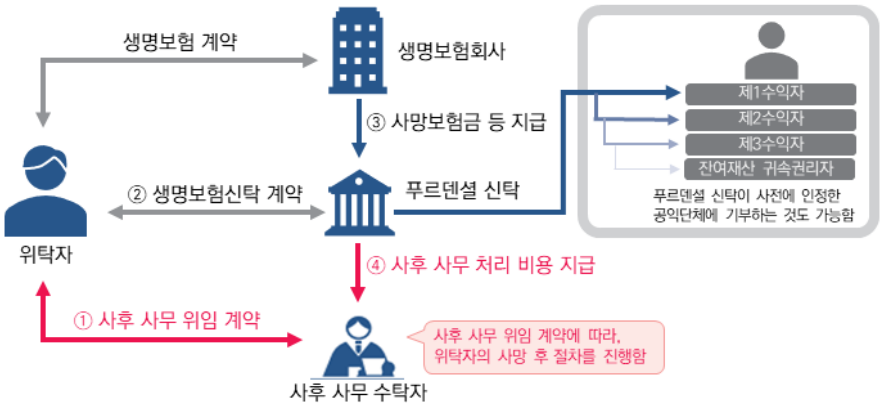

① 사전 계약: 고객이 푸르덴셜신탁과 사후 절차 지원서비스 계약을 체결
(위탁자가 사후사무위임자와 사후사무위임계약 체결)
② 보험계약 체결: 생명보험과 신탁 계약을 함께 진행
③ 사망 후 보험금 지급: 푸르덴셜신탁이 보험금 수령
④ 사후 절차 비용 지급: 법무 전문가에게 비용 지급
⑤ 잔여 자산 정리 및 상속: 지정된 수익자에게 자산 이전

자료: 푸르덴셜생명(2024. 7.), "푸르덴셜생명의 현상 2024" 자료를 번역함

- 신탁보수의 경우, 신탁회사가 계약 내용에 따라 발생 시점별로 수수한 뒤, 사후 서무처리 수임자로부터 청구된 사후 사무비용을 지급함
- 신탁 개시 시 보험금 청구 및 신탁 설정 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로 분할 지급 방식인 경우 수령 보험금 총액의 2.2%를, 일괄 지급 방식인 경우는 신탁 계약 1건당 11만 엔을 신탁재산에서 공제함
- 신탁 개시부터 신탁 종료 시까지 신탁재산의 정례 교부 비용(신탁재산 관리 및 교부, 거래보고 서류 등의 작성 업무, 수익자의 이행 수속의 대가)으로 매년 3월 말 1건당 연간 2.2만 엔의 관리 보수를 공제함(박정희 2022)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특별회원	₩150,000원	
개인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 - 9113 | 팩스 : (02)3775 - 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400401 - 01 - 125198) | 예금주 :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연구보고서 2025-10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현황과 개선 방향

발 행 일 2025년 8월
발 행 인 안 철 경
발 행 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 쇄 소 고려씨엔피

ISBN 979-11-93021-82-8 (정가 10,000원)
979-11-85691-50-3(세트)